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2. 12.

연구수행기관: 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연구 책임자 : 이원웅(관동대학교 교수, 국제정치)
공동 연구자 : 김선화(공릉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사회복지)
공동 연구자 : 김윤태(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총장, 통일정책)
공동 연구자 : 이민자(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중국학)
공동 연구자 : 조정현(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국제법)
공동 연구자 : 허선행(북한민주화네트워크 기획실장, 북한학)

이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비를 지원 받아 수행한 것으로 국가
인권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 약 문

1. 연구 개요

조사 목적

본 조사연구는 탈북여성이 중국에 체류하는 시기동안 중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동들의 양육실태 및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의제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 검토

용어 문제 : 본 연구의 대상인 중국 내 탈북여성의 자녀 아동들에 대해 ‘무국적 북한(탈북) 고아’, ‘북한이탈주민 아동’, ‘재중 탈북여성 2세’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탈북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자녀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출생 탈북여성 자녀(아동)’ 혹은 ‘탈북여성의 중국산류 자녀(아동)’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중국 내 탈북여성 아동의 규모 : 중국 내 탈북여성의 자녀 규모에 관해 현재까지 가장 과학적인 추정치는 존스홉킨스 대학의 연구팀의 것으로 보인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동북 3성 108개 거점지역에서 탈북자를 심층적으로 조사·연구해 온 존스홉킨스 대학의 연구팀은 오랜 기간 추적조사 한 결과에 인구학적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2009년 현재 탈북여성과 중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규모가 1만여 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하였다.¹⁾ 이러한 연구결과를 따른다면 현재 중국 내 ‘요보호 아동’의 규모는 이번 조사 결과에 나타난 요보호 아동의 비율을 고려할 때 대략 4,000여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중국 현지 실태조사의 방법이다.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아동 102세대를 방문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1) 자유아시아방송(RFA), 2010.06.04.

이외에 국내 탈북여성 심층면접조사, 문헌연구 및 현지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을 활용하였다.

현지 전문 실태조사팀 구성

본 연구팀은 중국 현지에서 북한이탈주민 아동에 대한 접근의 제약과 실태 조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의 동북 3성 지역에서 5~10년간 탈북여성 및 아동 관련 외부지원 코디네이터 및 조사원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한 현지인으로 조사팀을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 선정

현지 실태조사에서 심층면접 대상 아동의 선정은 임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중국 현지에서 본 조사를 위한 모집단의 목록을 작성할 수 없으며 조사수행 이전에 각각의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원이 평소의 활동을 통해 알고 있는 조사대상자 밀집거주 지역 내 아동세대를 방문해 먼저 조사하고 그로부터 다른 대상자를 소개받는 방식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실태조사 대상 지역

조사를 위해 방문한 대상자 밀집거주 지역은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산둥성 등 중국의 4개 성 지역에 있는 14개 지역(7개 시, 7개 현)으로 조사원들은 해당 지역 마을 내 아동세대 및 아동보호세대를 방문하여 102명의 아동과 당시 실제 보호자를 대상으로 각각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성, 시/현)>

조사대상 지역(거주지)		아동(명)
길림성 (64명)	연길시	15
	도문시	2
	둔화시	7
	류하현	4
	매하구시	4
	훈춘시	2

	왕정현	28
	화룡현	2
요녕성 (10명)	관전현	9
	동광현	1
흑룡강성 (26명)	동녕현	14
	림구현	4
	목단강시	8
산동성 (2명)	교주시	2
합계		102

2. 중국출생 탈북여성 아동의 인권상황

1) 조사대상 아동의 인구학적 배경

○ 조사 대상 세대의 북한이탈주민 아동의 성별은 남성이 58명, 여성이 42명이었는데 이는 중국 인구의 성비가 118인 것과 유사한 것이다.

○ 조사 대상 아동의 출생연도는 1996년(1명)~2006년(1명) 사이에 분포하는데 1999~2002년에 태어난 아동이 전체의 84%로 이들은 2012년 현재 10~13세이다.

○ 아동의 출생지는 길림성 50명, 흑룡강성 27명, 요녕성 13명 등이며 이들의 현재 거주지는 길림성이 60명, 흑룡강성 26명, 요녕성 14명으로 동북3성 이외 지역에서 출생한 아동들의 경우 나중에 길림성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탈북여성 아동 가정의 사회경제적 상황

○ 아동 어머니가 중국인 남성과 결혼한 시기는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한 대량 탈북이 발생했던 시기(1998년~2000년)가 전체 77%를 차지하였고, 결

혼당시 아동의 아버지의 50%가 중간 소개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 일부 탈북 여성은 중국에 가서 돈을 벌 수 있다 등의 말에 속아 탈북해 강제적으로 또는 반강제로 중국인 남성과 결혼하게 된 경우도 존재했다.

○ 아동의 아버지의 민족적 배경은 조선족이 50%, 한족이 45%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30대가 60명으로 가장 많고 20대가 25명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40대가 6명, 50대 1명으로 나타났다.

○ 아동의 실제 보호자가 평가한 아동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조사 대상 59.6%가 못사는 편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37명 아버지의 직업을 조사한 결과 52.8%가 농사를 짓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외 막노동, 샅일 등으로 조사되었다.

3) 탈북여성 아동 가족의 해체

○ 조사 시점에서 아동의 실질적 양육 보호자를 살펴본 결과 부모 모두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100명 중 15명, 편모 가정은 6명, 어머니와 헤어졌거나 사망한 상태인 편부 가정은 20명, 부모 모두 없이 조부모나 친척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은 39명, 나머지 20명은 기독교 관련 쉼터에서 보호를 받으며 지내고 있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부모가 없이 친척의 보호를 받는 경우(15명)와 기독교 관련 가정쉼터에서 보호를 받는 경우(20명)는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이라는 측면에서 대해 부모에 의한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실질적 양육 보호자>

실질적 양육 보호자	빈도(명)	비율(%)
부모 모두 동거	15	15.0
부모 중 아버지만 동거	20	20.0

부모 중 어머니만 동거	6	6.0
부모 없이 조부모가 보호	24	24.0
방계 친척이 보호 (큰아버지, 삼촌, 고모 등)	15	15.0
기독교 관련 센터에서 보호 (가정 보호시설)	20	20.0
합계	100	100.0

○ 탈북 여성인 어머니가 강제 송환 된 경험이 있는 아동은 전체 100명 중 36명으로 조사되었다. 강제 북송이 가장 심한 시기는 2003년에서 2007년 사이로 전체 52.7%를 차지한다. 이후 201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는 북한이 국경지대를 집중 단속으로 탈북자 수가 줄어든 것과 한국행을 택한 탈북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 어머니의 가출로 인한 가족 해체는 전체 아동 100명 중 31명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치 않는 결혼과 언어, 문화, 생활이 다른 상황에서 강제 북송에 대한 두려움의 이유로 가출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출의 이유로는 한국행이 가장 많았다.

<가족해체 상황 및 원인>

구 분	강제 북송에 따른 가족해체	가출에 따른 가족해체
아동 수	36명	31명
아동 평균나이	4.7세	3.6세
집중 시기	2003년 ~ 2007년	2001~2001년
원인	- 중국 정부의 집중 단속 - 누군가의 신고로 체포됨	- 한국행 - 가난

○ 어머니 가출로 인해 가족이 해체된 후 중국 현지에 남아 있는 아동과의 연락여부를 살펴본 결과 29명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어머니의 강제 송환과 가출로 인해 가족이 해체된 후 평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는 아동은 조사 대상 76.3%로 나온 반면 현재 연락하는 경우는 29.6%밖에 되지 않아 아동의 성장기에 가족 해체에 따른 심적 피해와 부정적 영향이 대단히 클 것으로 보인다.

4) 아동의 주요 인권상황

○ 아동 어머니의 신분적 특성으로 인해 아동이 호구를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아동들의 호구 취득 여부를 살펴본 결과 95.8%가 호구를 이미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한반도화해센터 조사 시 74.7%, 2011년 피난처 조사 시 90.6%로 나타난 호구 취득 비율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호구취득 비율의 증가추세는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아동들이 학령기가 됨에 따라 대부분 호구를 취득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구분	2008년 ²⁾ (한반도화해센터)		2011년 ³⁾ (피난처)		2012년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호구가 있다	56	74.7	87	90.6	91	95.8
호구가 없다	18	24	9	9.4	4	4.2
합계	75	100.0	100 (불명 4명)	100	95 (북한출생 제외)	100

2) “중국 내 탈북여성 2세 가정환경 조사 보고서”. 한반도평화센터. 서울. 2008.

3) “제2차 탈북2세 아동의 인권실태와 보호방안 조사보고서”. (사)피난처. 서울. 2011.

○ 여전히 호구를 취득하지 못한 아동은 4명으로 나타났다. 호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대체로 보호자의 의식수준이 낮거나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경우여서 이들에 대한 외부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

○ 의료권, 교육권 상황 및 아동 어머니의 신분적 특성에서 기인한 폭력 및 성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현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조사의 제약성을 고려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 조사 대상 아동에 대한 외부의 생활 지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44.3% 아동이 외부 지원을 받고 있었고 외부 지원처는 주로 교회와 관련 종사자들(59.0%), 비동거 아버지(20.0%), 비동거 어머니(7.7%)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의 55.7% 아동은 외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부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월 500위안 이하가 전체의 72.9%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으로 간 어머니로부터의 지원에 대해 살펴본 결과 어머니로부터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아동이 조사 대상 26명 중 15명으로 절반이 넘었다(57.7%).

3. 중국의 탈북여성 아동 정책과 법규범적 평가

탈북여성이 중국에서 중국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통해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등록 및 국적권과 관련 있는 중국의 호구에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동인권 측면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기타 문제인 탈북여성 아동의 교육권 및 건강권 등의 문제도 호구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양계혈통주의를 인정하여 아버지만 중국 국적이 있어도 호구 취득에 의한 중국 국적 부여가 가능하지만 탈북자인 어머니의 불법체류자 신분으

로 인해 그 아동이 사실상의 무국적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다행히 상당수 탈북여성 아동들이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는 뇌물을 주고서라도 호구를 취득하였으며 교육권 및 건강권도 호구 취득 여부와 관계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점들을 떠나, 인간의 정서 및 신체 발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시기인 아동기에 어머니 등 부모와 생이별을 한 후 다른 주위 사람들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아동의 이익을 고려할 때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도 당사국인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 권리에 분명히 상충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1차적 조치는 중국이 탈북자, 특히 탈북 여성의 강제복송을 자제하고 그들에게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는 것인데, 현재까지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은 변함없이 탈북자 전원 강제복송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관련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중국내 가족권 보호 및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최소한 중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탈북여성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자신의 호구등록제도를 개선하여 어머니의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아동이 정상적으로 중국의 호구에 등록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 및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아동의 이익을 고려하여 최소한 중국인과 가정을 이룬 탈북여성에 대해서는 강제송환정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본 조사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실상 강제로 분리된 채 생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국내 아동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하여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책임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정책적 고려사항

본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는데 정부 및 시민 사회의 대응을 위한 고려사항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1) 탈북여성의 중국 잔류 아동의 규모는 수만에서 최대 10만까지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연구는 선행연구의 추정산식과 현지 정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중국내 탈북여성 출산 자녀수 최대치를 2-3만 규모로 추정하며 특히 이 가운데 요보호 아동 수는 4,000명 정도로 추산한다.

2) 호구문제는 중국내 ‘북한계 아동’ 인권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사안이다. 본 조사연구에서 ‘접근가능한’ 중국내 탈북여성 출산 자녀들의 경우 95% 이상이 호구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74% 정도보다 진전된 것이다. 조사시점에서 2-3년의 차이를 보이는 점과 학령기에 접근하는 연령대 아동이 늘어나게 됨으로서 보호자들에 의한 호구취득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무국적 탈북고아’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며 ‘중국출생 탈북여성 자녀(아동)’ 혹은 ‘탈북여성의 중국잔류 자녀(아동)’이라는 용어를 선택할 것을 제안한다. 후자의 경우 국내입국 탈북여성의 2차 피해 및 우리 정부의 보호책임 의무 등을 명시하는 의미를 지닌다.

중국내 호구취득 과정에서 100위안~3,000위안 (국내조사: 1,000위안~6,000위안)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중국 당국이 중국출생 탈북여성 자녀들에 대해서 탈북여성과의 ‘불법적’ 혼인관계에 따른 벌금조의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용부담은 그동안 이들 아동들의 호구취득이 늦어지게 된 중요한 원인이며 생모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회피하려는 요인도 작용하였다.

3) ‘탈북여성의 중국잔류 자녀(아동)’들의 인권실태는 예상했던 것보다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활만족도도 비교적 높고, 건강상태도 양호하며, 대부분 학령기 아동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

해규모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아동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고 친모와의 분리에 대한 심리적 상처를 가지고 있다.

전체 조사대상의 44%가 지역공동체, 특히 교회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약 24% 정도가 어머니로부터 일정부분 생활비를 받고 있었다. 전체 조사대상 가운데 80% 아동들이 친모와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의 36% 아동들의 친모는 중국 공안에 의해서 강제복송되었다. 전체 조사대상의 24%는 그 상당수가 한국행으로 귀결되어지는 친모의 가출로 분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조사대상의 70%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다. 친모와 연락을 취하는 아동들은 전체 조사대상의 23%대에 지나지 않고 있다.

30명의 대상자를 조사한 국내 탈북여성 조사결과에서도 가족분리에 따른 심리적 트라우마와 정서적 고통이 발견되고 있다. 일부 탈북여성들은 중국내 잔류아동에게 월 50만원 정도를 송금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2. 정책 제안

1) 외교통상부

○ 우선 중국과의 양자 교섭을 통해, 탈북여성 아동의 보호에 중국이 인도적 견지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보호 정책이 결국 자신의 지역사회에도 진정 도움이 되는 것임을 적극 설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호구등록제도를 개선하여 탈북여성의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탈북여성 아동이 중국 호구에 등록되도록 중국을 설득하며(대안적으로 새로운 출생등록제도 마련), 보다 근본적 대책으로 중국인과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 탈북여성이 절대 강제송환되는 일이 없도록 중국을 설득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탈북자 문제와 분리하여, 보다 인도적이고 중국의 미래 세대인 아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중국내 가족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탈북여성 아동 문제를 접근한다.

참고로 중국의 노령화가 최근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중국의

1자녀 정책도 최근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은 대중국 설득논리의 하나가 될 수 있다.

○ 다자차원에서, 아동권리위원회, 사회권위원회 등 중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의 조약감시기구에서 진행되는 중국의 국가정기보고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탈북여성 아동과 관련된 문제를 미리 철저히 준비하여 제기하고, 2013년 중국에 대한 UN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시에도 양자 교섭의 결과를 감안하며 탈북여성 아동의 인권 문제를 적절히 제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UN 인권최고대표 등 국제사회가 관련하여 중국과 건설적인 인권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정부가 측면 지원하고, 탈북여성 아동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NGO 지원단체들이 중국 내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조용히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이미 한국에 정착한 탈북여성이 현지 중국인 아버지의 동의 하에 자신의 자녀만을 국내로 데려오려고 할 경우 절차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 내 한국 공관에 아동의 출생등록을 하려고 하여도 여러 절차상 미비로 인해 접수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관련 절차 마련의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한국 국적이면 아동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중국 현지에서 유전자 검사와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탈북여성 아동의 국적취득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중국인 아버지와 아동이 함께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와 달리, 중국이 관련 아동의 여권이나 출국을 인정해 주지 않음으로써 한·중 간 외교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음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법무부

○ 탈북여성 아동이 입국 후 국내에서 국적취득을 신청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국적법상 국적판정제도를 개선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개정도 진지하게 고려하여 이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

여야 한다.⁴⁾

탈북여성의 중국 호구나 관련 아동의 중국 호구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친자관계가 확인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라도 탈북여성 아동의 한국 국적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탈북여성이 강제북송된 상황 또는 국내에서 탈북여성과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탈북여성 아동이 국적취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국적을 판정하는 방법은 더욱 어렵다. 그렇다고 일괄 국적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일단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여러 신문절차 등을 거쳐 정부의 반증이 없는 한 아동최선의 이익을 고려 국적을 인정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은 제2조에서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국에서 출생한 탈북여성 아동을 그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법무부는 관련 법 주무부서인 통일부와 협조 하에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을 개정하여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여성 아동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인적 대상을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아동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하나 그 어머니가 이미 한국에 와 있는 경우라면 어떤 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하여 관련법도 이에 맞게 필요하다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단, 이와 같은 지원 확대가 자칫 중국에 거주하려던 탈북여성 및 아동의 이탈을 촉진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우리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 및 불법체류자 자녀의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무국적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미국, 영국, 태국 등과 같이 체류 지위에 상관없이 간단한 기본사항들을 포함한 출생등록제도를 새로 마련하여, 중국과는 다른 차원의 비교우위를 가지고 탈북여성 아동 문제에 대한 양자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적 측면 지원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이규창, “무국적 탈북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 모색”,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pp. 213-238 참조.

3) 통일부

○ 먼저 북한이탈여성들이 국내입국 과정에서 중국내 생활실태와 출산여부, 현지 아동 및 중국인 가족관계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인권백서(통일연구원 간행)에 탈북여성 중국 잔류자녀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고 지속적 모니터링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탈여성들의 국내정착과정에서 중국내 잔류아동을 돕으로 인한 정착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맞춤형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 중국내 현장 지원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현지의 ‘요보호 아동’에 대해 생활 및 교육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다양한 이유로 정상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아동들, 그리고 부모나 다른 친척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 중에서도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설 것이 요구된다.

우선 현지의 ‘요보호 아동’들에 대한 생활지원과 교육지원이 시급히 요구된다. 그리고 아직 호구를 취득하지 못한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급히 호구를 취득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잔류 ‘요보호 아동’들에 대한 지원은 그 필요성과 중국 당국의 정책을 고려할 때 국내 및 현지의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민간단체가 중국의 농촌 및 도시 외곽의 요보호 아동들에게 생활 및 교육지원을 하는 방식의 접근이 효과적인 방안이다.

○ 북한이탈여성들이 중국내 출산아동과 동반입국하였거나 추후 아동과 가족 재결합을 원할 경우 이들의 정착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중국출생 탈북여성 아동이 북한태생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틀 내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어머니와 아동의 분리를 가

속화하고 있다. 최소한 중국에서 태어나 국내로 들어온 탈북여성의 자녀들에게 북한 태생 탈북아동에 준하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4) 시민사회 및 언론

○ 전 세계 북한인권 네트워크를 동원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반대 운동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유엔 및 국제인권포럼에서 중국내 탈북여성 인권실태 및 강제송환으로 인한 인권피해와 잔류아동과 사실상 강제로 분리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 다음으로 시민사회는 중국당국에 대해 북한계 아동들의 호구 취득시 뇌물형태의 벌금부과제를 폐지하고 무조건 호구를 부여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이 요구된다.

○ 그리고 탈북여성의 중국잔류 아동에 대한 지원단체들의 경제적 정서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단체가 직접적으로 현지 아동을 지원할 방법이 극히 적지만 현지의 한국계 민간단체 활동 및 종교에 기반한 네트워크, 그리고 외국단체 등을 활용한 접근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 차>

I. 서론	3
1. 연구목적	3
2. 연구배경	4
3. 연구범위 및 내용	5
4. 조사 및 연구 방법	10
5. 선행연구 검토 및 문제점	14
1) 용어	16
2) 규모	17
3) 호구문제	19
II. 북한이탈여성의 해외잔류아동 인권실태	23
1. 조사개요	23
1) 조사대상	23
2) 조사기간 : 2012년 8월 1일 - 9월 15일	23
2. 조사방법	23
3. 조사내용	24
4. 조사결과	25
1) 연구참여자 현황	25
2) 입국 북한이탈여성의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삶과 한국입국과정	27
3) 북한이탈여성의 중국 출생 자녀들의 중국내 생활실태	30
(1) 중국 출생 자녀들의 중국내 호구 취득 여부 및 취득방법	30
(2) 중국 출생 자녀들의 인권상황 : 주양육자와 교육현황(중국내)	33
(3) 중국 출생 자녀들의 해외잔류 및 한국 입국 현황	34
4) 한국 입국이후 문제점	37
(1)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 출생 아동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37
(2) 해외 잔류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	39
(3) 북한이탈여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40
5. 정책 고려사항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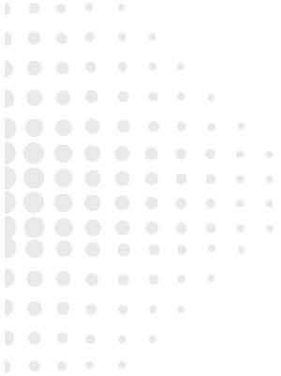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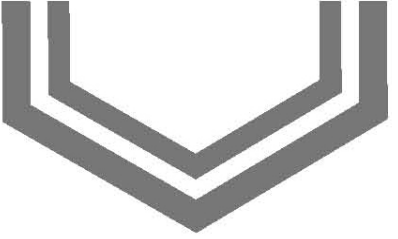
III. 중국출생 탈북여성 아동의 인권실태	51
1. 조사개요	51
1) 조사 대상 지역 특성	51
2) 실태조사의 방법	52
3)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	53
2. 탈북여성 아동 가정의 사회경제적 상황	56
1) 탈북여성 아동 가족의 형성	56
(1) 어머니의 탈북 후 결혼과정	56
(2) 아버지의 특성	60
(3) 아버지의 육체적, 정신적 특이사항	62
2) 아동 가족의 경제적 상황	63
(1) 아동 가정의 경제적 수준	64
(2) 아버지의 직업	65
(3) 아버지의 수입	65
3. 아동 가족의 해체	66
1) 아동의 실질적 양육 보호자	67
2) 강제 송환에 따른 가족 해체	84
3) 가출에 따른 가족 해체	89
4) 어머니와의 유대	94
4. 아동의 주요 인권상황	98
1) 아동의 호구 취득	98
2) 건강상태 및 의료	108
3) 교육	109
4) 폭력 피해	110
5. 아동의 현지 생활과 외부 지원	111
1) 아동의 현지 생활	111
(1) 언어 생활	111
(2) 생활 만족도	113
2) 외부의 지원	114
(1) 지역 공동체의 지원	114
(2) 한국 거주 어머니의 지원	117
6. 정책 고려사항	117

IV. 중국의 탈북여성 아동 정책과 법규범적 평가	123
1. 탈북여성 아동 인권 실태 및 중국의 관련 정책 개요	123
2. 중국 국내법상 평가	124
1) 출생등록 및 국적권	124
2) 교육권	125
3. 국제인권조약상 평가	126
1) 아동권리협약(CRC89)	126
2) 사회권규약(ICESCR66)	128
3) 기타 국제조약	129
4. 국제인권레짐의 활용 가능성	130
5. 정책 고려사항	131
V. 결론	135
1. 고려사항	135
2. 정책제안	137
1) 외교통상부	137
2) 법무부	138
3) 통일부	139
4) 시민사회 및 언론	140
<input type="checkbox"/> 참고문헌	142
<input type="checkbox"/> 참고자료 1-면접조사 응답자 특성	146
<input type="checkbox"/> 참고자료 2-면접조사 질문지	147

〈표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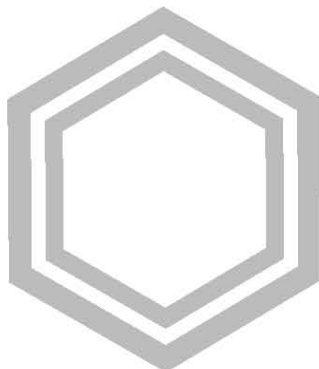
〈표 1〉 주요 연구 내용	5
〈표 2〉 유엔아동권리협약 중 북한이탈주민 아동 관련 주요 조항	8
〈표 3〉 조사대상 지역(성, 시/현)	13
〈표 4〉 연구참여자 현황	25
〈표 5〉 지역별 조사대상 세대 수	52
〈표 6〉 피면접자의 아동과의 관계	53
〈표 7〉 아동의 성별	54
〈표 8〉 아동의 출생년도	54
〈표 9〉 아동의 출생지	55
〈표 10〉 조사 대상 아동의 거주지	55
〈표 11〉 아동 어머니의 결혼 연도	57
〈표 12〉 중간 소개인에 현금제공 여부	57
〈표 13〉 아버지의 민족적 배경	61
〈표 14〉 결혼 당시 아버지의 연령	61
〈표 15〉 아버지의 육체적, 정신적 특이점	62
〈표 16〉 아동 가정의 경제적 수준	64
〈표 17〉 아버지의 직업	65
〈표 18〉 아버지의 월수입	66
〈표 19〉 아동의 실질적 양육 보호자	68
〈표 20〉 현재 아동의 동거가족	76
〈표 21〉 어머니가 강제 복송 후 가족 해체 사례	85
〈표 22〉 어머니의 가출로 인해 가족 해체 사례	90
〈표 23〉 어머니의 가출한 이유	93
〈표 24〉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95
〈표 25〉 어머니와의 연락 여부	95
〈표 26〉 호구 취득 여부 조사	98
〈표 27〉 공식 절차에 의해 호구를 취득한 경우	100
〈표 28〉 비공식 절차에 의해 호구를 취득한 경우	104
〈표 29〉 호구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107
〈표 30〉 호구 취득 나이는?	108

<표 31> 아이의 현재 건강 상태	108
<표 32> 정기적 병원진료 여부	109
<표 33> 폭력피해 경험 여부	110
<표 34> 성폭력 피해 여부(여성)	111
<표 35> 주로 사용하는 언어	112
<표 36> 현재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지 여부	113
<표 37> 현재의 학교에 계속 다니고 싶은지 여부	113
<표 38> 외부의 양육비 지원	114
<표 39> 양육비 지원자	115
<표 40> 외부지원금(1개월)	116
<표 41> 한국 거주 어머니의 지원 여부	117
<표 42> 6대 핵심인권조약의 이행감독장치 및 중국	130



1.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배경
3. 연구범위 및 내용
4. 조사 및 연구 방법
5. 선행연구 검토 및 문제점



I. 서론

1. 연구목적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식량난이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북한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하였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북한으로의 귀환보다 중국에 체류하는 것을 선택하였으며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통계를 통해 중국체류자의 70% 이상이 여성일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체류 탈북여성의 대부분은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은신을 위해 현지 남성과의 매매혼 내지 반강제적 동거 형태로 중국내에 거주해 온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탈북여성들을 ‘비법월경자’ 또는 불법거주자로 간주하고 체포해 강제송환하는 정책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탈북여성들은 강제송환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기 위해 한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탈북여성들이 중국에서 낳은 수천 명의 아동들을 어머니와 분리되어 어려운 환경에서 방임되거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만들었다.

이 아동들에 대한 보호의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으나 1차적으로는 중국정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체류 아동들의 보호권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중국 당국이 가입한 국제조약 및 중국 국적법 등 관련 법규범을 검토하고 중국당국에 대해서 적절한 보호책임 의무를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조사연구는 탈북여성이 중국에 체류하는 시기동안 중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동들의 양육실태 및 인권상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의제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의 국내 입국 시 관련법령 미흡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 등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고 이를 정책권고안으로 제시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본 연구는 대학 및 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의 학제간 연구의 성격,

연구자와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 활동가의 공동연구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진행과정에서 연구자와 현장성을 갖춘 현지 활동가의 상호작용이 시너지를 발휘하였고 향후 연구자 간 및 연구자와 NGO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본 연구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실천적 연구를 수행해나가 고자 한다.

2. 연구배경

2만 4천여명에 달하는 국내 입국 탈북자 중 여성의 비중이 70%를 넘고⁵⁾ 이들 중 상당수가 중국 체류 중에 임신과 출산을 한 이후, 대한민국 입국 시 아동과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심리 정서적 위기상황에 대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 문제는 2000년대 이후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국제적 인권이슈이다.⁶⁾ 특히 중국내 ‘탈북고아’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인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는 최근 탈북고아문제, 아동권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⁷⁾ 또한 2008년 9월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 진행된 1주간의 북한인권캠페인의 주제는 ‘탈북고아에게 사랑을’ 이라는 구호로 제시된 바 있다.

이 문제는 최근에 미국에서 지대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중국 내 체류중인 탈북아동 문제와 관련하여 ‘2011 탈북난민 입양 법안’과 ‘무국적 북한 어린이 지원 전략 개발 등에 관한 법안’이 미국 의회의 상원과 하원에 각각 제출돼 통과되었다⁸⁾.

국제사회는 1959년 유엔아동권리선언을 선포한 이래 1979년 유엔 아동권

5) 통일부 홈페이지. 2012년 10월 기준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수는 24,308명, 이중 여성의 비율은 72%이다.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365>

6) RI, *Futures Denied: Statelessness among Infants, Children, and Youth* (Oct 21, 2008).

7) Human Rights Watch, *Denied Status, Denied Education: Children of North Korean Women in China*(April, 2008); Submission from HRW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overnment Violations of Children's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y 2008)*.

8) 연합뉴스, 2011.04.10.

리협약, 1990년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을 위한 선언 및 행동계획, 2000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등을 규정하고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과 우리나라, 북한은 모두 유엔아동권리규약의 가입국가로서 중국내 무국적 탈북고아에 대한 보호책임의 당사국이다.

따라서 중국과 우리정부는 중국 내 탈북여성 자녀들의 인권상황에 관심을 갖고 향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3. 연구범위 및 내용

본 연구의 주된 연구대상은 탈북여성과 중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나고 현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아동의 인권실태와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이다.

본래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아동 중에는 북한에서 태어나 고아가 되어 탈북 했거나 탈북과정 및 탈북 이후에 부모와 헤어져 고아가 된 경우도 있으나 최근 새로운 사례는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탈북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아동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지 실태조사 과정에서 북한출생 탈북고아 사례에 접근하는 경우에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이 1) 국내 탈북여성 30명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아동 실태관련 사전조사, 2) 중국 내 탈북여성 자녀의 사회경제적 환경 및 인권실태, 3) 아동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외 법령 검토 및 정부 각 부처별 정책권고안 개발 등이다.

<표 1> 주요 연구 내용

연구분야	연구의 세부 내용
국내 탈북여성 30명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북한이탈주민아동 실태관련 사전조사	중국 체류 자녀의 상태 및 지원 상황
	국내 입국 아동의 적응실태 및 애로
	정부/민간의 지원내용, 지원 필요사항

중국 현지 북한이탈주민 아동 체류현황, 인권상황 실태조사(102세대)	아동의 체류 현황 실태조사 : 지역별 규모 및 분포특성,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상황, 어머니와의 연락 및 지원 여부, 향후 결합 계획 등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인권실태조사 :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에 대 한 실태파악, 협약 조항별 중국정부의 준수여부와 실태평가
	탈북고아 사례 및 인권실태 조사 : 접근가능한 탈북고아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 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부정책 분석 및 국내외 법령 검토, 정책권고안 마련	국내법 검토 및 개정 권고안 마련
	중국의 국적법 분석 및 탈북여성 자녀 아동에의 적용
	국제법 검토 및 중국 내 탈북여성 자녀 아동에의 적용을 통한 인권증진 방안 마련
중국 체류 아동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 부처별 정책권고안 및 논거 개발	외교통상부: 대중국 및 유엔 외교정책 권고안
	통일부: 중국 체류 아동에 대한 지원 관련 권고안
	법무부: 국내입국 아동의 국적취득 및 호적변경 제도 개선 권고안
	시민사회 및 언론에 대한 권고안 제시

연구 분야별 각각의 세부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내 입국 탈북여성 심층면접을 통한 사전 실태조사 내용

중국 체류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기에 앞서 중국에서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국내 입국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자녀의 출산 및 이별, 현재 아동과의 연계 및 지원 상황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중국에서의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국내 입국한 아동의 정착관련 내용도 살펴보았다.

- 아동이 현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실태조사 내용
 - 탈북 후 중국인과의 사실혼 관계형성 및 아동 출산과정
 - 중국에서 강제송환 경험 및 아동과 헤어지게 된 원인 및 과정
 - 한국 입국 후 중국체류 아동과의 지속적 연락여부 및 지원내용
 - 향후 아동과의 결합 계획 및 어려움

- 아동을 한국으로 데려 온 경우 조사 내용
 - 아동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과정 및 어려움
 - 정부와 민간의 아동에 대한 지원 내용 파악
 - 아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적인 방안

②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 아동의 체류현황 및 인권실태 조사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 아동 대상 실태조사의 내용은 크게 출생 및 출생등록 여부와 과정, 현재 아동에 대한 보호책임자 특성, 아동 가정의 사회경제적 상황, 교육 및 의료, 학교 및 주거지에서의 차별 여부, 헤어진 어머니와의 연락 여부 및 지원 여부 등이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중국 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의 체류 현황 실태조사
 - 탈북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아동의 규모 및 분포
 - 연령대, 출생국가, 중국에서 출생등록 여부, 거주 이전 이력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성별 및 연령, 직업 및 소득, 주거상태 등의 생활환경, 혼인상태, 건강, 정서 등)

- 아동의 어머니와의 헤어짐 및 현재 연락상태, 어머니의 지원 및 만남주기, 향후 한국 이주 또는 어머니와의 결합 계획 등.

○ 중국 체류 아동의 인권상황 분석 및 평가

- UN아동권리협약에서 최소한의 아동권으로 정한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기초하여 인권 실태를 파악함.
- 아동이 처한 생활환경, 정서상태 및 건강 상태, 의료혜택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파악함.
- 모성으로부터의 보호 여부 및 관련 실태, 중국인 가족의 보호 및 학대와 방임 여부, 중국의 농촌 공동체 내 차별대우와 착취 등 실태 파악
- 국적 취득 여부, 정규 및 비정규 교육 실태 파악
- 특히 아래 <표 2>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각 조항과 관련한 아동의 상황에 대해 당사국인 중국정부의 조약 준수 여부와 실태를 평가함.

<표 2> 유엔아동권리협약 중 북한이탈주민 아동 관련 주요 조항

조항	내용
2조 2항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을 이유로 받게 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조 2항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7조 1항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	당사국은 이 분야의 -중략-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9조 1항	당사국은, -중략-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한다.
3항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이외에는 한쪽 부모 혹은 양쪽 부모로부터 헤어진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고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10조 1항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2항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이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중략-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16조 1항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서신 왕래에 대하여 독단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19조 1항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 학대, 유기, 방임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조 1항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족적 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족적 환경에 있는 것이 자신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22조 1항	당사국은 -중략-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중략- 적합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7조 1항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윤리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3항	당사국은 국가적인 여건과 재원의 범위 내에서 -중략-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책분석 및 국내외 관계 법령 검토를 통한 정책권고안 마련

다음으로 아동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국내법·국제법을 기준으로 검토·평가하였다.

- 국제법 검토 및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 아동에의 적용을 통한 인권증진 방안 마련
 - UN의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 아동권리협약, 중국 국내법에 대한 검토 및 중국 내 아동에의 적용을 통한 인권증진 방안 마련
- 중국의 국적법의 북한이탈주민 아동에의 적용 및 평가
-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④ 중국 내 아동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정부 부처별 정책권고안 제시

앞의 사전조사 및 현지 실태조사 결과와 국내외 법적 검토, 정책분석 등을 기초로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등 우리 정부의 각 부처별로 북한이탈주민 아동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안 및 그 논거를 제시하였다.

-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정부 각 부처별 정책권고안 제시
 - 외교통상부 : 중국체류 아동의 인권 개선을 위한 대중국 외교정책 및 유엔 및 국제사회에서의 인권정책 권고안 제시, 국내입국 과정의 제도개선 권고안 제시 등.
 - 통일부 : 중국체류 아동의 국내 정착지원과 관련한 정책 권고안 제시
 - 법무부 : 중국에서 출생하여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아동 관련 국적취득절차 등 개선 권고안 제시

4. 조사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자녀출산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 여성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중국 현지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문헌연구, 전문가초청 자문회의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조사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입국 북한이탈 여성 심층면접조사

먼저 탈북 후 중국에서 자녀출산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중국 현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격 실태조사를 위한 사전조사의 성격을 띠었다. 국내 정착 탈북여성을 심층면접함으로써 중국 체류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지 실태조사의 설계에 유의미한 관련 정보들을 파악하고 국내 입국 아동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조사는 입국 북한이탈여성들이 해외체류기간동안 출산한 자녀(아동)와 국내 입국 어머니와의 연락 및 지원여부를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3개 그룹은 첫째, 해외체류기간동안 출산한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현재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 13명, 둘째 해외체류기간동안 출산한 자녀들을 해외(중국)에 두고 왔으나 현재 연락이 되어 지속적인 상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 12명, 셋째 해외체류기간동안 출산한 자녀를 해외(중국)에 두고 왔으며 현재 그 자녀(아동)와 연락이 되지 않아 상호관계가 단절된 북한이탈여성 5명이다.

이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 아동의 체류 상황과 어머니와의 지속적 연계 여부에 대한 대략적인 사전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현지 심층면접조사의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국내 입국한 아동의 정착상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다.

2) 중국 현지 북한이탈주민 아동 가정방문 심층면접조사

본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중국 현지 실태조사의 방법이다.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여성 아동 102명의 세대를 방문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팀은 중국 현지 전문조사원을 두어 중국의 주요 대상자 밀집지역에서 조사대상 아동 가정 또는 아동이 보호를 받고 있는 시설에 접근하여 아동의 체류환경과 인권상황을 파악하였다. 실태조사는 2012년 7월~9월에 이루어졌다.

연구팀은 중국에서의 실태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현지에서 활동하는

전문조사팀을 구성해 운영하였다. 중국 당국이 탈북여성의 현지 체류를 불법으로 규정해 체포하고 있으므로 외부인이나 현지인이 탈북여성 및 그 자녀와 관련된 조사·연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추방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현지인으로 구성된 전문 조사원이라 할지라도 조사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조사대상 아동의 보호자들 또한 당국으로부터의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해 조사참여를 꺼리거나 소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다.

연구팀은 중국 현지에서 북한이탈주민 아동에 대한 접근의 제약과 실태조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의 동북 3성 지역에서 5~10년간 탈북여성 및 아동 관련 외부지원 코디네이터 및 조사원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한 현지인으로 조사팀을 구성하였다. 현지 조사팀은 한국 국적으로 팀장역할을 하는 전문조사원 및 현지인 조사원 5명이 참여하였으며 중국 행정구역 상 4개 성 14개 시/현 지역에서 102명의 조사대상자 가정(또는 아동보호센터)을 방문하여 실태조사의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었다.

현지 실태조사에서 심층면접 대상 아동의 선정은 임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중국 현지에서 본 조사를 위한 모집단의 목록을 작성할 수 없으며 조사수행 이전에 각각의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원이 평소의 활동을 통해 알고 있는 조사대상자 밀집거주 지역 내 아동세대를 방문해 먼저 조사하고 그로부터 다른 대상자를 소개받는 방식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조사를 위해 방문한 대상자 밀집거주 지역은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산둥성 등 중국의 4개 성지역에 있는 14개 시/현 지역이다. 조사원들은 해당 지역 마을 내 아동세대 및 아동보호세대를 방문하여 아동과 당시 실제 보호자를 대상으로 각각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조사를 위해 방문한 지역과 세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길림성에 속하는 지역으로 연길시, 도문시, 돈화시, 류하현, 매하구시, 훈춘시, 왕청현, 화룡현 등 5개 시와 3개 현, 총 8개 지역 64세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흑룡강성에 속하는 지역으로는 목단강시, 동녕현, 립구현 등 1개 시와 2개 현, 총 3개 지역 26세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요녕성은 관전현과 동광현에서 10세대를 방문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외 산둥성의 교주시에서 2명의 아동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4개 성의 7개 시 및

7개 현에서 102명의 아동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표 3> 조사대상 지역(성, 시/현)

조사대상 지역(거주지)		아동(명)
길림성 (64명)	연길시	15
	도문시	2
	돈화시	7
	류하현	4
	매하구시	4
	훈춘시	2
	왕청현	28
	화룡현	2
요녕성 (10명)	관진현	9
	동광현	1
	동녕현	14
흑룡강성 (26명)	림구현	4
	묵단강시	8
	산둥성 (2명)	교주시
합계		102

* 산둥성 교주시에서 접근이 이뤄진 2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요청으로 세부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해 조사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3) 문헌연구

문헌연구 및 자료 분석의 방법 또한 본 연구의 기초적인 연구방법이다.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에 관한 국내외 연구물 등 문헌자료를 분석하였다.

4) 전문가초청 자문회의 및 현지 연구자와의 간담회 개최

본 연구는 중국에 체류하는 아동의 인권실태와 개선방안이 연구주제로 현장의 NGO활동가의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매우 중요하므로 현지 전문가와의 간담회와 인터뷰를 연구방법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동북3성 지역에서 탈북자 보호와 탈북여성 자녀들의 보건의료 및 교육, 긴급보호 등과 관련하여 활동한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현지 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의 규모와 분포,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해 청취하여 본 연구에 반영하였다. 또한 현장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지 아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원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청취하였다.

5. 선행연구 검토 및 문제점

현재까지 중국 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의 실태와 인권보호 방안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한반도화해센터’와 ‘피난처’에서 최근에 중국 현지 아동들의 실태를 조사한 현지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반도화해센터는 2006년~2007년에 걸쳐 중국의 동북3성 내 5개 시와 3개 현에서 어머니인 탈북여성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141명의 탈북여성 2세에 접근하여 75명의 유효 응답결과를 분석한 현지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⁹⁾.

조사결과 탈북여성 어머니와 헤어진 75명 중 38명은 탈북여성인 어머니가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경우였고 33명은 어머니가 가출한 경우이며 어머니의 한국행이 3명, 사망이 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전체의 21.3%인 16명은 어머니로부터 소식이 있었으나 73.3%인 55명은 전혀 소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요한 조사결과로 아동 75명 중 56명(74.7%)이 ‘호구 등록’을 한 상태였고 24%인 18명은 호구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보고서는 중국내 탈북여성 자녀의 현지 체류 및 보호 상황에 대해서 매

9) 한반도화해센터, 『중국 내 탈북 여성 2세 가정환경 조사 보고서』 (서울: 한반도화해센터, 2008).

우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이 처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북한과 중국정부에게는 강제송환 중단 및 합법적인 신분 부여, 탈북여성과 아동과의 연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한국정부에는 북한 및 중국정부에 대한 외교적 설득과 함께 중국 현지의 아동 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아동에 대한 교육지원과 심리적 지지프로그램의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 아동과 관련한 국내 최초의 현지 실태조사라는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개선방안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사)피난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협력사업’ 수행단체로 선정되어 2011년 4월~11월 사이에 중국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의 탈북2세 아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발표하였다.¹⁰⁾ 동 보고서는 세 차례에 걸친 현지 출장조사에서 100명의 아동을 면담해 그 실태를 보고한 것이다.

조사결과 무응답자를 제외한 92명의 아동가운데 44명(47%)이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47명(53%)은 부모가 없이 조부모 등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65명 가운데 24명(37%)은 보통, 41명(63%)은 궁핍한 상태로 조사되었다. 한편 학령기에 있는 응답자 82명 가운데 대다수인 80명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조사보고는 조사지역이 연변조선족 자치주에 속하는 지역만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과 체계적인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밖에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2008년도에 「2008 북한인권국민캠페인: 탈북고아에게 사랑을!」을 개최하였으며 세부행사인 ‘북한인권국제회의’에서 윤여상은 탈북고아의 인권상황을 신변불안, 가족해체와 생계위협, 교육과 의료에서의 배제, 심리 및 정서적 고통으로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여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¹⁾. 이 발표문은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태 자료에 기반하지 못하였고 문제해결방안에 있어 구체적 정책대안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10) (사)피난처, 『재중 탈북2세 아동의 인권실태와 보호방안 조사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1 인권단체협력사업(2011).

11) 윤여상, “중국 체류 탈북고아의 인권과 보호방안”, 『2008북한인권국민캠페인: 탈북고아에게 사랑을!』 (서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2008), pp.15-20.

한편으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정착 문제를 다룬 다수의 연구물에 중국 체류 아동 문제가 언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연구의 대상인 중국 체류 탈북자녀 아동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연구된 성과는 거의 없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용어

선행연구들에서 조사대상에 대한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사)피난처(2011)는 ‘재중 탈북2세 아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반도화해센터(2008)는 ‘탈북여성 2세’ 또는 ‘탈북여성 자녀’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2008)는 ‘탈북고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윤여상도 ‘중국체류 탈북고아’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¹²⁾

한편 영어권에서는 휴먼라이트워치의 케이 석(Kay Seok)연구원은 ‘재중 탈북여성자녀(Children of North Korean Women in China)’로 표기하고 있다.¹³⁾ 그리고 미국 언론 및 하원의회의 법안에서는 ‘북한 난민 고아 (North Korean Refugee Orphan)’ 또는 ‘무국적 탈북고아 또는 탈북아동 (North Korean stateless orphan or children)’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¹⁴⁾

전체적으로 국내외 연구자 및 북한인권 전문가들 사이에서 ‘무국적 북한(탈북) 고아’라는 용어가 널리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¹⁵⁾

이러한 각 용어들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탈북 2세’ 또는 ‘탈북여성 2세’라는 용어는 중국에 체류 혹은 잔류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즉 중국에서 낳아서 한국에 데리고 들어온 합법적 신분의 탈북 여성의 2세(자녀)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12) 윤여상. “중국 체류 탈북고아의 인권과 보호방안”, 『NK Vision』 통권9호. 서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2008.

13) Kay Seok, "A Long Way to Acceptance: Children of North Korean Women in China,"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 Refugees* (August 21~22, 2010, Isabel Bader Theatre, Toronto, Canada), pp. 56-8.

14) Christine Hong, "Fiction of the North Korean Refugee Orphan," *38 North*(Sep. 11, 2012).

15) "중국에 무국적 북한 고아 2만5000여명" 『조선일보』 2009.3.20.

다음으로 ‘탈북고아’ 또는 ‘재중 탈북고아’라는 용어는 선행연구에서 대부분의 중국 체류 아동들이 부 또는 조부모, 친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현실과 상반된다. 또한 탈북여성이 북한에서 낳아서 중국에 데리고 들어왔다가 모와 분리된 북한국적의 ‘탈북고아’와 혼동되는 용어이다.

‘무국적 북한고아’ 혹은 ‘무국적 탈북고아’ 등의 용어는 선행연구와 본 조사 연구 결과 대부분 체류 아동들이 중국에서 호구를 취득하여 합법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 아동을 지칭하는 용어는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케이석(2010)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모두 정확한 용어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휴먼라이트워치의 케이석(2010)의 용어선택이 사실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중국출생 탈북여성 자녀(아동)’ 혹은 ‘탈북여성의 중국산 류 자녀(아동)’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후자의 경우 국내입국 탈북여성의 2차 피해 및 우리 정부의 보호책임 의무 등을 명시하는 의미를 지닌다.

2) 규모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탈북여성의 중국내 출산 자녀들의 규모 추정치에 있어서 연구자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다.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 아동의 규모에 대해 (사)좋은벗들은 2006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내에서 탈북여성이 낳은 자녀가 5만여 명을 넘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¹⁶⁾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은 "중국 내 무국적(無國籍) 북한 고아가 2만5000여명을 넘을 것"이라고 밝히며, 또 "탈북 여성이 중국 남자와 살다가 아이를 낳은 뒤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거나 다른 곳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북·중 국경지역인 중국 길림(吉林)성에만 1만2000여명의 무국적 북한 고아가 발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¹⁷⁾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2011년도 보고서에서 중국 내 ‘무국적 탈북고아’가 최대 10만 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¹⁸⁾. 그런데 여기서 ‘무국적 탈북고아’란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16) 이금순 외, 『2009 북한인권백서』(서울: 통일연구원, 2009), p.318.

17) 전계 기사, 조선일보(2009).

18) 미국의소리(VOA) 방송, 2011.11.04.

태어난 뒤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아동과 탈북과정에서 부모와 헤어진 채로 중국에 체류하며 중국 국적을 갖지 못한 아동을 모두 가리키는 것이다.

한편 (사)피난처(2011)는 재중 탈북아동들의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서 중국 체류 탈북여성의 전체 규모를 먼저 추정된 뒤, 결혼경험과 출산율을 가중치로 곱하여 그 규모를 약 6만명으로 제시하고 있다(추정식: 탈북주민 누적 중국체류 추정치 15만x 여성비율 0.7x 결혼비율 0.6).

그러나 이 추정식은 기혼 또는 동거 탈북여성(전체 중국체류 탈북여성의 60%)의 출산율을 무조건 1명으로 추정하여 중국내 주거환경이나 위생 및 의료시설 등을 감안한 영아사망율, 탈북여성의 높은 낙태율, 피임율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재검토가 요구된다.

(사)피난처의 추정치는 단지 탈북여성의 출산가능 자녀규모를 나타내며 실제 태어난 아동 중에 어머니의 강제송환, 가족의 방임, 가족해체 등의 사유로 사망, 또는 고아원으로 보내졌거나 실종 또는 기아가 된 아동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의 아동들은 조사 및 접근자체가 불가능하며 이들을 찾아내서 혈통을 확인하고 중국 당국의 보호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이 없다. 따라서 (사)피난처의 추정을 따르더라도 ‘접근이 가능한 실제 보호대상 규모’는 6만 명보다 상당히 적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전체 규모 추정치 제시보다 중요한 것은 부 또는 조부모 및 친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대상 아동’ 혹은 호구를 취득하지 못한 ‘무국적 고아’의 규모이다. 전체 재중 아동 추정치 최대값을 6만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본 조사연구의 대상인 접근이 가능한 ‘요보호아동’ 범주에 속하는 탈북여성의 재중 출산 아동규모는 최대 2-3만 이하로 추정된다.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결과 중국 내 탈북여성의 자녀 규모에 관해 현재까지 가장 과학적인 추정치는 존스홉킨스 대학의 연구팀의 것으로 보인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동북 3성 108개 거점지역에서 탈북자를 심층적으로 조사연구해 온 존스홉킨스 대학의 연구팀은 오랜 기간 추적조사 한 결과에 인구학적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2009년 현재 탈북여성과 중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규모가 1만여 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하였다.¹⁹⁾ 이러한 연구결과를 따른다면 현재 중국 내 ‘요보호 아동’의 규모는 이번 조사

19) 자유아시아방송(RFA), 2010.06.04.

결과에 나타난 요보호 아동의 비율을 고려할 때 대략 4,000여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호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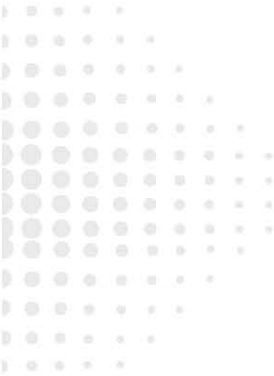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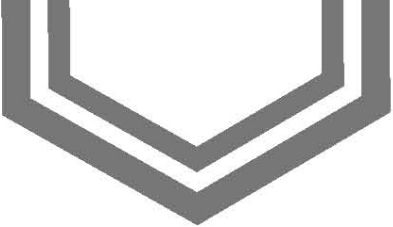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 아동들은 호구를 취득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⁰⁾ 이러한 결과는 조사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일 수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은 사망하였거나, 고아원으로 보내졌거나, 버림받아 거리를 떠도는 걸인으로 전락하여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국적 (탈북)고아’라는 개념 범주는 접근가능한 현재 중국체류 아동의 일부에게만 해당하는 용어이며 대다수 아동들은 친족의 보호를 받고 있는 ‘중국 국적을 가진 북한계 아동’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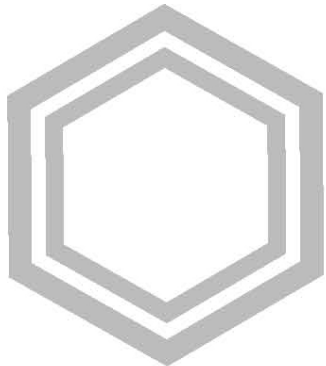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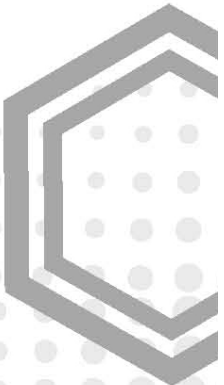

탈북여성들이 중국체류 기간에 낳은 ‘북한계 중국아동’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자국법규에 따라 자국 아동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국제인권법에 따른 아동권 보호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비록 대부분의 중국체류 아동들이 호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다행한 사실이나 어머니가 불법체류자인 관계로 대부분 뇌물이나 벌금을 물고 호구를 얻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중국인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호구를 취득하는 것은 중국 국적법에서 보장한 권리로 보호되어야 하며 따라서 중국 당국의 호구 취득 시 벌금부과조치로 아직도 호구를 얻지 못하는 빈곤아동들은 즉시 호구가 부여되어야 한다.

20) 한반도화해센터(2008) 조사보고서는 74.7%가 호구를 취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3.2%가 호구취득 시 벌금을 지불했다고 보고하고 있음. (사)피난처(2011) 조사보고서는 87%가 호구를 취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II. 북한이탈여성의 해외잔류아동 인권실태

1. 조사개요
 2. 조사방법
 3. 조사내용
 4. 조사결과
 5. 정책 고려사항
- 
- 
- 
- 

II. 북한이탈여성의 해외잔류아동 인권실태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여성 중에서 해외체류기간동안 자녀를 출산한 입국 북한이탈여성 30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인 입국 북한이탈여성의 해외잔류 아동의 인권실태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국 북한이탈여성들이 해외체류기간동안 출산한 자녀(아동)의 경우를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3개 그룹의 연구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체류기간동안 출산한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현재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입국 북한이탈여성 13명

둘째, 해외체류기간동안 출산한 자녀들을 해외(중국)에 두고 왔지만, 현재 연락이 되어 상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입국 북한이탈여성 12명

셋째, 해외체류기간동안 출산한 자녀를 해외(중국)에 두고 왔고, 현재 그 자녀(아동)과 연락이 안되어 상호관계가 단절된 입국 북한이탈여성 5명이다.

본 연구 참여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통하여 일부를 추천을 받았으며, 연구참여에 동의한 북한이탈여성들이 주변의 동일한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여성을 추천하여 연구 참여자를 확보하였다.

2) 조사기간 : 2012년 8월 1일 - 9월 15일

2. 조사방법

본 조사를 위하여 입국 북한이탈여성을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병행하여 면담초기에 기초정보를 파악하였으며, 면담에서 다루게 될 내용들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연구참여자의 기초신상정보와 탈북과정, 해외체류기간동안의 자녀출산 및 자녀양육과정, 한국

입국과정 및 현재의 생활현황, 해외잔류 아동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간략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인 입국 북한이탈여성들에게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개요 및 목적에 대한 설명과 주의사항 및 연구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여 본 연구의 윤리적 적절성을 확보하였다.

심층인터뷰는 대부분이 개별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일부의 경우 3명 이내의 소그룹으로 진행되었다. 소그룹으로 진행된 심층인터뷰는 한국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와 아동이 해외에 잔류한 상태이지만 현재 입국북한이탈여성과 연락이 되는 경우의 일부였다. 비교적 유사한 경험들을 하였기 때문에 보다 풍성하게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심층인터뷰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로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취를 하였으며, 현장노트를 기록하여 연구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였다.

3. 조사내용

연구참여자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얻고자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 체류기간동안의 생활과 자녀출산 및 양육, 한국에서의 생활 등을 묻기 전에 기본적으로 탈북배경과 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탈북배경과 과정에 대한 이해는 결국 북한이탈여성의 해외체류기간동안의 삶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과 깊이에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아래의 내용을 담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1) 북한이탈여성의 탈북배경과 과정은 어떠한가?
- 2) 북한이탈여성의 중국내 체류기간동안의 삶은 어떠한가?
- 3) 북한이탈여성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의 인권보호 상황(양육환경 및 호구 취득)은 어떠한가?
- 4) 북한이탈여성이 한국에 입국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 5) 북한이탈여성이 한국에 입국하면서 중국내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양육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6) 북한이탈여성들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해외잔류 아동은 어떠한 상황에 있으며, 그들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4. 조사결과

1) 연구참여자 현황

본 연구 참여자 현황은 <표 4>와 같다.

본 연구 참여자는 총 30명이었으며, 연령은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하였으며, 중국에서 체류한 기간도 2년부터 14년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첫 탈북년도 또한 다양한 양상을 보였으나 고난의 행군시기인 1997년부터 1999년까지가 상당수를 차지하였으며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가 2000년대 초반에 탈북하여 중국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에 입국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의 수는 대부분의 경우가 한명이었고 일부가 2명의 자녀를 출산하였다. 대부분의 경우가 한국 입국시에는 동반가족 없이 혼자서 입국하였고, 일부의 경우 이후에 자녀 혹은 배우자를 초청하여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 현재의 직업은 상당수가 무직상태였으며, 자녀양육 등의 이유로 수급자를 유지하고 있었다.

<표 4> 연구참여자 현황

순번	출생년도	탈북년도	중국체류기간	중국거주지역	본인호구취득	재중출산자녀수	한국입국시동반가족	현재직업
1	1979	1999	7년	길림성 왕청현	×	1	혼자	대학휴학
2	1980	1998	8년	흑룡강성 라북현	○	1	혼자	대학생
3	1964	1998	7년	길림성 연길시	×	1	혼자	주부
4	1973	2004	2년	길림성 연길시	×	1	혼자	주부
5	1967	2004	5년	하북성 진황도시	×	1	1명(딸)	무직
6	1968	2000	8년	흑룡강성 녕안시	×	1	혼자	무직
7	1989	2004	8년	요녕성 심양시	×	1	혼자	대안학교

8	1978	2004	6년	요녕성 홀루도시 건창현	×	2	혼자	생산직
9	1973	2007	6년	길림성 연길시	○	1	혼자	주부
10	1967	2006	3년	요녕성 홀루도시 건창현	×	1	혼자	대학재학
11	2005	1998	11년	길림성 왕청현	×	1	혼자	무직
12	1978	1998	9년	길림성 왕천현 대흥구진 쌍하촌	×	1	1명(딸)	무직
13	1978	2004	5년	요녕성 심양시 홀루도시	×	1	혼자	아 르 바 이 트
14	1963	1997	8년	길림성 사평시	×	2	혼자	직업훈련 아르바이트
15	1962	1999	7년	요녕성 심양시 베이시	×	1	혼자	무직
16	1983	2000	9년	길림성 연길시	○	2 (아들, 딸)	혼자	무직
17	1972	2000	8년	길림성 화전시	○	1	혼자	아르바이트
18	1977	2001	7년	하북성	×	2	혼자	정규직
19	1984	2004	6년	하북성	×	1	혼자	무직(주부)
20	1980	1999	6	길림성 덕혜시 초양현	×	1	혼자	아르바이트 (식당)
21	1974	1999	10	길림성 덕혜시 초양현	×	1	혼자	아르바이트 (식당)
22	1972	1998	11	길림성 왕청현 춘회촌	×	1	혼자	아르바이트 (식당)
23	1982	2004	8	요녕성 조양시	×	2	혼자	무직
24	1983	2003	9	산동성 주청시	×	1	혼자	무직
25	1979	1999	10	요녕성 링윈시	×	1	혼자	무직
26	1978	1998	11	길림성 연길시	○	1	혼자	무직

27	1978	1999	11	길림성 룡정시	×	1	혼자	무직
28	1979	1998	14	길림성 연길시	×	2	혼자	무직
29	1980	2002	10	길림성 연길시	×	1	혼자	아르바이트
30	1979	2003	9	길림성 룡정시	×	1	혼자	아르바이트

2) 입국 북한이탈여성의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삶과 한국입국과정

입국 북한이탈여성들은 해외(중국)체류기간동안 대부분의 시골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농사일과 집안일을 담당하였으며, 노동 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심한 감시와 복숭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 11] 고난의 행군시기에 사는 게 너무 바빠서 힘들게 지냈는데, 친척이 아는 사람집에 가서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 거기가 중국이었던데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거기서 두 번이나 팔려나갔어요. 그때는 중국이 어딘지도 몰랐었는데... 처음 사람이랑은 너무 맞지 않아서 두 번이나 도망쳐서 겨우 빠져나왔어요. 두 번째 사람을 만나서 아이를 낳았어요.

[여성 13] 2004년에 탈북해서 중국에서 총5년 동안 생활했어요, 우리 동네에는 북한여자들이 5명 살았고, 가까운 동네에는 20명이상 살았어요. 제가 생활한 곳은 심한 시골이어서 하루 종일 밭농사와 논농사로 일이 많았어요. 가난한 집이어서 일은 많이 해도 먹고사는 것이 힘든 생활이었어요.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한족과 함께 사는 경우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생활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 함께 생활하는 동안 짧게 습득한 중국어로 의사표현을 하면서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한계가 있었으며, 결혼관계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중국)에서의 북한이탈여성의 삶은 불안정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언어의 차이 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나이차이가 크고 성격차이 등의 관계가 원만치 않고 가족들로부터 감시와 무시

하는 태도를 접한 북한이탈여성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떠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한다.

[여성 7] 저는 언니와 함께 팔려 나와서 2년 동안은 언니네 집에서 살다가, 선 같은 것을 보고 호구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10년 차이나는 한족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호구로 만들어주지 않았고 성격은 온순한 것 같은데, 능력도 별로 없고 인간관계도 잘 못맺고 말투도 많이 투박하고, 특히 북한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많이 보여서 살면서 정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갈 생각을 했었고, 먼저 한국에 간 언니가 4백만원을 도와줘서 베트남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여성 15] 처음에는 병어리한테 시집을 갔어요, 온가족이 다 병어리인 집이어서 도무지 중국말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말이 안 통하는 곳에서 살면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도망치려다가 잡혀서 그 친척이 와서 죽을 만큼 많이 때려서 귀가 먹었을 뿐 했어요. 그 후에 지금 딸을 얻은 남자한테 갔어요. 그 사람은 북한 여자들한테 낳은 아이는 똑똑하다고 해서 그 남자랑 딸을 낳았고 어렵게 중국말을 배웠어요. 언어맞고서 사는 삶, 말을 못하고 사는 인생이 참 서글펐어요. 어떤 때는 억울하게 다른 탈북여성이 도망갔다고 하룻밤을 온통 맞았는데 정말 개나 돼지처럼 마구 맞았어요. 39세에 중국에 나갔다가 10년을 짐승처럼 살았던 지나간 10년이 정말 끔찍하기만 해요.

[여성 23] 북한에서 채소장사를 하다가 중국에서 돈을 벌려고 팔려서 왔어요. 여기서 두 명의 애를 낳았고, 열심히 키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애를 낳으니 더욱 함부로 대하고 아이엄마로서 부인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했으나, 부인취급도 안 해주었고 기본적인 신뢰도 보여주지 않아 늘 싸움만 하다가 그 집을 도망쳐 나왔어요.

입국 북한이탈여성들이 해외(중국)에 체류기간동안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한 중국내 가정은 한족과 조선족 가정의 비율이 유사하였다. 즉, 입국 북한이탈여성의 배우자(아동들의 생부)들은 한족과 조선족이 거의 비슷한 비율이었으며 아동의 생부가 어떠한 민족이냐에 따라서 해외(중국)내에서 출생 입국 북한이탈여성의 자녀들의 언어발달과 향후 한국입국이후의 생활적응에 영향력이 있게 된다.

현재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입국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중국배우자가 한국입국과정을 지원을 하였으며, 먼저 한국에 입국한 이후 중국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통해 배우자 및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려온 경우가 많았다.

[여성 3] 중국에 가서 만난 지금의 남편과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낳고 잘 살았어요. 남편으로 도움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고, 한국에 온 이후에 국제결혼을 통해서 남편을 초청했어요. 그 후에 아이들을 친자로 데리고 왔어요.

[여성 5] 중국에 사는 동안 남편의 도움으로 북한에서 낳은 딸을 데려올 수가 있어요. 중국에 살면서 남편의 도움으로 딸과 함께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어요. 2년후에 남편을 국제결혼을 통해서 초청하여 그때 중국에서 낳은 아들 1명도 함께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내가 먼저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중국으로 돈을 보냈어요.

또한, 현재 해외에서 출산한 자녀들이 중국에 있는 경우는 한국 입국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다. 지속적인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과 신변안전에 대한 불안 등으로 자녀들을 동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몰래 집을 떠나와서 중국 곳곳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입국한 경우가 많았다.

[여성 15] 정말 힘들게 그 집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생긴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오고 싶었어요. 계속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가겠다고 했지만, 반대를 심하게 했고, 결국 몰래 그 집을 나와서 중국에

서 일하면서 생활하다가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여성 17] 처음에는 중국에 팔려나와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농사일 하면서 살다가 그 집을 벗어났는데, 그 이유는 밖에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 돕겠다고 하니 시내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식당일을 했었는데, 그 일하면서 북한사람이라는 것이 탄로 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한국기업에서 일을 했고 거기서 몇 년 동안 더 일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거기서 번 돈은 애기와 북한 가족에게 보냈어요. 몇 년동안 중국을 떠돌면서 생활을 하니, 지속적으로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특히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감시가 심해지면서 한국에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성 18] 제가 25세에 한 살 어린 중국사람한테 팔려왔어요. 3년정도 사는 동안 아이도 한명 낳았는데,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맞고 살았어요. 아이의 아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까지...그래서 그집을 떠나서 중국 여러 곳에 생활을 하다가 한국인의 도움을 통해서 한국에 오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3) 북한이탈여성의 중국 출생 자녀들의 중국내 생활실태

(1) 중국 출생 자녀들의 중국내 호구 취득 여부 및 취득방법

연구참여자들의 해외(중국)내 출산 자녀들의 90%이상이 학교 입학에 위하여 학교입학시기 즈음에 불법으로 호구를 취득하였으며, 호구 취득을 통해서 비교적 신분 안정성은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호구 취득을 위해서 아이 아빠가 1천위안부터 6천위안까지의 돈을 내고서 호구를 취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여성 6] 우리 아이는 2002년에 출생했는데, 계속 호구 없이 살다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2009년도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호

구를 샀어요.

[여성 9] 학교에 보내려고 시어머니가 파출소에 찾아가서 아들이 사고로 아이를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호구를 해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벌금 3천위안을 내고 우리 애기의 호구를 올렸어요.

[여성 10] 내가 한국에 온 이후, 돈을 6천위안을 보내줘서 호구를 만들었어요.

또한, 2006년~2007년도에는 북한이탈여성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중국 관공서에서 일제히 일정금액의 벌금을 내도록 한 이후, 일괄 아동들이 호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여성 3] 아이를 낳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주고서라도 아이의 호구를 만들려고 했는데, 돈을 쥐도 안되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당시 북한여성들이 애들을 두고 떠나자 정부 시책으로 아이들의 학교입학시기에 맞춰서 중국돈 1천위안을 받고 일제히 호구를 올려줬어요.

[여성 11] 2006년 정부적인 시책으로 탈북여성의 아이들에게 호구를 해주라고 할 때가 있어서 그때 2천위안을 주고 했어요.

[여성 12] 2006년도에 정부 시책으로 호구를 만들어줘서 중국돈 1천위안을 주고 아이의 호구를 만들었어요.

또한, 일부의 경우는 입국 북한이탈여성이 중국에 체류 중인 자녀를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서 급하게 호구를 사는 방식으로 자녀들의 호구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여성 5] 내가 먼저 한국에 들어온 후에 아이를 데려오려니까 아이의 신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이는 호구

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돈을 보내서 중국돈 6천 위안으로 아이의 호구를 샀고, 그 이후에 한국에 데려올 수 있었어요.

북한이탈여성에게 호구를 갖도록 해서 출생한 자녀도 자연스럽게 호구를 취득한 경우도 있었으나, 그와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였다.

[여성 16] 제가 결혼한 사람은 경제적인 능력도 상당히 있어서 7-8만원 안을 들여서 호구를 사줬어요. 그리고 결혼식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호구를 가지고 있어요.

[여성 17] 저는 중국으로 팔려나갔는데, 그 집에서 내 호구를 해 주었어요. 내 호구를 만드는데 1만원안정도 돈을 들여서 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호구가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연구참여자들 중에서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학교에 입학 하었는데도 호구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 8] 우리 아이는 지금 8세라서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호구가 없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다니는데 지장이 없어요. 거기는 워낙 시골이라서 호구 없이도 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성 13] 우리 아이들은 중국 호구가 없는데, 내가 한국에서 번 돈을 보내서 이제라도 만들어 주려고 돈을 알아보니까, 지금 1만원안을 주더라도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호구 만드는 방법이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았던 곳은 호구 없이도 중학교까지는 갈 수 있다고 하여 그렇게 지금 호구 없는 상태로 놔두고 있어요.

(2) 중국 출생 자녀들의 인권상황 : 주양육자와 교육현황(중국내)

중국내에서 체류기간동안의 입국 북한이탈여성이 출산한 자녀들은 북한이탈 여성들이 중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대체로 북한이탈여성들이 주양육자였으나, 북한이탈여성들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조부모와 부(父)가 유사한 정도로 자녀들의 양육을 담당하였다. 대부분의 경우는 조부모가 주양육자 역할은 하였는데, 중국의 전반적인 자녀양육방식과 생활문화적 특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골 농가(경제적인 취약성)라는 환경적 특성(위생상태 불량, 기본적인 의식주의 불안정성)들을 고려할 때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자녀들이 양육되고 있다. 특별한 보호 및 양육이라는 개념이 부재하다고 할 수 있으며 농번기 시절에는 영유아기의 아동들임에도 불구하고 농사일 현장에서 방임된 상태로 있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여성 6] 우리 둘째아이는 아직 어린데, 할머니가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일을 할 때 아이는 할머니를 따라가서 논밭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 같아요.

[여성 24] 애 아빠가 본인이 키우겠다고 하면서 아이를 주려하지 않아서 데려올 수 없는데, 지금 병을 앓고 있어서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상황도 못되고 있어요. 올해 9세인데, 아이가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는 것 같아서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또한, 일부의 경우는 해외잔류 아동들의 생부와 생모(북한이탈여성) 모두가 한국에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조부모의 보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웃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여성 28] 나는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되어 남편이 한국으로 일하러 갔어요. 거기서 생활비를 벌어서 나한테 보내줘서 생활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어요. 계속 신분이 불안정하니,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결정을 하고 남편하고 논의를 했는데, 내가 한국 가는 것을 반대했고 가더라도 아이를 못 데

려가게 했어요. 남편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말이에요. 지금 아이는 이웃집에 맡겨져 있어요.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고 있고, 나는 아직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보내지는 못하지만, 아이와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또한, 부(父)가 주양육자인 경우도 자녀에 대한 애정은 있으나 양육에 대한 경험이나 정보 및 지식이 없어, 적절한 보호 및 양육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였다.

[여성 15] 아이 아빠는 말로는 아이를 예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돼지처럼 키운다고 해야 해요. 당시에 딸을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그때는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나중에 애들을 비행기로 데려올 수 있다고 들어서 먼저 도망을 나와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중국에서의 생활을 생각하면 거기 삶이 너무 험난하니까, 딸 생각이 더욱 간절해요.

또한, 북한이탈여성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의 학력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유치원과정과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을 다니고 있었다. 양육환경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매우 열악하지만, 교육적 혜택이 어느 정도는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교육적 혜택이 충분하거나 아동들의 특성이나 욕구가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 중국 출생 자녀들의 해외잔류 및 한국 입국 현황

북한이탈여성들이 해외(중국)체류기간동안 출산한 자녀들의 생활실태는 2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이탈여성에게 의해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에 체류하면서 중국인으로 생활하는 경우이다.

북한이탈여성들이 해외(중국)체류기간동안 출산한 자녀들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북한이탈여성들이 중국내 배우자와 합의 하에 국제결혼을 통하여 자녀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자녀들의 입국 관련 비용들은 대

부분이 입국 북한이탈여성들이 부담하였다. 북한이탈여성들이 해외(중국)체류기간동안 출산한 자녀들이 그대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배우자(자녀의父)가 자녀가 한국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여성 14] 내가 한국으로 올 때부터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한국 행이 너무 험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를 데리고 오면 잡힐까봐...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나중에 데려오기로 했어요. 하나원 나오면서 아이를 데려오려고 연락을 했더니, 남편이 아이만 데려가면, 위협하게 한다고 협박을 했어요. kbs방송을 통해서 아이를 데려오려는 노력까지 했지만 잘 안되었고. 남편이 자꾸 자기도 데려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아이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한테 50만원을 주면, 아이를 주겠다는 협박도 하고... 그리고 신변의 위협을 하는 말도 했는데, 북한 보위부에 내가 한국 어디에서 살고 있다고 신고를 했다고 협박도하고, 한국에 와서 나를 죽이겠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도저히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일부의 경우는 북한이탈여성들이 신변안전을 위해서 피신하는 과정에서 자녀들과 헤어지고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아서 자녀를 데려오고 싶으나 데려올 수 없는 상황들로 정리할 수 있다.

[여성 18] 저는 2001년도 탈북해서 중국에서 7년8개월 동안 거주했는데, 3년정도 한 남자랑 살다가 아이 한명 낳고 6개월만에 도망쳤어요. 그때 낳은 아이를 찾고 싶은데, 지금은 그 아이와 연락이 안되고 있어요. 그곳을 도망친 몇 개월 후 찾아갔으나, 아이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다른 데로 결혼을 하는 바람에 만날 수가 없어요.

한편, 자녀를 데려오고 싶지만 여러 법률적인 절차에 의거할 때 북한이탈여성의 조건이 적절하지 못하여 데려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 14] 중국에 두고 온 그 아이는 제가 늦게 낳은 아이라서 정말로 꼭 데려오고 싶어요. 아이를 생각하면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게 되어요. 아이의 아빠가 협박하고 아이를 안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요. 나도 아이의 엄마인 것이 분명한테 왜 아이를 볼 수 없고, 데려올 수 없는지 법적인 지원은 없는지... 이러한 상황이 많이 한스러워요.

[여성 17] 아이를 데려오고 싶은데, 그 집에서 아이 아빠와 안산다고 하니깐. 한때는 아이하고 통화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를 키웠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나이도 많고 나도 계속 아이를 데려오려고 계속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데려가라 하는데 다른 게 문제더라구요. 여권문제가 잘 안되어서 힘든 상황이에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호구를 만들었고 아이 호구도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어서 그때는 그것이 좋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어요. 중국에서의 엄마의 호구가 현재의 제 이름과 다르니,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법률적인 절차가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고 있어요.

[여성 27] 내가 한국에 올 때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아이 아빠가 완전히 반대했어요. 먼저 한국생활하고 있었던 아이 아빠가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 생활하는 것 보면서, 부적응 하는 사례를 보게 되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지요. 그렇지만, 가족이니까 떨어져 살지않고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남편을 설득시켜보았지만, 통하지가 않았어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우리 아이를 데려오고 싶은데, 현재, 엄마의 의지만으로는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는 중국에서 호구도 없고 공식적으로 아이의 엄마로서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노력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었어요. 결국 아빠가 동의해야 가능한 일이더라구요. 정말로 화가나요.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고 누리고 싶어서 한국에 왔는데, 정작 내가 낳은 아

이를 데려오려고 하는데도 나에게 권리가 없으니 화가나요.

일부의 경우, 자신의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에 대해 자신보다 배우자가 더 잘 양육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녀들 데려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여성 7] 남편이랑 살면서 애정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애정도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아이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잘 해주었어요, 아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구요. 남편은 본인이 공부를 못한 것에 대한 한이 있어서 자기 아이를 열심히 공부를 시키겠다고 하면서 5세 때부터 유치원을 보냈어요. 한국 떠나올 때 아이를 데려올까 하는 고민은 없었어요. 남편이 애를 잘 보니까...

4) 한국 입국이후 문제점

(1) 북한이탈여성과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 출생 아동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한국에 들어온 중국출생의 북한이탈여성의 자녀들의 경우, 언어와 문화적응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족가정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말은 한국어가 일부 되지만, 글쓰기 및 읽기는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및 다양한 교육환경에 노출된 경우 적응하는데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들이 북한이탈여성들의 남은 적응과정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놀림을 받거나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여성 6] 우리 아이는 중국에서 조선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제가 한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한국에 와서 3학년으로 입학을 시키니까 잘 적응을 못했어요. 조선족 학교였지만, 수업은 중국어로 했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조선말을 알아듣고 쓰기는 하나 말을 중국어만 하는 아이였거든요. 한국에 와서 3개월

을 입을 다물고 살았어요. 지금은 우리말도 제법 하기는 하는데, 학교수업 중에서 사회와 과학 수업을 어려워해요. 학원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따라가기 어려워하고 있어요. 우리 애가 저한테 ‘왜 나를 여기 데리왔냐’고 화를 내고 중국에서 공부를 잘 했는데 여기 와서는 공부도 못하고 친구들과 지내는 것도 힘들다고 하면서 원망을 했어요.

[여성 12] 우리 아이는 저랑 같이 한국에 입국했는데, 13세때 한국에 온 거예요. 중국에서 어느정도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비교적 잘 적응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특히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고 조선족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언어나 학습의 내용에 있어서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또한, 엄마와 상당기간 떨어져 지내다가 다시 만난 경우, 중요한 성장 시기에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정 및 애착관계 형성에서의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입국 북한이탈여성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여성 1] 내가 먼저 한국에 입국한 후에, 남편과 아이를 데려올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빚도 많고 함께 사는 동안 많은 무시를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이후 생각이 바뀌어서 아이만 데려왔어요. 남편이 많이 반대했지만, 결국 아이를 데려 오게 되었는데, 남편이 우리 딸한테는 엄마는 너를 버리고 갔다고 말을 했고, 한참 자랄 무렵에 내가 아이를 두고 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정서적으로 좀 불안해 보여요.

[여성 4] 내가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번 북한으로 잡혀나갔었어요. 그때마다 몇 개월씩, 길게는 1년 정도를 북한에서 있다가 다시 왔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아이에게 상처를 줬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남의 손에서 키워서 그런 것인지, 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

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도 아이는 계속 응석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신경질을 자주 내요. 안쓰럽기도 하지만, 애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성 12] 내가 2007년 남한입국을 시도하다가 북송으로 아이와 4년 정도 떨어졌다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성장 시기에 어머니와 떨어져있어서 그런지, 아이가 예전보다 생기가 없어졌고, 많이 위축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수업을 하면서 과학과 사회가 많이 딸리는 상황이고, 외래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학교 공부 때문에도 많이 위축된 것 같아요.

(2) 해외 잔류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

해외 잔류 북한이탈여성의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은 양육환경의 불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양육자가 조부모와 부(父)이기 때문에 적절한 양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교육을 받는 정도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 6] 내가 살았던 곳은 깊은 시골이라서 옥수수 농사를 주로 하면서 살았어요. 남편은 심양으로 나가서 숙식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서 1년에 1-2회 정도 집에 와서 아이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시어머니예요. 지난번에 중국에 들어가서 보니, 시어머니도 건강이 별로 안 좋아서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큰애는 8세인데 작년부터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 못해서 학년 유예를 했고, 작은애는 지금 5세로 시어머니가 일하는데 따라 다니면서 지내더라구요.

[여성 13]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어요, 나랑 남편이 모두 한국에 나와 있어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을 둘째 동서가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두번씩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이랑 여러 가

지 물건들(아이를 돌보고 있는 동서네 집에 줄 물건들이랑)을 택배를 보내요(28kg). 남편이 착하기는 하지만, 능력이 부족하고 세심하지 못해서 내가 많은 것을 신경 써야 해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여성 17] 우리 아이는 조선족 학교가 없어서 중국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거기서 조부모(70세가 넘은)가 키우고 있는데, 아이를 깨끗하게 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집안형편이 괜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위생개념도 없고. 한국 엄마들처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잘 양육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여성 19] 우리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호구는 만들었어요. 내가 떠나올 때는 시부모님이 아이를 돌봤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사과밭을 갖고 있어, 어느 정도 생활형편은 될 것 같은데, 아이 아빠가 아이랑 둘이 살면서 잘 살피줄지 걱정이 들어요. 올해 학교에 들어갈 나이인데... 어릴 때 아이 먹는 것도 부실하게 먹이고, 중국에서는 아이에게 우유 먹이고 그런 것도 없고 어른들이 먹는 것을 그대로 먹여요, 우리 아이도 대충 그렇게 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 24] 아이와 연락을 하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공부도 별로 안하고... 집에 오면 반기는 사람도 없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전화통화는 했는데, 아이가 언제 오냐면서 울었어요.

(3) 북한이탈여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입국 북한이탈여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한국으로 자녀들을 데려온 경우는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으며, 한국으로 자녀들을 데려오지 못한 경우는 심리적인 어려움 및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리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으로 자녀들을 데려온 경우에 발생하는 어려움은 상당기간 헤어져 지냈고 자녀들의 경우, 생활환경이 바뀐 한국에서의 삶이 매우 낮은 상태인데, 주양육자가 되는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우도 한국적응 과정에 있으므로 적절하게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보호망을 연결하지 못하여 본인의 자립 및 적응 뿐 아니라 자녀들의 보호 및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 7] 아이들이 너무나 걱정되고 하루빨리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지만 내가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아직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매일 매일 아이들 걱정 때문에 밤마다 잠자기도 힘들어요.

[여성 14] 아이를 데려오려고 너무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았지만, 결국 아이도 데려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 마음이 정말로 괴로워요. 아이의 아빠로부터 협박을 받는 것도 괴롭고 중국에 남아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 더욱 괴롭고 한국을 때 아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데리고 왔어야 하는데...라는 후회만 가득해요.

[여성 17] 12세짜리는 아들인데, 사춘기를 겪는 것 같아요. 이번에 중국에 들어갔는데, 엄마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쓰더라고요, 아이가 이미, 마음이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못 키워 준 것이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중국에 가서 청도 호텔로 데려가서 씻겨주고, 좋은데 구경도 시켜주고. 했더니, 사람들이 우리 애를 한국애로 봐주니까 아이가 너무 행복해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빨리 데려와서 좋은 세상을 느끼게 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중국에 자녀들을 두고 온 경우는 중국내 거주하고 있는 해외잔류 아동들에 대한 입국 북한이탈여성들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북한이탈여성들은 중국내 자녀들과 월1-2회 이상

전화통화를 하고,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일정시간이 경과한 이후, 중국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보고 오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월50만원을 보내는 경우에서부터 분기별 50만원 지원까지 다양하게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중국에 돈을 보내고 있었으며, 명절 및 생일 등에는 옷이나 생활용품 등을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현재 주양육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볼 수 있었다. 입국 북한이탈여성들은 중국에 두고 온 자녀들로 인해서 심리적인 어려움 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여성 13] 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매달 중국으로 50만원을 중국으로 보냈어요. 43만원 생계급여 받으면서 매일 저녁에 아르바이트(불고기집) 해서 3만원씩 벌고 그것을 모아서 중국에 남아 있는 2명의 아이들을 생각해서 매달 50만원 중국에 보내줬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중국에서 일도 안하고 계속 돈을 달라고 해서 이런 저런 고민하다가 중국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한국에서 일자리도 만들어 줘서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라고 했지요. 그이후로는 직접 돈을 벌어서 중국에 50만원씩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동서에게 보내고 있어요.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저런 노력도 하고 있구요.

[여성 16] 한국에 데려오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내가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하려고 해요. 지금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이 양육비를 매월 50만원 보낸 것으로 제 역할을 다할 생각이예요.

[여성 17] 아이와 주1회 정도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으며, 한국에서 라면, 김 등의 먹을 것이라곤 물건을 챙겨서 보내고 있어요. 한국에 와서 2번 중국에 들어가서 얼굴을 보고 왔다. 경제적인 형편상 돈은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여성 20] 아이를 위해서 연간 1백만원 정도를 보내고 있어요. 전화통화는 한 달에 1-2회 정도 하고 있어요.

[여성 21] 아이와 4세 때 헤어졌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에 대한 기억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데, 전탁(기숙학교)에 보내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이를 위해서 연간 2백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어요.

[여성 22] 지금 아이는 시어머니가 키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돈을 벌어서 월50만원 정도를 보내고 있다.

또한, 중국내 자녀들과 연락이 닿고 있는 입국 북한이탈여성들의 고민은 자녀들을 언제 데려올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데려올지 말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자녀를 주려하지 않는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여성 6] 중국에 남편과 아이 2명이 있는데, 한국에 온지 1년 반 만에 중국에 2백만원 들고 들어가서 아이들을 보고 왔어요. 중국에 가서 아이들을 보니까, 애들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많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 다녀온 이후 더욱 속상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에요.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지만, 나도 정착 중에 있으니, 아이들을 데려올 생각을 하니,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편은 내가 아이들을 데려갈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3천 만원을 모으면 아이들을 데려올 생각이예요. 한편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왕따 당할까봐 걱정도 되지만요.

[여성 7] 한국 떠나올 때 아이를 데려올까 하는 고민은 없었어요. 남편이 애를 잘 보고, 아이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고민을 안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아이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요즘은 고민이 많아요. 남편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보육원에 보내고 있고 주말마다 남편이 거기에 가서 아이를 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나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한국에 온지도 얼마되지 않아서 힘든 상황이라서...

[여성 21] 아이가 점점 더 커가고 있는데,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올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지금처럼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으로 해야 할지, 아이를 보다 더 좋은 환경인 한국으로 데려올지에 대해서 잘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여성 22] 시어머니가 비교적 잘 키우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내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랑 같이 살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현재 13세이고 6학년이라서 한국에 와서 잘 적응할 것인가가 고민이라서 결정을 못내리고 있어요.

한편, 중국내 자녀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입국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우도 있었다. 중국내 아이의 생부가 연결을 시켜주지 않는 경우나, 이사를 가서 연락이 두절된 경우들이다. 또한, 중국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이나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잊고 사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여성 18] 저는 2001년도 탈북해서 중국에서 7년 8개월 동안 거주했는데, 3년 정도 한 남자랑 살다가 아이 한명 낳고 6개월 만에 도망쳤어요. 그때 낳은 아이를 찾고 싶는데, 지금은 그 아이와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그곳을 도망친 몇 개월 후 찾아갔으나, 아이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다른 데로 결혼을 하는 바람에 만날 수가 없어요.

[여성 23]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중국에 남겨진 아이 2명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아이아빠나 시아버지가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못데려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은 아이만 바라보고 있는 집안이라서 특히, 시아버지가 아이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상황이라서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데려와야 할 텐데, 남은 가족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편, 한국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차별과 편견 등으로 인한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편견 뿐 아니라, 그들이 해외체류기간동안 출산한 자녀 및 북한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면서 한국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하였다.

[여성 6] 제가 우리 아이를 입학시키려고 학교에 갔더니, 학교 선생님이 우리한테 중국사람이면 중국에서 살지 왜 한국에 왔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북한출신이라고 하였고 내가 낳은 자식이라서 한국에 데려왔다고 설명을 하니, 학교에서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때 참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 다니면서도 학교 친구들이 잘 놀아주지 않으니, 우리 아이들만의 별도의 교육은 시켜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계속 상처받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요.

[여성 9] 어린이집에서 차별취급을 하는 것을 느꼈어요. 어린이집에 가면 교사들이 나를 접할 때 하는 행동이나, 우리 아이의 다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차별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운다고 학교교사가 아이를 한 단계 어린 반에 내려붙이라고 자꾸 전화를 하는데, 이쪽 아이 같으면 그렇게 안할 것 같아요.

[여성 10] 제 생각에는 탈북자를 위한 모임이나 혜택보다는 한국의 교사들이나 사람들의 탈북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게 하는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서 받는 차별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5. 정책 고려사항

(1) 북한이탈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정착을 위해서는 그들이 중국내에서 낳은 자녀들의 문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중국을 거쳐오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상당수가 중국에 체류하면서 낳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현재의 북한이탈여성의 정착과 상당히 밀착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몇 사례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북한이탈여성들이 그 자녀들을 중국에 잔류 혹은 한국에서 함께 거주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이탈여성들의 정착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중국내에서 출산한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2) 북한이탈여성들이 해외잔류 아동들로 인해서 한국에서의 정착과정에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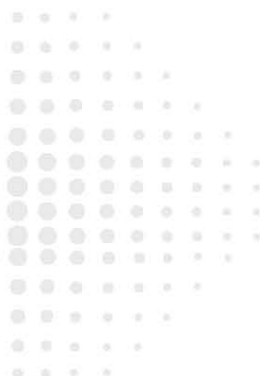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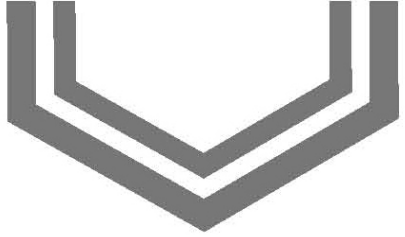
중국에 잔류한 북한이탈여성들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양육권을 주장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하고 있는 중국 배우자들이 완강하게 자녀들을 엄마가 데려갈 수 없도록 하면서도 적절한 교육과 보육 및 양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열악할 뿐 아니라 양육환경도 불안정하여서 심리정서적인 성장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중국잔류 자녀들의 불안정적인 성장은 결국 그들을 낳은 북한이탈여성들의 정착과도 관련성이 있다. 실제로 본 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 잔류 자녀들에 대한 근심걱정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에 있거나, 현재 자신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내 잔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자녀들에 대한 개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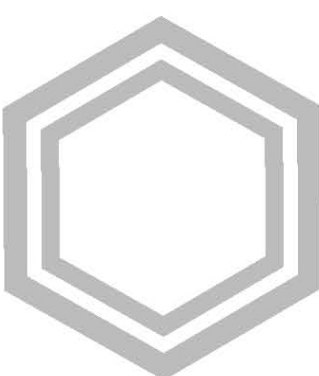

(3) 북한이탈여성들이 출산한 해외잔류 아동의 신속한 입국 및 국내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여성들이 해외잔류 아동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고자 하나, 생부가 아이의 한국행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외잔류 아동을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일부 탈북여성들의 경우 생부와의 합의 등을 통해서 국내 입국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의 지원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이들 아동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여성들이 분명히 생모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그들의 신분이 불안정하고 공식적인 호구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로서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으며 추후 이들 아동들이 생모와 결합하여 한국에 정착할 경우 가족으로 인정받고 한국인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III. 중국출생 탈북여성 아동의 인권실태

1. 조사개요
 2. 탈북여성 아동 가정의 사회경제적 상황
 3. 아동 가족의 해체
 4. 아동의 주요 인권상황
 5. 아동의 현지 생활과 외부 지원
 6. 정책 고려사항
- 
- 
- 

III. 중국출생 탈북여성 아동의 인권실태

1. 조사개요

1) 조사 대상 지역 특성²¹⁾

이번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지역의 특성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어떤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북한이탈여성의 아동세대 규모 및 그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여성이 낳은 자녀의 분포도가 높은 지역을 찾기 위해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의 북한여성의 탈북과 중국에서의 체류과정 및 현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중국에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탈북여성의 유입은 주로 중국의 동북3성 지역에 집중되었다.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민족구성에 있어 한국어를 사용할 줄 아는 한국계 중국인이 밀집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역은 네이멍나 산둥성 등 동북3성 외곽에 위치한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일부는 동북3성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쓰촨성이나 신장웨이우얼자치구 지역으로까지 이주한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는 연변조선족자치주(동북3성 지역 내)에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기 시작했다는 점과 타지역 중국남성의 북한이탈주민과의 혼인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북한이탈주민의 중국으로의 이동과 체류상황을 모니터링해 온 현지 전문가들은 여전히 중국체류자 중 동북3성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타 지역으로의 확산은 동북3성 내 도시에서 돈을 벌기가 어려워진 일부 2-30대 탈북여성이 경제적 목적으로 동북3성 인근지역의 일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는 탈북여성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일부도시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북3성에서 먼 지역으로의 탈북여성의 이동은 극히 일부 사례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팀은 동북3성 지역 내 탈북여성 밀집지역, 그래서 그들이

21) 중국 현지 북한이탈주민 전문가 3인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함.

낳은 자녀가 다수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그 중에서 현지 조사원이 평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대상자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국 당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에 산동성 내 탈북여성 밀집지역인 1곳을 추가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에 조사팀의 실태조사가 이뤄진 14개 지역과 지역별 방문세대 수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지역별 조사대상 세대 수

성 단위	시/현 단위	조사대상 세대 수
길림성	연길시, 도문시, 화룡시, 훈춘시, 매하구, 왕청현, 유하현 등 7개 지역	64세대
흑룡강성	동녕현, 립구현, 목단강시 등 3개 지역	26세대
요녕성	관전현과 동광현 등 2개 지역	10세대
산동성	교주시	2세대

* 산동성 교주시에서 접근이 이뤄진 2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요청으로 세부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해 조사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2) 실태조사의 방법

중국 현지에서 북한이탈주민 아동 실태조사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지 전문조사원이 아동의 거주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팀은 중국출생 탈북여성 자녀 아동의 실제 보호자를 만나 면접조사를 하였고 아동과도 직접 면접조사를 하였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아동의 보호자는 아버지가 14명, 어머니 18명, 조부모 25명, 형제 1명, 계모 2명 등으로 함께 사는 직계가족이 60명이었고 직계가족 외 친척이 21명, 그리고 친척 이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19명(교회 관련 종사자가 12명, 쉼터보호자 4명 등)이었다(<표 6>).

<표 6> 피면접자의 아동과의 관계

피면접자		빈도(명)	퍼센트(%)
함께 사는 직계가족 (60명)	아버지	14	14.0
	어머니	18	18.0
	조부/조모	25	25.0
	누나, 계모	3	3.0
직계 외 친척	친척	21	21.0
친척 외 보호자	교회 종사자	12	12.0
	쉼터보호자	4	4.0
	기타(사돈, 전택선생, 보모 등)	3	3.0
합계		100	100.0

면접조사는 각 보호자 1인당 1시간~1시간 30분의 시간동안 이루어졌으며 아동과의 만남과 면접은 이보다 더 짧은 30~4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처럼 현지에서의 면접조사 시간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짧은 것은 조사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조사를 실행하는 것이 현지에서 불법화되어 있는 상황 때문이다. 조사원과 피면접대상자 모두 행동에 제약이 따르므로 장시간 조사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아동과의 직접 면접조사는 아동에게 미칠 심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진행하였다. 특히 아이가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를 사전에 파악하여 한국이나 북한에 있는 어머니와의 연계여부나 그리움 등 현재 살고 있는 어머니 이외 다른 어머니의 존재를 밝히는 것과 관련된 질문은 삼갔다.

3)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

이번에 조사대상인 현지 북한이탈주민아동의 성별 및 연령, 출생지 및 현재 거주지 등 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본다.

먼저 조사대상 세대의 북한이탈주민 아동의 성별은 남성이 58명, 여성이

42명이었다. 이러한 비율은 중국인구의 성비가 118²²⁾인 것과 거의 유사한 것이다.

<표 7> 아동의 성별

성별	빈도(명)	비율(%)
남자	58	58.0
여자	42	42.0
합계	100	100.0

조사대상 아동의 출생년도는 1996년에서 2006년까지 분포되어 있다. 이중 1999~2002년에 태어난 아동이 전체의 84%로 나타나 이 시기에 탈북여성의 자녀가 많이 태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8> 아동의 출생년도

출생년도	빈도(명)	비율(%)
1996	1	1.0
1997	1	1.0
1998	3	3.0
1999	33	33.0
2000	22	22.0
2001	19	19.0
2002	10	10.0
2003	6	6.0
2004	3	3.0
2005	1	1.0
2006	1	1.0
합계	100	100.0

22) 중국인구계획생육위원회의 ‘국가인구발전전략보고’, 2007.

조사대상 아동의 출생지역을 보면 연길, 왕청, 화룡 등 길림성이 50명, 관전 등 요녕성이 13명, 흑룡강성 27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 산동성 3명, 하북성 1명, 북경직할시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북한에서 태어난 아동이 5명이었다.

<표 9> 아동의 출생지

출생지역	빈도(명)	비율(%)
길림성	50	50.0
요녕성	13	13.0
흑룡강성	27	27.0
산동성	3	3.0
하북성	1	1.0
북경시	1	1.0
북한출생	5	5.0
합계	100	100.0

이들이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는 길림성이 60명, 요녕성이 14명, 흑룡강성이 26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출생지와 비교하면 출생시기에 비해 요녕성은 1명 증가, 흑룡강성은 1명이 줄어들어 거의 차이가 없으나 길림성은 10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북한태생 아동, 산동성 및 하북, 북경 등 타지역 아동들이 생후에 대체로 길림성 지역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0> 조사 대상 아동의 거주지

거주지역	빈도(명)	비율(%)
길림성	60	60.0
흑룡강성	26	26.0
요녕성	14	14.0
합계	100	100.0

2. 탈북여성 아동 가정의 사회경제적 상황

중국출생 탈북여성 아동의 인권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 가정의 사회경제적 상황, 아동 가정의 해체 과정, 아동 가정의 경제적 수준 및 현재 아동의 생활 보호 상태, 아동의 가정 및 학교생활 관련 만족감 그리고 교육권 및 건강권 실태를 살펴보았다. 여기에 더해 어머니의 신분으로 인한 외부의 관심 등 아동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어머니 및 외부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먼저 아동 가정의 형성과 해체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에서 아동 어머니의 신분이 합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인해 중국 정부에 의한 강제송환으로 인한 가족 해체, 어머니의 한국행으로 인한 가족 해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아동의 인권상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1) 탈북여성 아동 가족의 형성

탈북여성이 중국인 남성과 어떤 과정으로 가족을 형성하였고 이렇게 구성된 가족이 어떤 원인으로 해체 됐는지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동은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았다.

(1) 어머니의 탈북 후 결혼 과정

탈북여성은 탈북 이후 안전한 은신처를 찾는 과정에서 강제로 또는 반강제적으로 또는 부득이한 선택에 의해 현지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하였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결과 또한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다. 아동 어머니의 결혼시기는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한 대량 탈북이 발생했던 1998년에서 2000년까지가 전체의 77%로 나타났고 아동 아버지의 50%가 탈북여성을 데리고 온 중간 소개인에게 상당수준의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아동 어머니의 결혼 연도

결혼년도	빈도(명)	비율(%)
1997	4	4.0
1998	33	33.0
1999	29	29.0
2000	15	15.0
2001~2004년	11	11.0
모름	8	8.0
합계	100	100.0

조사 결과 아동 아버지의 50%가 탈북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여성을 데리고 온 중간 소개인에게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0%는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을 통해 탈북여성을 소개받아 결혼한 경우로 현금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8명의 응답자는 교회 관계자나 쉼터 보호자 중에서 아동 어머니의 결혼과정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이다. 결혼을 위해 현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모른 척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현금을 제공하고 결혼을 한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12> 중간 소개인에 현금제공 여부

현금제공여부	빈도(명)	비율(%)
제공함	41	50.0
제공 안 함	41	50.0
합계	82	100

* 응답자 18명은 현금제공 여부를 알지 못하였음.

조사결과 아동의 어머니인 탈북여성들은 그동안 우리에게 알려져 왔던 것처럼 중국인 남성과의 결혼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또는 반강제적으로 결혼을 하

게 되었거나 신변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배우자에 대한 선택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결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사례들은 북한여성이 탈북 후 강제적으로 또는 반강제로 중국인 남성과의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북한에서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 탈북했다가 신변불안 상황속에서 강제·반강제로 중국인 남성과 결혼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는 대체로 중간 소개인이 남성으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일정수준의 금액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탈북 후 강제·반강제로 중국인 남성과 결혼

[아동 30] 어머니는 장사를 하느라고 신의주에 온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고향 아줌마를 만나서 그 사람의 소개로 돈을 번다고 중국에 들어왔다고 한다. 중국에 들어오면 한 달에 적어도 300위안을 버는데 조선에서 돈을 벌고 있겠냐 하는 말에 혹하여 신의주 쪽으로 해서 중국에 건너왔다. 그 아줌마는 나에게 한 남자를 소개했는데 이 남자를 따라가면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었다. 한 달 돈을 번 후 자기에게 전화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실제 그 남자는 나를 7,500위안에 사왔던 것이다. 사실을 알고 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번호는 가짜였고 그 아주머니는 종적을 감추었다.

[아동 31] 중국에 오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하기에 99년도 4월에 29일에 창전으로 해서 중국에 건너왔다. 중국에 건너와서 일자리를 찾는 다는 것이 이 남자한테 팔려왔다. 남편은 이 여자보다 나이 4살 연하이다.

[아동 29] 아이의 어머니는 조선에 있을 때 은행부지도원으로서 일 보러 자강도에 내려갔다 오다가 차안에서 머리 아팠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약을 먹으면 머리가 아프지 않다고 하면서 약을 주었다. 그 약은 수면제였다. 그 사람들은 수면제를 먹이고 잔 다음 중국에 데리고 왔다. 눈을 떠보니 심양이었다. 그들

은 심양에서 이 산골에 이 여자를 5천 700위안에 팔아먹었다. 그렇게 되어 자기 보나 나이 한 살 어린 잘 생긴 남자에게 시집을 왔다.

[아동 32] 인신매매하는 사람들한테 걸려서 하북성 향산에 8천위안에 팔려갔고 그 곳에서 남편이 술을 마이고 때리고 병어리 시누이에다, 시부모님들까지 힘들게 하여 죽자고 약을 먹었는데 발견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연변 여자를 만나 그 여자와 한 일 년을 서로 전화를 주고받았다. 전화를 주고받는 동안 그 여자는 남자를 물색해서 나보고 좋은 곳에 시집을 가라는 것이었다. 그 여자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후에 알고 보니 그 여자가 7천위안에 어머니를 팔았다고 하였다.

[아동 53] 98년도 1월에 아는 사람을 만나 같이 중국에 건너왔는데 그 사람이 중국 사람과 함께 계획하고 나를 팔아먹으려고 택시에 싣고 묘령 쪽으로 가는 도중 차가 고장이 나서 길에 서게 되었다. 나는 소변을 보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내려주지 않았다. 나는 금세 바지에 오줌을 쌀 것처럼 행동을 했다. 그랬더니 나를 택시에서 내려 주었다. 나는 소변을 보려가는 것처럼 도망쳤다. 그렇게 도망쳐서 길 옆 집에 들어간 곳이 지금의 남편 집이었다. 그 집에서는 나를 그 집 며느리로 받아 주었다. 나는 이 남편을 만나기 전에 꿈에 내 남편이라는 사람이 다리 한쪽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실제 다리 아닌 팔이 한쪽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아마 천생의 연분인 것 같다.

탈북여성의 결혼과정 중 다음의 사례들은 강제·반강제로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탈북여성이 배우자 선택과 관련한 자기의사 표현의 과정이 없이 결혼에 이르게 된 경우를 보여준다. 이러한 경우는 형식상 ‘지인의 소개’로 금전제공이 없이 결혼하였으나 실제 상황은 신변이 불안한 상황 속에 탈북여성이 부득이하게 결혼의 방법으로 안정적인 은신처를 택한 것으로 자발적인 결혼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사례] 탈북 후 주변사람의 소개로, 결혼의사 표현 등 배우자 선택의 과정이 없이 결혼한 경우

[아동 03] 혼춘에 살고 있는 친척누나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 돈을 주고 사온 것은 아니다.

[아동 19] 친구와 같이 중국에 건너와서 삼합에 있는 어떤 집에 갔는데 삼합에 있는 사람이 연길에 있는 자기 동생네 집에 보냈고 그 동생이 자기 친구 동생인 지금의 남편에게 나를 소개했다. 소개비는 내지 않고 서로 잘 아는 사이여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끝냈다.

[아동 42] 지금의 남편의 앞집에 조선에서 건너온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나를 이곳에 소개해서 만났다. 소개비는 내지 않았고 그저 감사하다고 선물을 사주었다.

[아동 56]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 그 여자가 보자마자 같이 살겠다고 하여 같이 살았다. 돈을 주고 사온 것은 아니다. 이 집에서 살 때 여자가 경제권을 다 쥐고 살았고 시부모님들도 마음이 좋아서 여자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옆에서 말을 했다.

[아동 78] 어머니는 지금의 시어머니 동생의 소개로 만났다. 지금의 시어머니 동생은 연길에 있는데 내가 그때 그 옆집에 와 있었다. 그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자기 조카한테 나를 소개했다. 나는 남편의 외모에 반해 인차 시집을 왔다.

(2) 아버지의 특성

아동의 어머니가 탈북 후 결혼을 한 배우자의 민족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52.6%가 아버지가 조선족이었고 47.4%는 한족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탈북 여성이 탈북 후 조선족뿐 아니라 한족 출신의 중국인과 혼인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3> 아버지의 민족적 배경

아버지의 민족배경	빈도(명)	비율(%)
한족	45	47.4
조선족	50	52.6
합계	95	100.0

아동 어머니의 탈북 후 결혼 당시 아동의 아버지인 중국인 남성의 연령을 살펴본 결과 30대가 60명으로 가장 많고 20대가 25명으로 나타났다. 아동 아버지의 결혼당시 연령을 알 수 있는 92세대 중 85세대가 탈북여성의 결혼 과정에서 중국인 남성의 연령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40대가 6명, 50대가 1명으로 7세대의 경우에는 높은 연령의 중국인 남성과 결혼을 해야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표 14> 결혼 당시 아버지의 연령

결혼당시 아버지의 연령	빈도(명)	비율(%)
20대 이하	25	25.0
30대	60	60.0
40대	6	6.0
50대 이상	1	1.0
모름	8	8
합계	100	100.0

* 아동 어머니의 탈북 후 결혼 당시 중국인 남성의 평균 나이는 32.4세임.

(3) 아버지의 육체적, 정신적 특이사항

그동안 중국에서 탈북여성과 결혼한 중국인 남성들 중 일부가 심신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기에 본 조사를 통해 아동 아버지가 어떠한 육체적, 정신적 특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아버지가 사망한 6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94세대 중 16세대에서 아버지가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도박에 빠져 사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아버지의 육체적, 정신적 특이점

ID	출생 년도	결혼년 도	결혼 당시 나이	아버지의 건강상 특이 사항
31	1973	1999	26	아버지는 건강하고 마음이 착하고 일을 잘한다. 남편이 성기능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아이를 낳았는지 소개자에게 물어 보니 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고 한다. 팔려오기 전에 임신한 아이를 이 남자의 아이인 것처럼 하고 키우고 남편도 자기가 병신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아이를 친 자식처럼 키우고 있다고 한다.
36	1965	2000	35	허리디스크로 인해서 다리를 잘 쓰지 못한다. 심할 때에는 걷지도 못한다.
38	1945	1999	54	기관지 천식으로 기침을 많이 한다.
39	1963	1999	36	아버지는 술 중독으로 좀 앓고 있다. 건강이 안 좋다. 그래도 나가 일은 좀 한다.
40	1967	1999	32	아버지는 한 쪽 눈을 보지 못한다. 한 쪽 눈이 가짜 눈이다.
42	1970	2002	32	아버지는 전에 뇌막염을 앓은 적이 있다.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
43	1966	2001	35	아버지는 도박 놀기를 좋아한다.
45	1968	1998	30	아버지가 간염을 앓고 있다.

51	1961	1998	37	아버지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폐가 나쁘고 심장이 나쁘고 관절이 아프다고 한다. (옆에 사람들의 말로는 일하기 싫어서 그런지 아픈 사람 같지 않다고 한다) 술을 마시면 아내를 때리고 밖에 쫓아낸다고 함. 하지만 딸은 때리지 않는다.
53	1966	1998	32	아버지는 한쪽 팔이 없다. 그런 몸으로 농사일을 해서 그런지 다른 한쪽 팔마저 아프다고 한다.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을 한다.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신다. 술을 마시고 아내를 때린다. 위궤양과 간염을 앓고 있다.
62	1963	1999	36	요추간판탈출로 다리를 잘 못쓴다. 다른 나쁜 습관은 없다.
63	1974	1999	25	간도 나쁘고 신경으로 앓고 있다. 작년 농사 수입을 모두 병원에 다 넣었다. 나쁜 습관은 없다. 부지런하고 착하고 열심히 산다.
72	1967	1997	30	아버지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병어리가 되었다. 성격은 좋고 일도 잘 한다.
75	1972	2001	29	아버지는 건강하지만 옆에 사람들의 말로는 좀 모자라다고 한다. 직장에서 시키는 일만 하고 술도 마시지 않고 친구도 없고 고집이 세다. 열심히 가정을 위해 일을 한다.
80	1971	1998	27	아버지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마음이 착하고 나쁜 습관은 없다. 그냥 집에서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살고 있다.
81	1971	1998	27	고혈압, 알코올 중독자,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음. 마음은 착하다.

2) 아동 가족의 경제적 상황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 태어난 아동의 생활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아동 가정의 경제적 수준, 보호자의 직업과 월소득 등을 조사하였다. 경제 상황

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 면접인이 느끼는 상대적인 경제 인식을 통해 지역 내 해당 가정의 경제 수준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보호자의 직업을 통해 해당 가정의 경제 수준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실질적인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호자의 월·연간 수입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알아보았다.

2008년 한반도화해센터에서 발표한 “중국 내 탈북여성 2세 가정환경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실질적 아동의 보호자 평균 소득이 다른 농촌 지역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 조사결과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²³⁾

(1) 아동 가정의 경제적 수준

<표 16> 아동 가정의 경제적 수준

경제적 수준	빈도(명)	비율(%)
잘사는 편	1	1.0
보통수준	39	39.4
못하는 편	58	58.6
극빈층 (3끼 식사 해결 못함)	1	1.0
합계	99	100.0

아동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피면접자를 대상으로 아동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의 59.6%는 못사는 편이라고 응답하여 절반 이상의 아동 가정이 열악한 경제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아주 잘 산다’고 인식하는 대상자는 한명도 없었고 ‘잘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단 한명으로 조사된 만큼 전체적으로 조사 대상 가정은 중국 내에서 평균 이하의 경제적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아버지의 직업과 연간 소득액 수준을 피면접자의 응답을 통해 알아보았다.

23) “중국 내 탈북 여성 2세 가정환경 조사 보고서”. 서울 : 한반도화해센터. 2008

(2) 아버지의 직업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중국 농촌에서 아동 가정의 생활수준은 대체로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37명만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52.8%가 농사를 짓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막노동과 샅일

이는 조사 지역이 대부분 농촌 지역으로 보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외 막노동이 23.5%, 샅일, 노동자가 8.8% 순으로 나왔다. 이 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농사를 짓거나 막노동을 직업으로 하는 보호자가 많다는 것은 수입이 적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표 17>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의 직업	빈도(명)	비율(%)
농민	18	52.9
막노동	8	23.5
샅일	3	8.8
노동자	3	8.8
교회 종사자	2	5.9
합계	34	100.0

* 아동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만 응답이 이루어짐.

경제 수준 조사 결과 조사 대상 보호자가 느끼는 상대적 경제 수준은 못사는 편이 전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직업 또한 농사일과 막노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조사 대상 아동의 가정 경제 상황은 대체로 좋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아버지의 수입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 가정의 경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월수입을 조사하였다.

<표 18> 아버지의 월수입

아버지의 수입(CNY)	빈도(명)	비율(%)
거의 없음/없음	4	10.8
300 이하	3	8.1
300~500	9	24.3
500~800	12	32.4
1,000~1,500	2	5.4
2,000 이상	3	8.1
기타	1	2.7
합계	37	100.0

* 기타(1명)의 응답내용은 ‘3끼 밥을 먹고 사는 정도’였음.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2011년) 중국의 1인당 GDP는 5천432달러였고, 인민폐로 3만5천83위안(CNY)이었다.²⁴⁾ 이 기준으로 볼 때 조사 대상 아이의 가정 소득은 중국 평균 GDP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수입이 월 800위안 이하는 응답자 전체의 64.8%로 나타났고 최대 수입으로는 월 2000 위안을 버는 사람이 한명 조사되었다. 하지만 소득이 전혀 없다고 조사된 사람은 3명이나 되었다.

조사 대상 아동의 가정 경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경제 수준의 상대적 인식 정도와 실질적 양육 책임자의 직업과 월 소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자들은 지역 내에 못사는 편에 속하고 농사를 지으며 중국 평균 GDP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다.

3. 아동 가족의 해체

가족해체는 성장하는 아동에게 큰 충격을 준다. 아동이 성장하는 동안 부모

24) 출처: http://www.exportcenter.go.kr/common_board/weeklytrade/notice_read.jsp?board_type=6&num=16425(검색일자.2012.12.05.)

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과 보살핌을 못 받는 것은 아동이 성장함에 있어서 악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족 해체의 근본적 원인은 탈북 여성인 어머니의 불안정한 신분 때문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탈북 여성을 불법 월경자로 간주하여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탈북 여성이 공안에 체포되면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 탈북 여성의 강제 송환되면 중국내 가정은 한순간에 어머니가 사라지게 되고 이는 가족이 해체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렇게 탈북 여성이 강제 송환 되면 북한의 단련대나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하게 된다. 이 과정을 누구나 알고 있는 탈북 여성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없다. 결국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지역이나 가정에 정착하지 못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찾기 위해 가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 또한 가족 해체의 원인이 된다.

가족 해체의 원인을 조사하기 전에 우선 현재 아동의 동거가족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실질적인 양육 보호자를 알아본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직계가족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가족 해체의 원인 중 가장 크게 작용하는 강제 송환에 따른 가족해체와 아동 어머니의 가출에 따른 가족해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의 실질적 양육 보호자

조사대상자 100명의 아동 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15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명은 아버지가 없는 상태로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어서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모두 21명이었다. 나머지 79명 중 20명은 어머니와 헤어졌거나 사망한 상태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24명은 부모가 모두 없이 조부모와 함께, 그리고 15명은 큰아버지, 고모 등 직계가 아닌 친척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특히 20명은 직계 또는 방계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탈북여성 아동 쉼터에서 지내고 있었다. 이러한 쉼터는 대개 기독교 교회 종사자나 관련된 현지인이 자신의 집 또는 다른 집을 이용하여 각각 아동 2~5명을 일상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표 19> 아동의 실질적 양육 보호자

실질적 양육 보호자	빈도(명)	비율(%)
부모 모두 동거	15	15.0
부모 중 아버지만 동거	20	20.0
부모 중 어머니만 동거	6	6.0
부모 없이 조부모가 보호	24	24.0
방계 친척이 보호 (큰아버지, 삼촌, 고모 등)	15	15.0
기독교 관련 쉼터에서 보호 (가정 보호시설)	20	20.0
합계	100	100.0

위와 같은 결과 즉 편부가정이 20명, 편모가정 6명, 조손가정 24명 그리고 부모가 없이 친척의 보호 15명, 기독교 관련 가정쉼터에서 20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할 만한 결과이다. 이러한 점은 각각의 사례를 보면 더욱 잘 드러난다. 다음에서 각각의 사례를 본다(<표 20> 참조).

부모 중 아버지만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아버지와 둘이서만 지내는 경우(6명)와 조부모 등 다른 가족까지 함께 지내는 경우가 있다.

아버지와 둘이서만 지내는 경우는 아버지가 샅일이나 농사를 지으며, 또는 교회의 일을 보면서 홀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아버지 및 조부모 등 다른 친척들과 함께 지내는 경우에 비해 아동의 성장 환경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사례] 아동이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는 경우

[아동 15] 아버지와 단 둘이서 셋방살이하면서 아이를 공부 시키고 있다. 직업은 없고 교회 부 교역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

[아동 17] 아버지와 단 둘이서 살고 있다. 직업은 막일을 한다. 세집을 맡고 살고 있다. 나이는 현재 45세이다.

[아동 36] 아버지와 함께 지낸다. 아버지는 48세 무직업이고 샅일을 한다.

[아동 38] 아버지와 함께 지낸다. 아버지는 올해 67세 직업은 농사일을 한다.

[사례] 어머니 없이 아버지, 조부모 등과 함께 지내는 경우

[아동 56]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계모(43살 언어 장애인) 모두 5식구 함께 살고 있다. 직업은 농사일을 한다. 가정 형편은 어렵다.

[아동 60] 할머니 앓을 못 보고 반신불수이다. 아버지는 집에서 농사를 한다. 모두 세 식구 함께 산다.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다.

[아동 74] 할머니 (69세) 아버지 모두 셋이서 함께 산다. 할머니는 마작 활동장소를 경영하면서 다른 집 아이를 보면서 한 달에 1500 위안 번다. 아버지는 정신병 환자이다.

[아동 75] 할아버지 (79세) 할머니 (72세)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앓고 있음, 똥오줌 받아냄, 아버지는 (42세) 모두 네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아버지는 용접하는데서 일을 하고 있다. 집은 세 집을 맡았는데 단칸방이다. 집이 비좁고 아이가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이다. 그래도 아이가 공부를 잘 한다고 한다. 아이가 똑똑하나 마음이 어질다. 물어보는 대답도 잘하지 못하고 할머니 뒤에 숨어서 머리로 잘 내밀지 않는다. 먹을 것을 사주었는데도 먹지도 않는다.

[아동 80] 원래는 할머니(68세) 할아버지 (70세) 아버지(42세) 모두 네 사람이 같이 살았는데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들 보러 한국에 갔다. 그 동안 이 동네에 아는 집에 맡기고 갔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온다. 현재는 정신이 좀 나쁜 아버지가 혼자 집에서 산다. 곁에 보니 가정에서 생

활하는 것은 자식들이 한국에서 돈을 보내오는 것과 받을 임대해서 준 돈으로 사는 것 같다.

[아동 92] 할머니 (74세) 와 아버지 모두 셋이서 함께 산다. 아버지는 한국 수속이 거의 다 되어가서 지금 집에서 놀고 있다. 생활은 받을 임대해준 것으로 살고 있다.

[아동 94] 할아버지 (70세) 할머니(66세) 아버지 모두 네 명이 같이 산다. 아버지가 일 잘하고 부지런하고 성격 좋다. 할머니가 연세가 많음으로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림구에 보내어 숙사생활을 시킨다. 숙사 비는 한 달에 240위안이고 주말에 집에 온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둘이서 지내는 경우는 6명으로 이중 [아동 19]와 [아동 23]의 경우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어머니가 ‘보모’ 등의 일을 하며 현지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경우이다.

나머지 네 명의 경우는 아버지가 모두 한국으로 건너가 돈을 벌며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아래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개의 경우 어머니가 중국인 시부모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며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이 아동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례]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와 아동이 지내는 경우

[아동 19] 어머니와 딸 둘이서 살고 있다. 아버지가 올해 3월에 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보모로 일을 하는데 한 달에 1,500위안을 받고 그 집에서 전기세 물세까지 다 내준다고 한다.

[아동 23] 어머니, 남동생 모두 세 명, 어머니 직업이 없음. 아버지 한국에 갔음. 한 달에 2천위안 보내오는데 생활비 부족함. 교회에서 좀 도움을 받고 있음.

[아동 50] 주인집 할머니, 어머니, 아이 모두 3명 같이 산다. 어머니가

주인집 할머니의 보모로 일을 하는데 한 달 수입이 1,500위안이다.

[사례] 어머니 및 조부모와 함께 지내는 경우

[아동 52] 아버지는 한국에 갔고 할아버지(77), 할머니(68세), 어머니, 아들 모두 네 명이서 함께 살고 있다. 경제는 아버지가 한 달에 3천위안씩 보내서 살고 있다. 엄마는 교회 집사로써 믿음이 좋고 아들도 함께 교회에 다니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아동 66] 할머니, 어머니 모두 셋이서 함께 산다. 어머니는 집에서 놀고 있다. 농촌에서 올라와 시내에서 살고 있는데 안전 때문에 일자리 찾기도 마땅치 않고 하여 아이와 시부모님을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경제는 남편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부치는 돈으로 살고 받은 임대해주는 것으로 식량을 해결하고 있다.

[아동 78] 어머니와 둘이서 산다. 아버지는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보낸다. 어머니는 집에서 놀고 있는데 때로는 샅일도 한다.

어머니가 당국에 체포돼 강제송환 되었거나 한국행 등 가출해 연락이 닿지 않아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마저 없이 자라는 아동이 59명이나 된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러한 경우는 조부모 등 직계가족 및 방계 친척에 의해 보호받는 경우와 친척들의 보호조치 받지 못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조부모, 큰아버지, 삼촌, 고모 등 직계 및 방계 친족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경우는 대체로 아버지가 질병을 앓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한국으로 건너가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아동 02] 큰 아버지 부부, 사촌 오빠, 모두 네 사람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직장에 다니고 있음. 나이는 41살-45살 아이의 아버지가 간질병이어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 아버지가 간질

병이 재발할 때는 아이가 아버지를 주물러주고 아버지가 발작을 마칠 때까지 아버지 옆에서 도와줘야 했고 이 집에 오기 전까지 아이가 밥을 해서 아버지와 들어서 먹고 살았다고 한다. 하여 큰 아버지가 조카가 불쌍하여 데려왔다. 그리고 교회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

[아동 14] 고모와 함께 있다. 가족은 할머니, 모두 세 명이 같이 산다. 고모의 직업은 농민이다. 생활형편은 어렵다.

[아동 26] 할머니와 단 둘이서 살고 있다. 할머니 연세 54세이다. 할머니가 장사를 해서 들어서 살고 있다. 한 달에 1500위안 정도 벌고 있다. 세 집에 들어서 아이를 공부 시키고 있다.

[아동 39] 할머니(76세) 아버지 (48세) 직업이 없다. 외지에 나가 일을 하다가 지금은 아파서 집에 와 있다.

[아동 58]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셋이서 살고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연세가 많고 병약하고 해서 일도 못한다. 국가에서 주는 생활보조금과 정부에서 주는 조학 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집도 세집이다. 한 달에 50위안이다. 전에 연변 TV '사랑으로 가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사랑의 헌금을 받은 적 있다. 특별히 가난하다.

[아동 70] 할머니 (76세)이다. 고혈압으로 앓고 있어서 큰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 현재 큰 아버지가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고 큰 어머니는 선생이다.

[아동 83] 큰 엄마 (57세) 큰 아버지 (55세) 농사일을 한다. 원래는 할머니 같이 살았는데 작년에 할머니가 한국에 갔다. 그래서 아이를 큰 엄마네 집에 보냈다. 애 아버지는 한국에 가서 일을 한다. 하지만 제 노릇 못해서 돈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 아이

할머니가 돈 좀 보내오고 있다.

조부모나 백부, 숙부 등 친족의 보호를 받기조차 어려운 경우는 주로 기독교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대체로 아버지나 친족이 현지에 있지 않은 경우이나 생존해 있는 경우에도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어 아버지나 친족이 양육을 포기한 경우이다.

아래 사례를 보면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산골에서 아이를 키울 여유가 없거나 아버지가 알콜중독 상태이거나 아버지가 아예 행방불명이 된 상태도 발견되고 있고 아버지가 한국으로 일하러 가는데 돌볼 친족이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쉼터에 맡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쉼터의 사정으로 인해 이곳 저곳의 쉼터를 옮겨 다니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현재 중국의 동북3성 지역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인 탈북여성 자녀들에 대해 현지 기독교 교회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동 01] 키워주는 양 부모(48-50세), 부모가 없는 두 누나, 양부모가 한국 간 형 2명과 여동생 한명 모두 8명이 함께 지낸다. 개인 사업을 하고 있음. 이 아이가 이 집에 온 이유는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 5살 때 어느 고아원에 보냈는데 그 집에서 이 아이를 또 다른 고아원에 옮겼다. 그런데 그 고아원이 얼마 안 되어 해체 되었다. 그 고아원을 관리하던 매니저가 이 집에 이 아이를 소개해서 보냈다. 지금까지 7년을 키우고 있다.

[아동 03] 집사님네 집에 있음. 집사님 부부, 함께 지내는 아이들 4명 모두 6명, 집사님 부부(나이 44살- 48살) 남편은 출근하고 집사님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 선교사님들 도움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음. 아이를 아버지가 혼자 키울 수 없고 산골이라 학교가 없어서 아이를 이 집에 데려왔다.

[아동 04] 집사님네 집에 있음. 집사님 부부, 함께 지내는 아이들 4명 모

두 6명, 아버지가 한국에 가면서 아이 둘 곳이 없어서 왔다.

[아동 05] 오촌 큰 아버지 집에 있다. 오촌 큰 어머니는 교회 집사이고 자선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한국에 가면서 이 아이를 여기 맡겼다. 큰 어머니의 나이는 50세 큰 아버지는 56세 이다. 다른 아이들도 같이 지내고 있다.

[아동 06] 쉼터에서 살고 있음, 보호자는 55세, 아이들 모두 7명, 후원으로 생활이 보장됨, 한 달에 얼마라는 생활비가 정해진 것이 없다. 교회의 연보 돈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저기 목사님들이 가끔 천원 혹은 500위안씩 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아동 07] 집사님네 집에 있음, 같이 지내는 친구들 모두 7명, 집사님 포함 모두 9명, 직업은 없고 교회의 도움으로 운영됨, 나이는 48세, 전에는 생활비를 한 달에 650위안씩 대주던 것이 작년 부터 생활비를 끊었다. 그래서 후원자를 찾았는데 아이당 한국 돈 5만원(중국 돈 250위안 정도)을 받고 있다. 이돈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후원자를 찾고 있지만 잘 안 된다. 요즘은 교회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7명 중에 한 아이만 가족에서 매달 200위안을 주고 있다. 아이가 이 집에 온 이유는 아버지가 농사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없고 또 산골이라 학교도 없어서 아이를 학교 보내자면 도시까지 택시타고 아이를 학교 보내야 함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농사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집에 보냈다.

[아동 08] 집사님네 집에 있음, 같이 지내는 친구들 모두 7명, 직업은 없고 교회의 도움으로 운영됨, 나이는 48세 아이가 이 집에 온 이유는 고모네 생활이 가난하고 힘들어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아이를 이집에 보냈다. 아버지는 아버지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 좀 부족한 편이라고 한다.

[아동 09] 집사님네 집에 있음, 같이 지내는 친구들 모두 7명, 직업은 없고 교회의 도움으로 운영됨, 나이는 48세,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고 친척들도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

[아동 10] 집사님네 집에 있음, 같이 지내는 친구들 모두 7명, 직업은 없고 교회의 도움으로 운영됨, 나이는 48세, 림구에 있는 전도사님의 소개로 이 집에 오게 되었는데 엄마가 잡혀간 후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되어 아이를 키울 곳이 없어서 이곳에 보내왔다.

[아동 13] 전도사님 가정에서 함께 지낸다. 전도사님 나이는 45세이고 전도사님 가족은 모두 3명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언니까지 모두 5명이 함께 지내고 있다.

<표 20> 현재 아동의 동거가족

ID	부	모	조부모/친족	기타	비고
01	X/양육포기	X/		양부모(비인가고아원)	5세때 아버지가 고아원에 맡김. 현재 다른 고아원을 거쳐 양부모 가정에서 살고 있음.
02	X/중증간질	X/	큰아버지 집		아버지가 간질 증증에 걸려 큰아버지가 데려옴
03	X/양육포기	X		교회집사(비인가쉼터)	아버지가 산골에서 아이를 혼자 키울 여력이 없음
04	X	X		교회집사(비인가쉼터)	아버지가 한국으로 가면서 아이를 맡기고 감
05	X	X		5촌친척(교회 쉼터)	아버지가 한국으로 가면서 아이를 맡기고 감
06	X	X		교회쉼터(비인가쉼터)	
07	X/양육포기	X		교회집사(비인가쉼터)	아버지가 산골에서 아이교육을 하지 못해 보냄
08	X/양육포기	X		교회집사(비인가쉼터)	아버지가 좀 모자라서 고모네를 거쳐 쉼터로 옴
09	X/양육포기	X		교회집사(비인가쉼터)	아버지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 쉼터로 보냄
10	X/행방불명	X		교회집사(비인가쉼터)	엄마가 잡혀가고 아버지가 행방불명되어 쉼터로 옴
11	X	X		교회집사(쉼터 아님)	
12	X	X		전도사집(쉼터 아님)	
13	X	X		전도사집(쉼터 아님)	

14	X	X	할머니,고모	
15	O	X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음. 아버지는 교회 전도사임
16	O	X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음. 아버지는 막노동 일꾼
17	O	X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음. 아버지는 막노동 일꾼
18	X	X	누나	누나와 둘이 살고 있음. 누나는 유치원 교사임.
19	X	O		어머니가 보모일을 하는 집에서 함께 살고 있음.
20	X	X	할머니	할머니와 산다. 아버지가 한국에 가서 돈을 보내줌
21	X	X	고모	농민인 고모네 부부가 아이를 돌보고 있음
22	X	X	고모	재봉일을 하는 고모가 아이를 돌보고 있음
23	X	O		어머니와 지냄. 아버지가 한국에 가서 돈을 보내음
24	X	X(한국)	큰어머니	큰집에서 지내며 곧 한국으로 가기 위해 준비중.
25	X	X	삼촌	
26	X	X	할머니	할머니와 둘이 지냄. 할머니가 장사를 해서 키움.
27	O	O		아버지, 어머니 모두 함께 지냄. 아버지는 막노동.
28	X	X	조부, 조모	

29	O	O		아버지는 돈을 벌어오고, 평소 어머니와 지낸다.
30	O	O		농사를 지으며 생활함
31	O	O		어머니는 안전 때문에 자주 외지를 다니며 돈번다.
32	O	O		큰딸은 첫째 남편과, 둘째 아들은 두 번째 남편과.
33	O	O		농사를 지으며 생활함
34	O	O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시내에 나와 공부시킴
35	X	X	할머니,고모	한국에 간 아버지가 생활비를 보내 줌
36	O	X		아버지가 무직이고 가끔씩 샅일을 함. 허리디스크가 있어 다리를 잘 쓰지 못함. 때로는 걷지 못함.
37	X	X	조부, 조모	
38	O	X		아버지가 67세이고 농사를 지으며 생활.
39	O	X	할머니	아버지가 주로 외지에 나가 일하고 할머니와 산다. 아버지가 알콜중독 증세가 있다.
40	O	X		아버지가 한족 교회 사역자이다. 한쪽 눈이 실명.
41	X	X	조부, 조모	

42	O	O			농사를 지으며 생활함. 아버지가 뇌막염을 앓은 적이 있어 후유증으로 몸상태가 좋지 않음
43	O	O			농사를 지으며 생활함. 아버지가 도박을 즐김
44	O	O			아이들은 학교공부 위해 평소 할머니와 지냄
45	O	X			아버지가 간염에 걸림
46	X	X		양부모(쉽터)	북한출생/다른 쉽터에서 이곳으로 옮겨 왔음
47	X	X		양부모(쉽터)	북한출생/다른 쉽터에서 이곳으로 옮겨 왔음
48	X	X		교회집사(쉽터)	북한출생/아이들 3명
49	X	X		교회집사(쉽터)	북한출생/아이들 3명
50	X	O			어머니가 보모로 일하는 주인집에서 기거함
51	O	O		할머니	농사를 지으며 살아감.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셔서 어머니를 때리고 쫓아내기도 함
52	X	O		조부, 조모	아버지가 한국에 가서 생활비를 보내줌
53	O	O			아버지가 한쪽 팔이 없고 쉬는 날 없이 일함. 술을 많이 마시고 아내를 자주 때림.
54	X	X		고모	아버지가 한국에 감. 어머니는 복송됨.

55	X	X	큰아버지		큰아버지가 매우 가난함. 아버지는 한국에 감
56	O	X			아버지, 계모와 함께 살고 있음.
57	X	X	할머니		아버지가 한국에 가서 생활비를 보내줌
58	X	X	조부, 조모		매우 가난한 조부모 집에서 어렵게 살고있음
59	X	X(사망)		쉽터	아버지가 한국에 가서 잠시 쉽터에서 지냄
60	O	X	할머니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마을에서 가장 가난함. 아버지가 위궤양, 간염을 앓고 있음.
61	O	X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며 둘이서 살아감
62	O	X	계모		시집온 지 5년 된 계모가 잘 대해준다. 아버지가 요추간판탈출로 다리를 잘 쓰지 못함.
63	O	X	할머니		아버지가 농사를 지음
64	O	X	할머니		아버지가 막노동을 함
65	X	X	할아버지		할아버지와 둘이서 지냄
66	X	O	할머니		농촌에서 시내로 옮김. 아버지가 한국에 있음
67	O	O	조부, 조모		부지런하게 일하며 정상적으로 잘 산다

68	X	X		사돈집(목회자가양육)	할머니가 키우기 힘들어 교회일을 하는 사돈집으로 보내 목회자가 양육하고 있음
69	O	O			평소 교육을 위해 시내의 교회에서 지내게 함
70	X	X	큰아버지		할머니가 고혈압이라 큰아버지가 데리고 키움
71	X(사망)	X		교회 목회자 가정	아버지가 2년전 술마시다 얼어죽음.
72	O	O			농사를 지으며 살아간다
73	X	X(중국)		먼 친척집에 보냄	어머니는 식당에서 숙식하며 일을 하고 있음. 아이는 남편의 먼 친척집에 보냈음
74	O	X	할머니		아버지는 정신병환자, 할머니가 경제를 책임
75	O	X	조부, 조모		할아버지가 중풍, 단칸방에서 지냄. 아버지가 용접공.
76	X	X	고모		고모와 둘이 지내며 생활비는 친척들이 도움
77	X	X	큰아버지		큰집에서 지내고 학비는 고모들이 도움
78	X(한국)	O			아버지가 한국에 가서 생활비를 보내줌
79	X(한국)	X	큰어머니		아버지가 한국에 가서 생활비를 보내줌
80	O	X	조부, 조모		아버지가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
81	O	X	할아버지		아버지가 교회다니며 알콜중독 치료중이다. 경제는 할아버지 돈과 고모가 생활비를 보내줌

82	O	X	계모	아이는 할아버지와 살다가 계모가 온 이후로 아버지, 계모와 함께 지내고 있음
83	X(한국)	X	큰아버지	아이가 할머니와 지냈었는데, 할머니가 한국으로 돈벌러 간 다음에 큰집으로 와서 지냄. 아버지는 한국에 갔으나 제 노릇을 하지 않음.
84	X(사망)	X	큰아버지	큰집에서 지내며 친척들이 생활비를 댐
85	X(한국)	X	할머니	아버지가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보내줌
86	X(한국)	X	할머니	아버지가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보내줌
87	O	X		교회 목회자인 아버지와 둘이 지냄
88	X(한국)	X	할머니,고모	아버지가 한국에 가 있으나 제노릇을 하지 않고 오지도 않는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다.
89	X(돈벌이)	X	큰아버지	아버지가 다른곳에 돈벌러 가서 돈을 보내옴
90	X(한국)	X	할머니	아버지가 한국에서 돈벌어서 생활비를 보내줌
91	X(한국)	X	조부, 조모	아버지가 한국에서 돈벌어서 생활비를 보내줌
92	O	X	할머니	아버지가 곧 한국으로 갈 예정.
93	X(사망)	X	고모	고모가 식당일을 해서 살아감(고모부 사망).

94	O	X	조부, 조모	아버지가 일을 잘하고 부지런함. 숙사생활중.
95	O	X		아버지와 둘이서 살아감. 아버지는 샅일을 함.
96	O	X	조부, 조모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감
97	O	X	조부, 조모	아버지가 샅일을 해서 가정을 꾸려감
98	X(사망)	X(가출)	고모	고모에게 입양된 것임.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가 아이를 버리고 가출함. 호구를 고모네로 올렸음.
99	O	X	조부, 조모	공부를 위해 조부모와 함께 림구에서 지냄. 아버지가 집에서 농사일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
100	X(한국)	X(한국)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모두 한국으로 가 있다. 아이가 공부를 마치면 한국으로 데려갈 것.

2) 강제 송환에 따른 가족 해체

조사 대상 아동의 어머니는 탈북여성으로서 중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정착한 경우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탈북 여성에 대해 강제 송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탈북 여성이 공안에 체포되면 강제 복송되고 가족은 해체가 된다.

조사는 어머니가 강제 송환 된 경험이 있는 대상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100명 중 36명의 가정에서 어머니의 강제 송환으로 인해 가족 해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여성인 어머니가 강제 복송 시 아동의 연령대는 0세에서 11세로 나타났고 평균 나이는 4.7세이다. 또한 조사 대상 복송 시기는 1999년부터 2011년 사이이고, 강제 송환이 가장 심한 시기는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이다. 이 기간은 조사 대상 전체 52.7%를 차지하였다. 이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가 많은 동북 3성 지역에서 탈북자 단속을 강화했던 시기와 일치했다. 이 단속 강화 조치에 따라 북한과 접한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등 동북 3성 국경지대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지면서 강제 복송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²⁵⁾ 이 결과 2003년부터 강제 복송된 탈북 여성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증가 추이는 201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북한의 국경지대 집중 단속으로 탈북자 수가 줄어든 측면과 한국행으로 인해 주요 단속 지역의 탈북 여성의 수가 줄어들어 강제 복송되는 사례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5)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0167160>

<표 21> 어머니가 강제 복송 후 가족 해체 사례

ID	복송된 시기	아동 나이	연락 여부	현재 거주지	복송 과정
01	2001	2세	×	×	
02	2010	9세	×	×	
03	2005	4세	×	×	
04	2005	5세	×	×	갑자기 공안이 집에 들어오니 어머니가 옷장에 숨었지만 발각이 되어 잡혀감
05	2005	5세	×	×	
07	2003	4세	×	한국	2003년 복송되었다가 다시 중국으로 들어오다가 인신매매에 걸려 다른 곳으로 팔려감. 이후 한국으로 감.
08	2004	5세	×	×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다른 남자와 연길에서 살았는데 전아버지가 이를 발견하고 화가 나서 고발해 잡혀감.
09	2001	0세	×	×	
10	2006	5세	×	×	
15	2000	12세	×	×	

23	2002	3세	○	같이 살고 있음	2002년 10월에 공안에 붙잡혀 강제 복송된 후 나와 2003년 3월 다시 잡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그 후 현재 같이 살고 있음. (아이가 태어나기 전인 1998년 10월에도 누군가의 고발로 잡혀간 적이 있음)
24	2006	7세	×	×	
26	1999	0세	×	×	
36	2009	7세	○	○	저녁을 먹고 있는데 공안이 들이 닥쳐서 잡아가 남양주 교도소를 거쳐 북한 무산 감옥으로 감.
38	2011	11세	×	×	2009년 마을에 있는 탈북 여성 2명을 잡아감
54	2009	9세	×	북한	
55	2004	1세	×	×	
66	2007	3세	○	같이 살고 있음	아버지와 합의로 한국으로 가다가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 복송됨
69	2006	5세	○	같이 살고 있음	2006년 강제 복송된 후 최근에 다시 들어옴
76	2003	2세	×	×	2003년 마을 전체 수색할 때 잡혀 복송됨

77	2003	5세	×	×	2003년 마을 전체 수색할 때 잡혀 복송됨
84	2003	4세	×	×	2003년 마을 전체 수색할 때 잡혀 복송됨
85	2003	1세	×	×	2003년 마을 전체 수색할 때 잡혀 복송됨
88	2007	4세	×	×	
89	2005	4세	×	×	한국에 가다 잡혀 복송되었음.
95	2004	1세	×	×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잡혀 복송됨
96	2007	7세	×	×	2003년 잡혀 복송된 후 다시 들어왔지만 2007년에 누군가의 고발로 또 잡혀 복송됨
100	2006	6세	×	×	아이가 6살 때 잡혀 복송된 후 다시 들어왔지만 다시 잡혀 복송됨. 동네에 고발하는 남자가 있어서 동네에 있는 탈북 여성 전부 잡혀감.
비고		평균 : 4.7세			

탈북 여성이 체포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조사되었다. 첫째, 중국 정부의 집중 단속 조치로 인해 지역에 있는 탈북 여성들이 모두 체포 된 경우와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특정 탈북 여성이 체포 된 경우이다.

일부 탈북 여성은 강제 복송된 후에도 다시 중국에 있는 가정으로 돌아오는 사례도 조사되었다. 이 경우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인신매매에 걸려 다시 팔려가거나 다시 체포되어 강제 복송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하였다.

[사례] 강제 복송된 경우

[아동 04] 체포되어 복송된 시기는 2005년도이고 그 후로는 지금까지 종무소식이다. 2005년 어느 날 갑자기 공안에서 집에 들어닥치니 엄마는 옷 장 안에 숨었다. 공안 사람들이 와서 아이 보고 <너네 엄마가 어디에 있니?>하고 물으니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지라 <엄마가 옷장에 숨었습니다.>하고 말했다. 하여 엄마가 잡혀가게 되었다. 이 일을 아이는 집사님과 이야기 하면서 통곡을 했다고 한다.

[아동 07] 체포되어 복송된 시기는 2003년도에 잡혀 나갔다. 그후 어머니가 다시 들어왔는데 오다가 인신매매에 걸려 다른 곳에 팔려갔다고 한다. 그곳에 팔려갔는데 엄마보다 나이 어린 남자한테 팔려갔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또 임신을 하여 남자아이를 낳았다. 남자 아이를 낳은 후 이 여자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 자기 아이도 아닌 다른 남자 아이를 안고 오니 화가 난 것도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또 운동(단속활동)이 있어서 조선 여자들을 붙잡는다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떠나 어느 경로원에 가 있었다. 그해가 2005년도 봄이 였다. 그렇게 거기 몇 달을 있다가 어떻게 그 아이도 잃어버리고 그 후 한국에 갔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아이와 갈라진 것은 2005년도 봄이었다.

[아동 23] 1998년 10월 누군가의 고발로 잡히게 되어 다시 나오게 되

었고, 1999년 4월에는 인신매매에 걸려서 직접 공안에 전화해서 잡혀 들어갔고 2002년 10월에 또 한 번 잡혀나가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2003년 3월에 잡혀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다가 또 잡혀 단련대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후 2005년에 파출소에서 왔다가 아이가 아프니깐 잡아 나가지 않았다. 그 후 지금까지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

[아동 24] 체포되어 복송된 시기 2006년도에 잡힘 그 후 지금까지 연락이 없음. 그 후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앓다가 정신이 더 나빠지어 정신병원에 갔다. (아버지가 총각 때 연애를 하다가 실연을 당해 정신이 좀 들낙날낙했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 여자를 돈 주고 사왔다. 여자가 잡혀간 후 병이 다시 재발했다. 여자와 사는 동안에는 병이 다 나았다고 한다.)

[아동 84] 2003년도 대수색이 있어 다 잡아 내갈 때 잡혀간 후로는 지금까지 종무소식이다.

[아동 100] 년도는 자세히 모르겠다. 아이가 6살 때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리고 인차 들어왔다가 또 잡혀나갔다가 또 들어왔다. 그 동네에 고발하는 남자가 있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잡혀나갔다.

3) 가출에 따른 가족 해체

어머니가 집을 나감에 따라 가족이 해체된 경우가 있다. 조사 대상 중 중국인 남성이 탈북 여성을 돈을 지불해 결혼한 가정은 42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성과의 인신매매를 통해 형성된 가정은 국적과 문화 그리고 언어 등 많은 부분이 다른 사람과 살아가야 한다. 신분상 불안정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탈북여성이 문화와 언어 등 많은 측면이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은 더욱 힘들 것이다.

<표 22> 어머니의 가출로 인해 가족 해체 사례

ID	가출 시기	아동 나이	연락여부	현재 거주지	가출 과정
02	2006	5세	×	연길시	한 마을에 사는 남자와 같이 도망가 연길에서 살고 있음.
06	×		×	산동성	
08	×		×	×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감.
20	2007	6세	×	×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남편과 싸운 후 가출하였음.
21	×		×	한국	아버지가 술을 먹고 너무 때려서 가출 후 한족 남자랑 같이 살다가 한국으로 감.
26	1999	0세	×	한국	1999년 잡혀 강제 복송된 후 중국에 다시 들어와 한국으로 감.
27	2010	8세		같이 살고 있음	여름에 보름동안 가출했다가 다시 들어옴
28	2004	2세	×	×	
35	2005	3세	×	×	공안에 붙잡는다는 소문을 듣고 가출함.
39	2007	7세	○	한국	탈북자들을 강제 복송하는 일들이 주위에서 자주 일어나니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가출을 한 후 2년 뒤 한국으로 감

40	2003	3세	×	한국	아버지가 한족이어서 언어가 안통하고 생활습성이 달라 힘들게 살다가 동네 조선족남자와 함께 가출한 후 한국으로 감
41	2008	8세	○	한국	한국에 가기 위해 가출했고 1년 후에 남편을 한국으로 데려감
46			×	×	중국 삼합진에 건너와 산막에 자매를 두고 어머니는 가출함.
57	2008	2세	×	×	
58	2001	1세	×	×	2년 전에 외지에서 병으로 죽었다고 들음.
60	2006	1세	×	×	
61	×		×	한국	아버지가 자다 깨어보니 어머니가 가출했고 그 후 한국으로 갔음.
64	2005	6세	×	한국	집을 떠난 후 한국으로 감
68	2001	3세	×	×	남편의 외모와 무능력함 때문에 살 수 없어 가출함
71	2002	2세	×	×	
75	2008	6세	×	한국	기독교 단체 도움으로 가출해 한국에 감
80	2002	3세	×	×	

81	2006	7세	×	한국	가출해 한국에 살고 있음.
82	2002	3세	×	한국	가출해 한국에 살고 있음.
83	2002	2세	×	×	가출해 소식이 없음.
86	2002	3세	×	×	가출해 소식이 없음.
87	2002	3세	×	×	집안이 가난하여 가출함.
92	2004	2세	×	×	생활이 가난하고 신변이 안전하지 못해 가출하였음.
93	2001	1세	×	×	한족이어서 음식과 생활습관이 맞지 않고 신변이 안전하지 못해 가출함.
94	2006	6세	×	×	한국으로 가기 위해 가출함.
98	2000	0세	×	×	아버지가 간암으로 죽자 시아비와 같이 살 수 없어 가출함.
99	2006	5세	×	×	
비고		평균:3.6세			

조사 대상 중 어머니가 가출해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는 전체 31명으로 조사 되었다. 이 중 현재 부모와 연락을 못하는 가정은 29명으로 조사되었고 8명의 어머니는 한국행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가출 할 당시 아동의 나이는 0세에서 8세이고 평균 나이는 3.6세였다.

가출에 대한 원인으로는 가난, 남편과 싸운 후, 다른 남자와의 동거,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신분에 따른 불안감, 아버지의 사망, 한국으로 가기 위함을 통해서 어머니의 가출 원인이다.

조사 대상의 가출 연도는 1999년에서 2010년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출 빈도가 높은 시기는 2000년에 2001년 시기이다.

<표 23> 어머니의 가출한 이유

어머니의 가출 이유	빈도(명)	비율(%)
한국에 감	12	50.0
모름	5	20.8
가난	2	8.3
남편과 싸운 후 가출	1	4.2
다른 남자와 동거	1	4.2
돈 벌러 감	1	4.2
불안감	1	4.2
아버지 사망	1	4.2
합계	100	100.0

어머니의 가출 이유로는 한국으로 가기 위해 가출한 경우가 조사 대상 중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중국에 살면서 외부 정보인 남한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됨으로서 언어와 문화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탈피하고자 남한 행을 위한 가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기타 의견으로는 신분의 불안감, 돈을 벌기 위함이다. 신분의 불안감으로 가출하는 경우는 아동 어머니가 불법 신분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 탈북 여성인 어머니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 다

른 경우에는 아버지가 한족이어서 언어와 문화 등이 맞지 않아 힘들게 살다가
가출하는 경우가 있다.

[사례] 어머니 가출 사례 I (한국행)

[아동 39] 2007년도에 가출을 했다. 그해에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
는 일들이 주위에서 자주 일어났다. 신변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되자 한국으로 가려고 가족과 상의하였는데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되어 가족들 몰래 2007년에 가출해서 집을 나
갔다. 2년 후에 한국에서 남편과 아들에게 전화로 연락을
가지게 되었다.

[아동 40] 아이의 아버지는 한족이어서 언어도 안통하고 생활습성도 잘
맞지 않아서 힘들게 함께 생활하다가 2003년도에 한동네에
서 사는 조선족남자와 눈이 맞아서 가출하였다. 후에 한국에
간 후에도 아이와 연락이 없다.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어머
니가 한국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아동 41] 2008년에 한국에 가기 위하여 가족들 몰래 가출하였다. 1년
을 거쳐 한국에 간 후 가족과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남편을
한국으로 데려갔다.

[아동 93] 2001년도에 가출했다. 한족이어서 음식 습관도 맞지 않고
안전 때문에 불안하여 도망을 간 것 같다. 그 후로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

4) 어머니와의 유대

어머니가 강제 송환되거나 가출로 인해 가족이 해체된 후 어머니와 아이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 해체
후 어머니와 연락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특히 어머니와 연락을 하는 경우
는 그 횟수와 방법 그리고 현재 어머니의 사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어머니와의 유대관계에 있어 강제 송환과 가출에 따른 가족 해체 후에 연락 비율을 조사한 결과 가출에 따른 가족 해체 후 연락 비율이 더 높게 나왔다. 하지만 대체로 연락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해체 후 어머니와의 연락 유지를 통한 재결합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가족 해체된 후 아동이 현재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경우를 조사한 결과 아동 72명 중 41명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어머니가 현재 있는 곳은 한국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북한이라고 응답한 아동이 많았는데 이는 강제 북송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이 해체 된 후 아동과 어머니와 유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아동이 어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헤어진 어머니와 연락여부와 방법 그리고 횟수를 물어보았다.

<표 24>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빈도(명)	비율(%)
보고 싶어 한다	58	76.3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18	23.7
합계	76	100.0

조사 결과 질문에 대해 응답자 76명 중 58명이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고 응답했다. 어머니의 존재를 알고 있는 아동 76명 중에서 어머니와의 헤어짐이 가출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어머니와의 연락 여부

어머니와의 연락 여부	빈도(명)	비율(%)
연락한다	21	29.6
연락 안하다	50	70.4
합계	71	100.0

어머니와 헤어져 지내는 아동 71명 중에서 현재 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있는 아동은 21명에 불과했다. 이는 조사 대상의 29.6%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아동이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로 어머니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의 성장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어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이 어머니와 연락을 하는 경우 그 횟수는 많게는 한 달에 다섯 번 정도이고 적게는 석 달에 한 번씩 연락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와 연락하고 지내는 아동 중 어머니와 헤어진 후에 다시 만난 적이 있는 경우는 8명이었고 주로 아동이 방학이나 명절 때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어머니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평소 어머니와 연락하는 수단으로는 대부분 전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와 연락하지 않는 사례로는 어머니가 강제복송 된 경우, 현재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경우, 현재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 등이다.

어머니와 유대관계에서 특이한 점은 어머니와 헤어질 때 아동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어머니의 존재자체를 모르는 아동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현재 아동은 친척 중 한명을 어머니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어머니의 강제 복송과 가출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면 어머니와의 관계 단절은 물론이고 앞으로 아동이 성장하는데도 꼭 필요한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아동과 어머니와의 유대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질문에 아동과 어머니가 만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의지가 있는 가정은 조사 대상 중 13가정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어머니와 만날 계획이나 의지를 없는 가정은 조사 대상 중 59가정으로 조사되어 많은 아동과 어머니가 다시 만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어머니와의 연락 사례

[아동 37] 한 달에 한번 정도 엄마가 전화 온다.

[아동 45] 한 달에 2번 정도 전화 온다. 전화통화를 한다.

[아동 48] 지난 7월 달에 와서 아직 한 번밖에 연락을 하지 않았다. 마음을 정하기까지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후 마음이 안착 된 다음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전화를 하게 할 것이다.

[아동 91] 적어도 한 달에 1번 정도 많으면 두 번은 온다.

[아동 100] 자주 전화 온다. 한 달에 몇 번은 정한 것이 없고 일이 있으면 오고 아무튼 자주 전화 온다. 적어도 4번은 온다.

[사례] 어머니와 연락 안하는 사례

[아동 03]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잡혀간 후 지금 까지 중무 소식

[아동 06]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어머니가 연락을 와야 연락을 할 수 있다.

[아동 38] 어머니가 강제 복송되었기 때문이다.

[아동 47]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동 54] 조선에 있기 때문이다.

[아동 82]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계모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사례] 어머니와의 유대 관계에서 특이 사례(고모를 어머니로 인식사례)

[아동 79] 아이가 큰 엄마를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친엄마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다.

[아동 98]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 지금 고모를 엄마라고 부르며 잘 크는 아이에게 공연히 엄마 존재를 알리는

것이 싫다.

4. 아동의 주요 인권상황

아동 어머니의 신분적 특성, 아동 가족의 해체 등의 상황은 탈북여성의 자녀들을 열악한 인권상황에 처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어머니의 신분으로 인해 호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로 인해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양육되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이러한 호구 취득의 문제, 교육 및 의료 관련 아동이 처한 상황, 폭행 및 성폭행 발생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1) 아동의 호구 취득

호구 취득 여부는 조사 대상 아동의 인권보호 측면에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호구 취득 변화 추이와 호구 취득 시 공식적인 방법, 비공식적인 방법, 호구를 취득하지 못한 부분을 나눠서 조사하였다.

<표 26> 호구 취득 여부 조사

구분	2008년 ²⁶⁾ (한반도화해센터)		2011년 ²⁷⁾ (피난처)		2012년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호구가 있다	56	74.7	87	90.6	91	95.8
호구가 없다	18	24	9	9.4	4	4.2
합계	75	100.0	100 (불명 4명)	100	95 (북한출생 제외)	100

26) “중국 내 탈북여성 2세 가정환경 조사 보고서”. 한반도평화센터. 서울. 2008.

27) “재중 탈북2세 아동의 인권실태와 보호방안 조사보고서”. (사)피난처. 서울. 2011.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아동의 호구 취득 여부는 전체 95명(북한출생 제외) 중 91명의 아동이 호구를 취득하여 전체 95.8%를 차지하였다. 한반도평화센터에서 2008년에 발표한 “중국 내 탈북 여성 2세 가정환경”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호구 취득비율은 전체 74.7%로 나타났다. 2011년 피난처에서 발표한 “재중 탈북2세 아동의 인권실태와 보호방안” 보고서에서는 호구 취득 비율이 90.6%였다. 이 두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2008년보다는 16.3%가 상승했고, 2011년보다는 5.2%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들이 점차 중학교에 입학하는 연령이 돼 감에 따라 호구취득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조사의 과정을 통해 아동이 호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벌금 또는 뇌물이 필요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국 당국이 탈북여성의 자녀에게 원칙적으로 호구를 부여하지 않다가 2000년대 중반 국제사회의 문제제기 등에 의해 어머니가 함께 지내지 않는 경우에 한해 호구를 공식적으로 부여했던 상황과 관련이 있다.

전체 조사 대상 중 61.8%가 일정 금액의 벌금 및 뇌물을 주고 호구를 취득하였다. 적게는 200위안에서 많게는 3,000위안까지 범위도 상당히 컸다.

관공서에 벌금을 지불하고 호구를 등록한 경우는 2000년대 중반에 공식적인 절차로 호구를 취득한 경우이다(<표 27> 참조). 조사결과 호구 취득을 위한 벌금의 액수는 사례마다 큰 차이를 나타냈다.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탈북여성 아동의 호구취득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해놓은 벌금은 없고 각 지역 및 관공서 자체적으로 벌금 액수를 책정하고 있다고 한다.

사례에 따라서는 중국정부의 정책과 관계없이 태어나자마자 호구를 취득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중국 농촌의 말단 행정기관들이 중앙정부의 방침과 관계없이 탈북여성 자녀에게 호구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표 27> 공식 절차에 의해 호구를 취득한 경우

ID	출생년도	취득년도	나이	비용	취득 과정
02	2001	2008	8	500	2008년도 당시 애들의 엄마가 잡혀간 집에는 아이들의 호구를 올릴 수 있다는 정책이 나왔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며느리가 잡혀갔음으로 확인서를 떼 달라고 해서 확인서를 떼 가지고 파출소에 찾아가서 아이의 호구를 올렸다.
05	2000	2007	8	1000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파출소에 찾아가 호구를 올렸다. 올릴 때 대대(해설:촌락하부단위, 일명 생산대대라면 예전 인민공사 시절의 촌락구분 단위였음)에 가서 아이의 엄마가 잡혀갔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제출했는데 호구 올릴 때 아이의 엄마가 잡혀갔다는 증명만 되면 호구를 등록시켜 준다고 했다.
12	2000	2000	1		호구 올리는 과정은 모르지만 인차 올렸다는 소리를 들었다. 한족들이 집거해서 사는 동네인 만큼 쉽게 올린 것 같다.
17	2002	2005	4	1000	아는 사람을 찾아서 대대에서 소개신을 떼고 파출소에 찾아가서 호구를 올렸다.
19	2000	2005	6	1000	남편이 아이의 호구를 올렸는데 그때는 아내가 잡혀나갔다는 소개신만 있으면 호구를 올려준다고 해서 소개신을 대대에 가서 떼고 아이의 호구를 올렸다.
23	1999	2003	5	1000	어머니가 잡혀간 후 아이의 호구를 올렸는데 엄마 없는 아이라고 소개신을 떼서 올렸다고 남편한테서 들었다.

27	2002	2005	4	1000	아이가 태어나자 호구를 올려야 하는데 처음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여서 아이의 호구가 늦어졌어 벌금을 냈다.
28	2002	2008	7		불법 아이라고 벌금 2천위안을 내야하는데 할아버지가 사법국에 찾아갔더니 또 당지 시민들의 도장을 맞아오라고 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도장을 맞은 다음 대대 서기를 찾아가서 도장을 찍고 정부에 올라가서 호구를 올렸다.
34	1999	2002	4	470	남편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 아이 둘을 한꺼번에 호구 올렸다. 호구 올리는 과정을 상세하게는 모르겠는데 대대 소개신을 떼고 호구 올리는데 찾아가서 올렸다고 들었다.
38	2000	2007	8	1800	아버지와 어머니도 호구가 없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60세가 넘어서 호구를 가졌다. 아이의 호구를 취득하기 위해 호구를 해주는 파출소에서는 탈북자가 낳은 아이는 어머니가 실종 되었거나 복송되어 아이와 함께 있지 않을 경우에만 호적을 해준다고 하면서 아이의 호구를 하려면 벌금 5천위안을 내라고 하였다. 아이의 아버지는 마을의 촌장과 함께 파출소에 가서 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말하고 사정을 봐달라고 사정하여 1000위안의 벌금을 하였다. 벌금 외에 수속비라고 하면서 800위안을 더 내고 아이의 호구를 하였다.
39	2000	2006	7	2800	공안에 아는 사람을 통하여 식사 대접하는데 1000위안, 정부에 내는 돈 1800위안 내고 호구를 올렸다.
40	2000	2006	7	1000	다른 사람들이 다 올리는 것처럼 돈을 내고 파출소에 찾아 가서 올렸다.

52	1999	2011	13	1000	사촌 시형이 부녀주임을 찾아가서 엄마가 없는 것으로 하고 수속을 해서 부녀주임이 나서서 다 해주어서 절차 같은 것은 모른다.
53	1999	2010	12	1500	아버지가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수속을 했는데 수속이 아주 복잡한 것 같았다. 왕청에 찾아가서 무슨 자료를 가득 만들어 가지고 가서 해왔는데 나는 상세한 것을 잘 모른다.
60	2005	2009	5	3000	원래는 호구하는데 7천위안이 든다고 했는데 아는 사람을 찾아서 수속비, 수고비까지 겸하여 3천위안을 들었다.
61	2000	2006	7	500	아는 사람을 통하여 돈을 좀 내고 했다. 그때 엄마가 잡혀갔다는 대대소개신만 있으면 다 해 줄때여서 소개신을 떼가지고 아이의 출생증을 가지고 대흥구 파출소에 찾아가서 했다.
64	1999	2002	4	2000	아는 사람을 통해 돈 내고 호구를 올렸다. 그때 다른 어떤 정책이 없었다.
67	1999	2007	9	1000	엄마가 잡혀갔다는 소개신을 대대에서 떼가지고 계획생육사무실에 가서 아이 출생증을 확인하고 대흥구진 파출소에 찾아가서 호구를 올렸다.
76	2001	2001	1	300	아이를 동녕시 병원에서 낳았다. 그때 아이의 출생 증을 내고 호구 올렸다.
77	1998	1998	1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호구를 올렸다. 다른 어떤 정책은 없었다.

78	2001	2001	1	200	아이를 삼차구 병원에서 낳았는데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증명을 주었다. 그 증명을 가지고 계획생육 반공 실에 가서 수속을 하고 그 다음 파출소에 갔다가 공안에 갔다가 다음 인구조사반에 걸쳐서 호구를 했다.
85	2002	2002	1	300	애 아버지가 파출소에 갔다왔다하면서 다했다.
87	1999	1999	1	300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동네에서는 다 호구를 올렸다. 우리 가정도 아이의 출생증을 가지고 계획생육 반공 실에 찾아가서 올렸다.
91	1999	1999	1		그때 여기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호구를 해주었다. 아들이 호구를 해서 과정은 잘 모른다.
95	2003	2003	1	300	림구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때 한 6백위안 들었던 것 같다. 병원에서 소개신을 떼가지고 대대 부녀 주임한테 찾아가서 말을 했더니 부녀주임이 알아서 다 해주었다.
99	2001	2003	3	300	아이를 낳았지만 일이 바빠서 인차 올리지 못하고 어떻게 미루다보니 3살에 아이의 호구를 올렸다. 이 지역에는 중국 사람들의 아이이면 쉽게 올렸다.

비공식적 호구를 취득한 경우는 관련 행정기관에 속한 지인을 통한 경우와 뇌물을 주고 호구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가족과 친인척 중 아는 사람이 호구 취득 관련 부서에 있는 경우는 호구 취득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호구를 취득한 아동은 호구 취득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 중 23명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호구 취득 시 뇌물을 주는 사례도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우의 비용은 500위안에서 4000위안까지 비용 차이가 많이 났다.

<표 28> 비공식 절차에 의해 호구를 취득한 경우

ID	출생 년도	취득 년도	나이	비용	과정
01	1999				친척이 공안에 있어서 호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
03	2001	2008	7	3000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올렸다고 하였다.
09	1991	2001	11		호구하는 곳에 친척이 있어 아버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단독하고 만들어 현재 아이는 고아로 되어있다. 아버지가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을 알고 아이의 호구를 고아로 하여 현재 정부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고 있다.
15	1998	2000	3	700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고 사돈이 공안에 있어서 돈을 좀 찢러주고 사돈이 알아서 해주었다.
16	1999	1999	1		아버지의 삼촌이 돈화시내 진장(진-행정구역-의 대표)이여서 삼촌이 올려주었다.
20	2001	2006	6	1000	작은 아들이 친구를 찾아서 올렸다고 들었다.
21	1999	1999	1		친척이 공안에 있어서 돈을 내지 않고 했다고 한다.
25	2001	2001	1		할아버지가 학교 교원인데 제자들이 나서서 해주었다.
29	2000	2001	2	2500	지표도 없고 북한 여자가 낳은 아이라 호구 올리기 힘든 것을 토지국 국장으로 있는 시집 친척이 공안에 이야기해서 호구를 올렸다.

30	2000	2000	1	3000	이를 낳기 전부터 아이를 낳으면 벌금을 한다고 해서 임신을 해서 피난을 갔고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집에 돌아와 호구를 올렸는데 남편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호구를 했다. 남편은 3살에 부모가 다 죽어서 고아이다. 그래서 그런지 쉽게 올렸다.
36	2002	2005	4	2000	아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는데 호구가 없어서 정부의 면목 관계(아는 사람)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 사람에게 1500위안을 호주머니에 찔러 주었다. 그리고 수속비도 500위안을 냈는데 정상적으로 받는 것 보다 더 냈다.
37	1999	2006	8	2000	정상적으로 아이의 호구가 되지 않아서 정부의 아는 사람을 찾아서 했다.
41	2000	2004	5	3000	춘양진의 산아제한방공실 주임과 인맥관계가 있는 사람을 통하여 호구를 했다.
42	2003	2008	6	2000	촌의 촌장과 함께 정부기관에서 호구를 수속을 해주는 사람에 예물을 주고 식사대접을 여러 번하고 하여 아이의 호구가 해결됐다.
43	2003	2006	4	2000	아이의 삼촌의 친구가 정부에 있어서 그 관계로 호구를 하였다.
44	1999	2008	10	2000	정부의 면목을 아는 사람을 통하여 호구를 받았다.
45	1999	2007	9	4000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호구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다가 큰 아버지가 나서서 정부기관의 사람을 찾아서 겨우 호구를 올렸다.

55	2003	2009	7	2000	2007년도에 동네 아이들을 촌에서 몽땅 해주었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와 촌사람과의 개인감정 때문에 해주지 않아서 이 아이는 2009년도에 우연히 기회가 있어서 했다.
56	2004	2007	4	1700	아이가 태어나서 호구를 올리지 못했는데 촌 간부들의 도움으로 동네 아이들이 몇이 같이 호구를 했다.
57	2006	2006	1	2000	할머니가 부녀주임 사업을 해서 손녀가 태어나자 호구를 올렸다.
65	1999	2010	2	610	할아버지가 정부에 찾아가서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아이라고 말을 해서 호구를 올렸다.
72	1999	1999	1	500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시어머니가 알아서 호구를 했다.
74	2003	2003	1	1000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는 사람을 통해서 했다.
80	1999	1999	1		할아버지가 대대 당 지부 서기이니깐 쉽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이 지역은 호구 올리는 것이 쉬웠다.
90	2000	2001	2	500	아이를 낳자 대대 지부 서기가 나서서 다 해주었다.
93	2000	2000	1		고모부가 연초공사에 경리로 있어서 호구를 고모부의 딸로 올렸다.

조사결과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여성 아동 95명 중 4명은 현재까지 호구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구를 취득하지 못한 아동들은 아버지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가 2명,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경우가 2명이다. 그리

고 조사대상 중 북한에서 태어나 어머니와 함께 중국으로 탈북한 아동 5명의 경우는 모두 현재 호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중국 농촌에서 소학교까지는 공식적으로 호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 중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호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호구가 없는 상태에서도 소학교를 다니는 데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다. 그러나 학교생활 중 호구와 관련된 교육내용이 있거나 호구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 호구가 없는 아동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고 한다.

<표 29> 호구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ID	출생년도	현재 나이	과정
10	2001	12	어머니가 강제 북송된 후 장애인 아버지는 행방불명 되었다. 이들 사이에 아이가 두명이 있는데 둘 다 호구를 올리지 못했다.
11	1999	14	아버지는 손 장애가 있어 일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 혼자 일을 해 가정형편이 어려워 어머니가 2010년에 한국으로 간 상태이다. 이런 가정 환경으로 아이가 호구 취득을 하지 못했다.
32	1999	14	호구를 취득에 5천위안이 든다고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을 지불할 수 없어서 호구취득을 못했다.
88	2003	10	호구 취득에 300위안이 필요한데 이 돈을 교회에서 주었다. 하지만 이 돈을 어머니가 다 써버리고 시기를 놓쳐 호구를 등록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호구 취득 시기를 보면 아동이 태어나자마자 호구를 등록한 수가 38명으로 조사 대상 전체 41.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 나이인 2세~5세 때 호구를

취득한 비율이 24.2%,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호구를 취득한 비율이 조사 대상의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호구 취득 나이는?

호구 취득 시기	빈도(명)	비율(%)
출생 직후	38	41.8
2세 ~ 5세 (유치원 입학 전)	22	24.2
6세 ~ 7세 (초등학교 입학 전)	9	9.9
8세 ~ 13세 (초등학교 입학 후)	14	15.4
모름	8	8.8
합계	91	100.0

2) 건강상태 및 의료

아동의 건강 및 의료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재 건강 여부, 현재 가지고 있는 병, 정기적인 치료는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 하였다.

조사 대상 100명의 아동 중 86명은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했다. 14명은 야뇨증, 위장병, 피부질환, 다동증 등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는 간염, 뇌성마비, 선천성 심장병 등 중병을 앓고 있었다.

<표 31> 아이의 현재 건강 상태

건강 상태	빈도(명)	비율(%)
아주좋다	16	16.0
좋은편	55	55.0
보통이다	15	15.0

좋지 않은 편	13	13.0
아주 좋지 않다	1	1.0
합계	100	100.0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이지만 병을 앓고 있는 아동들의 경우 정기적인 진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이 있는 아동 12명 중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아동은 1명이었고 병원진료를 받지 않는 아동은 4명이었다.

병원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지 않는 이유는 현지 농촌에서 일반적으로 질병이 있더라도 심하게 앓는 경우에만 병원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동들이 언제라도 진료를 받고자 하면 간단한 진료에서 큰 수술에 이르기까지 호구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표 32> 정기적 병원진료 여부

병원 진료 여부	빈도(명)	비율(%)
정기적으로 진료 받음	1	8.3
많이 아플 때만 병원에 감	7	58.3
병원진료 받지 않음	4	33.3
합계	12	100.0

3) 교육

중국은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 과정 6년과 중학교 3년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채택하고 있다. 탈북여성 아동들이 연령에 맞게 정규교육을 받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100명의 아동이 전부 학령에 따른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호구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나 실령 호구가 없더라도 중학교에 입학은 할 수 있으며 다만 호구가 없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졸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호구가 없는 현지

출생 탈북여성 자녀와 북한에서 태어난 아동들이 모두 중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이다.

4) 폭력 피해

다음으로 아동들이 학교와 거주지 마을에서 어머니의 신분적 특성에 기인한 따돌림이나 폭력 및 성폭력 피해가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보호자와 아동에 대한 조사결과 어머니의 신분적 특성을 이유로 한 따돌림이나 폭행 피해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학교생활과 지역 내 생활에서 교우 및 친구관계 등에서 원만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동이 학교에서 맞고 온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학교생활 중에 발생한 일상적인 싸움에 의한 것이었다. 아동들이 학교와 마을에서 어머니의 신분적 특성에 의해 소외되거나 집단따돌림, 지속적인 폭력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폭력피해 경험 여부

아동의 폭력 피해	빈도(명)	비율(%)
있다	6	6.0
없다	94	94.0
합계	100	100.0

여성 아동들의 경우 보호자를 상대로 학교나 마을에서 성폭력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러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민감한 문제와 관련된 조사를 효과적으로 하기에는 이번 실태조사가 제약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표 34> 성폭력 피해 여부(여성)

성폭력 피해	빈도(명)	비율(%)
있다	0	0
없다	42	100.0
합계	42	

전체적으로 아동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호구를 제때에 취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과 의료에 있어 어머니의 신분적 특성에 따른 문제점이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의 차별이나 지속적인 폭력피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다음 절에서 아동의 일상생활에 있어 생활 만족도가 높고 언어생활에도 전혀 이상이 없다는 조사결과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5. 아동의 현지 생활과 외부 지원

1) 아동의 현지 생활

어머니가 북한계인 아동이 현지 공동체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언어생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현재의 마을공동체와 학교공동체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변화를 원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일상생활 만족감을 살펴보았다.

(1) 언어 생활

탈북여성 자녀들은 중국 현지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언어인 중국어 사용에 대해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아동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가 66%를 차지하였고 조선어가 34%로 나타났다. 조선어를 사용하는 어린이는 주로 부모가 모두 조선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조선족 학교를 다니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아동이 중국어를 구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주로 사용하는 언어

사용 언어	빈도(명)	비율(%)
중국어	66	66.0
조선어	34	34.0
합계	100	100.0

[사례] 사용 언어에 대한 적응 실태 경우

[아동 17] 아이는 집에서는 조선말을 하고 밖에 나가서는 주로 중국말을 한다. 주변에 한족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중국말을 잘한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중국말 텔레비전을 본다.

[아동 31] 조선족 학교에 다닌다. 한족이지만 엄마가 우겨서 조선족 학교에 보냈다고 한다. 집에서는 가족 모두가 중국 사람이여서 중국말을 한다고 한다. 엄마와도 중국말을 한다. 엄마도 이제는 중국 사람이 다 되었다.

[아동 68] 조선학교에 다니지만 중국어를 사용한다. 목단강 시내는 역사, 지리, 물리, 수학 모든 과목이 다 중국어로 되어있다. 말로는 조선족 학교이지만 조선어문 시간에만 조선어를 한다.

[아동 79] 조선말은 집에서 하고 밖에서는 중국어를 사용한다. 요즘 애들은 밖에서 아예 조선말을 하지 않는다.

[아동 88] 집에서만 조선어를 하고 조선어문 시간에만 조선말을 한다. 그리고 밖에서는 다 중국말을 한다.

(2) 생활 만족도

아동이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려할만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현재의 집과 마을, 학교에서 계속 살고 싶은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학교를 옮기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조사결과 아동들은 앞으로도 현 가정과 마을 그리고 학교에 계속 있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하는 아동이 전체의 96%를 차지했고, 현재의 마을과 학교 또한 앞으로도 계속 다니고 싶어하는 아동이 전체의 88.9%로 나타났다.

<표 36> 현재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지 여부

현재 집에 계속 살고 싶은지 여부	빈도(명)	유효(%)
계속 살고 싶다	95	96.0
살기 싫다	4	4.0
합계	99	100.0

<표 37> 현재의 학교에 계속 다니고 싶은지 여부

현재 학교에 계속 다니고 싶은지 여부	빈도(명)	유효(%)
있고 싶다	88	88.9
있기 싫다	11	11.1
합계	99	100.0

[사례]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 경우

[아동 10] 계속 이 학교에 다녔으면 좋겠다, 다른 곳에 가기 싫다. 선생님도 좋고 친구들도 좋다.

[아동 17]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다. 다른 집에 가는 것이 싫다. 아버지는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

[아동 46] 지금 살고 있는 집(가정)에서 계속 살고 싶다. 하지만 호구가 없어서 호구 올렸으면 계속 여기서 살고 싶지만 호구가 없을 경우 한국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한국에 가지 못할 경우 계속 이 집에서 살고 싶다.

[아동 86] 할머니와 같이 사는 것이 좋기는 한데 연세 많은 할머니가 밥하는 것이 미안하다. 다른 집에 가는 것은 싫다.

2) 외부의 지원

대체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에서 태어난 탈북여성 아동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의 과정에서 아동들에 대해 외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어머니가 우리나라로 입국해 살고 있는 경우에 어머니로부터의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1) 지역 공동체의 지원

아동들은 대부분 열악한 경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 최소한의 양육비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다. 특히 가정에서 정상적인 양육이 어려워 ‘쉼터’와 같은 곳에서 살고 있거나 방계가족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더더욱 외부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표 38> 외부의 양육비 지원

외부의 양육비 지원	빈도(명)	비율(%)
받고 있다	39	44.3
받고 있지 않다	49	55.7

합계	88	100.0
----	----	-------

조사결과 외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44.3%로 나타났다. 23명의 아동이 교회와 그 관계자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고 11명의 아동은 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와 한국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여성 아동들에 대해 현지의 교회와 관련 종사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앞의 실질적인 양육보호자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 39> 양육비 지원자

양육비 지원자	빈도(명)	비율(%)
교회	23	59.0
아버지	8	20.6
어머니	3	7.7
쉼터(교회 무관)	2	5.1
한국 단체	2	5.1
유치원 원장	1	2.6
합계	39	100.0

[사례] 양육비 지원 경우

[아동 02] 지난 6월까지는 생활비 한 달에 600위안을 받았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대주지 않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동 03] 교회로부터 한 달에 600위안을 받았다. 8월부터는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을 하고 있다.

[아동 09] 한 아이당 한 달에 한국 돈 5만원을 받고 있음. 모자라는 부분은 교회에서 좀 대고 있고. 때로는 목사님들이 와서 보고 얼마

씩 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또 이아이가 고아이므로 정
부로부터 한 달에 200위안씩 받고 있다.

[아동 11]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돈을 보내고 아버지가 이
집에 쌀과 채소, 그리고 돈 200위안을 대고 있다고 함

[아동 23] 아이의 생활비는 한 달 기준으로 남편이 한국에서 2천위안 보
낸다. 요즘에는 돈을 못 번다고 몇 달에 한 번씩 보내어 교회에
서 한 달에 700위안씩 받고 있다.

<표 38>에서 보듯이 외부로부터 받는 지원금 액수는 월 500위안 이하가
전체의 72.9%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우들인데, 현지 교회들은 대부분 매달 200위안씩을 탈북여성 아동들에게 지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지 교회의 지원은 한국과 미국 등 외
부 기독교계의 지원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표 40> 외부지원금(1개월)

외부 지원금(1개월)	빈도(명)	비율(%)
500 이하	27	72.9
600 ~ 1000	5	13.5
1000 ~ 2000	2	5.4
2000 ~ 3000	2	5.4
5000 이상	1	2.7
합계	37	100

(2) 한국 거주 어머니의 지원

탈북여성 아동의 어머니가 한국으로 가서 살고 있는 경우 어머니로부터의 양육비 지원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한국으로 간 어머니 26명 중 절반이 넘는 15명(57.7%)이 현지의 아동 가정에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한국의 어머니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거나 부정기적으로 교육비, 금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11명에 그치고 있었다.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26명 중 단 2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앞에서 현재 아동의 가정을 벗어난 어머니의 70.4%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표 26>).

<표 41> 한국 거주 어머니의 지원 여부

한국 어머니의 지원	빈도(명)	비율(%)
아무런 지원이 없음	15	57.7
가끔씩 돈을 보냄	7	26.9
매달 가족생활비	2	7.7
아이의 교육비	1	3.8
그 외 다른 방법	1	3.8
합계	26	100

6. 정책 고려사항

이번 중국출생 탈북여성 아동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우리 정부 및 시민사회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만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출생 탈북여성 자녀들에게 정상적으로 호구가 부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사결과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여성 자녀들의 호구 취득 비율이 95%(95명 중 91명의 아동이 호구를 취득)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간의 ‘무국적 아동’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불식시키고 있어 다행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구를 취득하지 못하는 아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현재 중국에서 탈북여성의 자녀는 ‘출생 직후 호구등록’이라는 정상적인 과정에 의해 호구를 얻지 못하고 어머니가 가정을 떠난 이후에만, 또는 당국에 의해 그렇게 간주된 경우에만 호구를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호구를 취득한 경우일 지라도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구를 취득하지 못한 4명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뇌물이나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였다. 아동의 보호자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절차를 추진할 정도로 사회의식이 발달하지 못한 경우에 여전히 호구가 없는 상태로 아동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호구를 취득하지 못한 아동들은 현지에서 중학교 이상 진학할 수 없고 의료혜택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는 등의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은 탈북여성이 여전히 불법체류자로 단속과 강제복송의 대상인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중국 국적법에 의해서라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중국인이 되어야 할 탈북여성과 현지인 남성 사이에서 난 자녀들이 합법적으로 호구취득을 할 수 있도록 중국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

(2) 중국 내 탈북 여성의 강제복송을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아동들의 가족해체의 원인 중 탈북여성인 어머니의 강제복송에 따른 사례가 36건이나 되었다. 탈북여성에 대한 강제복송은 그 자체로 복송 시 북한에서 받게 될 인권침해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여기에 그 자녀 아동이 유아 및 아동기에 어머니와 강제로 헤어지게 된다는 점, 그리고 강제복송으로 인한 가족해체 이후 현실적으로 재결합 가능성이 극히 낮아 아동이 어머니와 영원히 헤어지게 된다는 점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탈북여성에 대한 중국의 강제송환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탈북여성의 강제복

송 우려가 사라지게 되면 아동 어머니들의 현지 정착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져 아동이 정상적으로 모성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3) 탈북여성의 중국잔류 아동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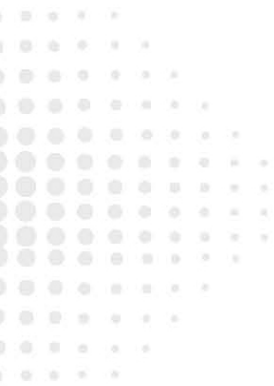

탈북여성 아동들은 현재 중국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으나 어머니가 탈북자로 한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상황의 결과로 초래된 것이라는 점과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과 지원은 필수적이다.

특히 조사결과 현재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아동들, 그리고 부모가 아닌 다른 친척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 중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설 것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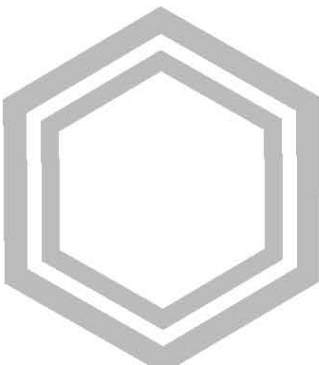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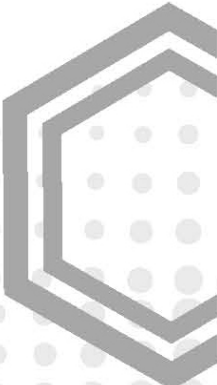

우선 현지의 ‘요보호 아동’들에 대한 생활지원과 교육지원이 시급히 요구된다. 그리고 아직 호구를 취득하지 못한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급히 호구를 취득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중국 당국이 ‘탈북여성’과 중국잔류 아동의 관련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외부의 공식적인 지원에 제약이 매우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국잔류 ‘요보호 아동’들에 대한 지원은 그 필요성과 중국 당국의 정책을 고려할 때 국내 및 현지의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민간단체가 중국의 농촌 및 도시 외곽의 요보호 아동들에게 생활 및 교육지원을 하는 방식의 접근이 효과적인 방안이다.



IV. 중국의 탈북여성 아동 정책과 법규범적 평가

1. 탈북여성 아동 인권 실태 및
중국의 관련 정책 개요
 2. 중국 국내법상 평가
 3. 국제인권조약상 평가
 4. 국제인권레짐의 활용 가능성
 5. 정책 고려사항
- 
- 
- 
- 

IV. 중국의 탈북여성 아동 정책과 법규범적 평가

1. 탈북여성 아동 인권 실태 및 중국의 관련 정책 개요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여성의 아동 규모는 앞서 살펴봤듯이 최소 1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까지 그 추정 폭이 상당히 넓은데,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략 수만 명 수준의 관련 아동이 있는 것으로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탈북여성이 중국에서 중국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통해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등록 및 국적권과 관련 있는 중국의 호구에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동인권 측면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기타 문제인 탈북여성 아동의 교육권 및 건강권 등의 문제도 호구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양계혈통주의를 인정하여 아버지만 중국 국적이 있어도 호구 취득에 의한 중국 국적 부여가 가능하지만 탈북자인 어머니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인해 그 아동이 사실상의 무국적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호구가 없는 경우 탈북여성 아동은 초등학교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가도 중학교 입학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체류 아동인 경우 병원에의 접근 등 건강권 내지 보건권이 일부 제약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점들을 떠나, 인간의 정서 및 신체 발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시기인 아동기에 어머니 등 부모와 생이별을 한 후 다른 주위 사람들에 의해 길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아동의 이익을 고려할 때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1차적 조치는 중국이 탈북자, 특히 탈북 여성의 강제북송을 자제하고 그들에게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는 것인데, 현재까지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은 변함없이 탈북자 전원 강제북송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2. 중국 국내법상 평가

1) 출생등록 및 국적권

중국 국적법 제4조에 의하면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 공민인 자로서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한 경우 중국 국적을 소유한다”고 하여 설사 탈북여성이 불법체류 중이고 중국 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탈북여성의 아동은 아버지가 가진 중국 국적에 의거 중국국적 취득권을 가진다. 그러나 어머니인 탈북여성이 자신의 불법체류 여부가 발각되면 강제송환될 우려가 있고, 또 정식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호구를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단, 아동의 어머니인 탈북여성이 강제복송되는 등 아동과 함께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호구신청 지체로 인한 뇌물형태의 벌금을 납부한 후 호구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1958년 1월 9일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호구등기조례’에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한 후 각 성에서 호구신청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북경시에서 출생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의학증명, 부모 ‘양측’의 주민호구부, 주민신분증, 그리고 혼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²⁸⁾ 이는 다른 성의 경우에도 대동소이한데, 결국 탈북여성의 불법체류신분으로 인해 그 아동의 정상적인 호구 발급이 불가능한 것이다. 사실혼 등 혼인 외 출생에 대해서는 운남성 등에서와 같이 모친의 호구만을 요구하기도 하지만²⁹⁾ 이 경우에도 탈북여성의 아동은 정상적인 호구 등록이 결국 불가능하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부분의 탈북여성 아동들은 다행히 호구를 취득한 상태였다(95.8%). 이 중 탈북여성이 가정을 떠나 아동이 호구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경우도 상당수 있겠지만, 기타 정상적인 호구 취득이라기보다는 지인 내지 뇌물 등을 동원한 비정상적인 호구 취득도 여러 사례 확인되었고, 무엇보다도 나머지 4.2%의 아동은 호구가 없는 문제점을 보였다. 따라서 중국 국내법상 부여한 탈북여성 아동의 국적취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28) <http://www.npc.gov.cn/wxzl/gongbao/2000-12/10/content_5004332.htm>;

<http://www.bjgaj.gov.cn/web/detail_getWsgsInfo_36872_col1346.html>.

29) <<http://baike.baidu.com/view/4352698.htm>>;

<<http://www.xsbn.gov.cn/wmfu/ShowArticle.asp?ArticleD=6288>>.

라도 호구 등록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이 상위법에 맞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 즉,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 정상적인 호구 등록의 방법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최소한 호구가 아니더라도 미국, 영국, 태국과 같이 부모의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출생일, 출생지, 부모 성명 등 자신의 기본적인 출생관련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출생등록절차를 새로 마련하여 사실상의 무국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³⁰⁾

2) 교육권

중국 의무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중국은 9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 동 법 제4조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지닌 모든 적령 아동과 소년은 성별, 민족, 종족, 가정 재산상황, 종교신앙 등에 관계없이 법에 의해 평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울러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본적으로 중국 국적이 있는 아동에게만 교육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호구가 없는 탈북여성 아동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국의 의무교육기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에 있어 적절한 교육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실제 상황은 대부분이 호구를 가지고 있기도 하려니와,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도 본 실태조사에서는 100%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발견되진 않는다. 하지만 뒤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국제법적 기준에 의하면, 교육권은 ‘국적’에 의해서 차별되어서는 안 되고, 최소한 초등교육은 국적에 상관없이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중등교육도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중국의 관련 국내법령이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 또 호구가 없는 아동도 소학교에 다니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중학교에 다니려면 원칙적으로 호구를 제출해야만 하는데, 현재 호구 없이도 학교에 다니는 9% 조사아동 중 중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비록 현재 학교는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정식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호구를 취득하여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다.

30) UNHCR, "In Thailand, birth registration gives refugee babies a good start in life", *News Stories* (24 September 2012).

추가로, 건강권과 관련해서 탈북여성 아동에 대한 중국 국내법상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으며, 상당수 관련 아동이 중국 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으며, 혹 호구가 없는 아동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치료비만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 병원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국제인권조약상 평가

1) 아동권리협약(CRC89)

아동권리협약 제22조 1항은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5년 아동권리위원회(CRC)는 중국의 제2차 정기보고서를 검토한 후 자신의 최종견해를 발표하였는데, 우선 중국에 입국한 탈북 아동들을 무조건 경제적 이주민으로 간주하여 송환시 회복불가능한 피해의 위험(a risk of irreparable harm)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없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의 헌법 및 아동권리협약상의 모든 인권보장을 중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난민, 비호를 구하는 자, 불법이주자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아동들에게 확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탈북아동들을 포함해 어떠한 부모미동반 아동(unaccompanied child)도 회복불가능한 피해의 위험 - 예를 들면, 이민법 위반에 대한 과도한 처벌 등 - 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국가로 송환되는 일은 없어야 함을 강조하였다.³¹⁾ 이는

31)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Concluding Observations: China (including Hong Kong and Maca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s)”, UN Doc. CRC/C/CHN/CO/2 (24 November 2005), paras. 80, 82. 관련원문은 다음과 같다: “80.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children entering mainland China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e categorically considered as economic migrants and returned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thout consideration of whether there are risks of irreparable harm to the

물론 북한에서 태어난 탈북 아동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지는 않지만, ‘불법’체류 중인 탈북여성 아동의 교육권(제28조) 및 건강권(제24조) 등 제반 아동권리협약상 권리들도 합법체류 중인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비록 아동권리위원회가 명시적으로 인용하진 않았지만, 아동권리협약에는 탈북여성 아동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만한 관련 조항이 여럿 발견된다. 우선 생명권을 규정한 제6조 및 고문금지를 규정한 제37조가 적용가능하며, 제2조의 비차별의 원칙, 제3조의 아동 최선의 이익 우선의 원칙, 그리고 제22조 2항, 제10조 1항 및 제9조 1항 등에 규정된 가족재결합의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18세 미만³²⁾의 탈북여성 아동에게는 성적 착취 및 학대를 금지한 제34조 및 인신매매를 금지한 제35조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이번 조사에서는 탈북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이나 성폭행 등 심각한 인권유린상황이 특별히 발견되진 않았지만, 일부 아동권리협약 관련 우려사항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탈북 여성의 중국내 출산자녀에 대한 문제에는, 출생 후 즉시 등록과 성명권, 국적취득권 등을 규정한 아동권리협약 제7조 및 아동의 교육권을 규정한 제28조가 적용가능하다.³³⁾ 탈북여성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그 자녀의 국적취득권이 침해당해서는 안되며, 최소한 체류국 국적 부여 여부와 상관없이 제3국에서라도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출생등록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때, 비록 불법체류 중이거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아동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교육받을 기회가 박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³⁴⁾

child upon return. 82.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xtend all human rights guarantees in its Constitution and in the Convention to all children within its jurisdiction on both the mainland and the SARs [Hong Kong and Macao], including refugees, asylum-seekers and other undocumented migrants. In particula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b) Ensure that no unaccompanied child, including those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returned to a country where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re is a risk of irreparable harm to the child, for instance through disproportionate punishment for violating immigration laws, in accordance with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6 (2005) on unaccompanied minors;

32) 아동권리협약 제1조 참조.

33) Geraldine Van Bueren, *The International Law and the Rights of the Child*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5), pp. 117-118, 366-368 참조.

34) CRC, “Concluding Observations: China”, *supra* note 62, paras. 81-82; CRC, “General

이상의 아동권리협약 상의 내용들은 이미 살펴본 대로 중국의 탈북여성 자녀에 대한 여러 국내법령 및 관련 관행들이 상당 부분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출생등록권, 국적권 및 교육권은 물론이거니와, ‘아동 최선의 이익’ 및 ‘가족재결합원칙’ 등을 고려할 때 탈북여성의 아동은 중국에 그대로 둔 채 그 어머니만 강제북송하는 관행(본 실태조사 중 36%)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전반적 권리 및 복지를 진정 고려한다면 가족을 강제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법화하여 중국인 아버지의 가족권 및 탈북여성 및 그 자녀의 여러 다양한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사회권규약(ICESCR66)

사회권규약 제10조는 가족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엔 건강권, 그리고 제13조엔 교육권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모두 탈북여성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들로 중국은 관련 국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사회권위원회(CESCR)는, 비록 상기 사회권규약상 구체적 권리에 대한 명시적 지적은 없었지만, 중국 내 탈북자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일반적 우려 및 권고를 중국의 제1차 국가정기보고서 검토 후 최종견해의 형식으로 2005년 발표한 바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경제적 이주민으로 간주되어 난민결정절차에서 배제되고 강제북송되는 탈북자의 현실에 대해 주목하면서, 사회권규약 제2조 2항에 규정된 대로 인종, 피부색, 민족적 출신 등에 근거해 그 목적이거나 효과면에서 특정 비호를 구하는 자들을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정식으로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보충적 성격의 보호제도의 설립 및 이들에 대한 UNHCR의 접근권 보장을 권고하기도 하였다.³⁵⁾

Comment No. 6: Treatment of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outside their country of origin”, UN Doc. CRC/GC/2005/6 (1 September 2005), paras. 41-43; 아동권리협약 제3조 및 제 4조 참조.

35)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CESCR), “Concluding Observations: People’s Republic of China (including Hong Kong and Macao), UN Doc. E/C.12/1/Add.107 (13 May 2005), paras. 14, 45. 주요관련원문은 다음과 같다: “14. The Committee notes that some asylum-seekers are excluded by the refugee determination procedure of the State party, in particular those coming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are regarded by the State party as economic migrants and are thus compelled to return to their

3) 기타 국제조약

중국은 앞서 언급한 아동권리협약 및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관련 국제 의무를 부담하지만, 또 다른 관련 조약인 무국적자지위협약 및 무국적감소협약에는 당사국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관련 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반면, 중국은 1951년 난민지위협약(CSR51) 및 1984년 고문금지협약(CAT84)의 당사국으로 동 협약은 각각 제33조 및 제3조에 강제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명시하고 있어 탈북여성 및 그 자녀가 북한으로 귀환될 경우 박해 내지 고문, 기타 비인도적 행위를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 헌법 제32조 2항에도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정치적 이유로 망명을 신청한 자에게 중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영토적 비호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은 난민지위협약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난민인정절차를 구비하지 않고 있는데,³⁶⁾ 이렇듯 난민인정절차 자체가 없어 난민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탈북자들에 대해 일괄 단순 불법이민자(illegal immigrants) 내지 경제적 이주민(economic migrants)으로 규정하여 전원 강제송환하는 것은 명백한 중국의 국제의무 위반이다.

마지막으로, 다행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아동 성폭행 사례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만약 이러한 사례가 관련되어 있다면, 중국이 당사국인 2000년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관련 내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countries. 45.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its asylum procedures do not discriminate, in purpose or in effect, against asylum-seekers on the basis of race, colour or ethnic or national origin, as provided for under article 2, paragraph 2, of the Covenant.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sider adopting subsidiary forms of protection to guarantee the right to remain for persons who are not formally recognized as refugees but are seeking asylum and nevertheless require protection during that period, and granting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nd humanitarian organizations access to them. ...”.

36) 중국은 최근 국제인권조약 감시기구 등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내적으로 난민인정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작업이 진행 중임을 표명한 바 있다.

4. 국제인권레짐의 활용 가능성

국제사회에는 상기 언급된 국제인권조약과 관련된 다양한 이행감독메커니즘이 존재한다. 먼저, 아동권리위원회, 사회권위원회 등 중국이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검토를 받는 조약감시기구에서의 논의를 통해 탈북여성 아동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아동권리협약이나 사회권규약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결국 탈북 아동 어머니의 강제복송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 차원이나 ‘가족재결합 원칙’ 차원에서도 근본적 문제이기 때문에,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대한 확인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UN난민기구나 고문방지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에 대해서는 여러 인권조약상 이행감독장치 중 국가정기보고제도만이 유일하게 활용 가능하다. 따라서 아동권리위원회, 사회권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에 중국이 차기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 관련 논의가 진행될 때 탈북여성 아동의 문제를 일반적인 탈북자 문제에 더해 집중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표 42> 6대 핵심인권조약의 이행감독장치 및 중국

인권조약	중 국	국가정기 보고제도	국가간 통보제도	개인 통보제도	비공개 조사제도
사회권규약 (ICESCR66)	1997년 서명 2001년 비준	○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자유권규약 (ICCPR66)	1998년 서명 아직 미비준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인종차별 철폐협약 (ICERD66)	1981 가입	○	○ (수락선언 불필요)	X (수락선언무)	해당무
여성차별 철폐협약 (CEDAW79)	1980 서명 1980 비준	○	해당무	X (선택의정서 비당사국)	X (선택의정서 비당사국)
고문방지 협약 (CAT84)	1986 서명 1988 비준	○	X (수락선언무)	X (수락선언무)	X (유보)

아동권리 협약 (CRC89)	1990 서명 1992 비준	0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	--------------------	---	-----	-----	-----

또한, 중국에 대한 UN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가 2013년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므로, 일반적인 탈북자 문제에 더해 더욱 보편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중국 내 탈북여성 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 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5. 정책 고려사항

비록 다자적인 국제인권레짐을 통해 탈북여성 아동의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 및 방안에 대해 살펴보긴 했지만, 이러한 다자적이고 규범적인 접근과 함께 사실 중국 자신이 이들의 보호에 진정 관심을 가지고 현실적으로도 자신의 지역사회에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금번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아동의 과반수가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66%), 아동 대부분이 현재의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며 지금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다는(95%)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중국인 아버지와 탈북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이 살아갈 가장 적합한 장소는 북한도 아니고 남한도 아닌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이는 아동 이익의 관점에서 그렇고 중국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도 그렇다. 이러한 점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중국 정부가 최소한 중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탈북여성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자신의 호구등록제도를 개선하여 어머니의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아동이 정상적으로 중국의 호구에 등록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 및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아동의 이익을 고려하여 최소한 중국인과 가정을 이룬 탈북여성에 대해서는 강제송환정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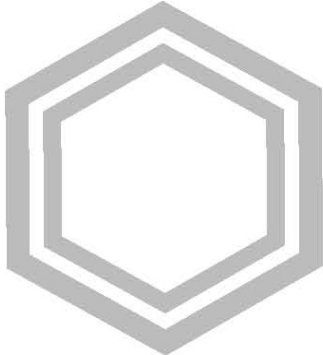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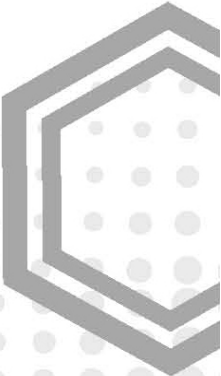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UN과 같은 다자인권무대에서는 물론 중국과의 양자 교섭 시 일반 탈북자 문제와 분리하여 중국 내 가족권

보장 및 미성년 아동에 대한 인도적 보호 차원으로 설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 및 불법체류자 자녀의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무국적자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정비하여, 중국과는 다른 차원의 비교우위를 가지고 양자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한에 기정착한 어머니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탈북여성 아동의 국내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국적판정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의 개정에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UN 인권최고대표 등 국제사회가 관련하여 중국과 건설적인 인권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정부가 측면 지원하고, 탈북여성 아동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NGO 지원단체들이 중국 내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조용히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도 정부가 직접 할 수 없는 여타 역할들과 관련해 정부와 북한인권 NGO 간의 역할 분담이 지혜롭게 분배될 필요가 있다.



V. 결론

1. 고려사항
 2. 정책제안
- 
- 
- 
- 

V. 결론

‘중국출생 탈북여성 자녀(아동)’ 혹은 ‘탈북여성의 중국잔류 자녀(아동)’문제는 북한체제에서 비롯된 또 하나의 인권적 사안이다. 만성적인 식량난과 억압적인 체제를 피해 중국으로 탈출한 대다수의 북한여성들은 공안의 단속에 쫓기면서 현지인과 사실혼 관계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 하지만 중국당국은 자녀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탈북여성들을 체포하여 강제송환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친모로서의 권리와 가족결합의 권리 모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많은 탈북여성들은 한국행을 선택하고 또 다른 이산가족의 아픔을 가슴에 묻은 채 어려운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

본 조사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실상 강제로 분리된 채 생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국내 아동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하여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책임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고려사항

본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는데 정부 및 시민사회의 대응을 위한 고려사항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1) 탈북여성의 중국 잔류 아동의 규모는 수만에서 최대 10만까지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연구는 선행연구의 추정산식과 현지 정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중국내 탈북여성 출산 자녀수 최대치를 2-3만 규모로 추정하며 특히 이 가운데 요보호 아동 수는 4,000명 정도로 추산한다.

2) 호구문제는 중국내 ‘북한계 아동’ 인권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사안이다. 본 조사연구에서 ‘접근가능한’ 중국내 탈북여성 출산 자녀들의 경우

95% 정도가 호구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74% 정도보다 진전된 것이다. 조사시점에서 2-3년의 차이를 보이는 점과 학령기에 접근하는 연령대 아동이 늘어나게 됨으로서 보호자들에 의한 호구취득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무국적 탈북고아’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며 ‘중국출생 탈북여성 자녀(아동)’ 혹은 ‘탈북여성의 중국잔류 자녀(아동)’이라는 용어를 선택할 것을 제안한다. 후자의 경우 국내입국 탈북여성의 2차 피해 및 우리 정부의 보호책임 의무 등을 명시하는 의미를 지닌다.

중국내 호구취득 과정에서 100위안-3,000위안 (국내조사: 1,000위안 -6,000위안)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중국 당국이 중국출생 탈북여성 자녀들에 대해서 탈북여성과의 ‘불법적’ 혼인관계에 따른 벌금조의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용부담은 그동안 이들 아동들의 호구취득이 늦어지게 된 중요한 요인이며 생모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회피하려는 요인도 작용하였다.

3) ‘탈북여성의 중국잔류 자녀(아동)’들의 인권실태는 예상했던 것보다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활만족도도 비교적 높고, 건강상태도 양호하며, 대부분 학령기 아동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규모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아동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고 친모와의 분리에 대한 심리적 상처를 가지고 있다.

전체 조사대상의 44%가 지역공동체, 특히 교회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약 24% 정도가 어머니로부터 일정부분 생활비를 받고 있었다. 전체 조사대상 가운데 80% 아동들이 친모와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의 36% 아동들의 친모는 중국 공안에 의해서 강제복송되었다. 전체 조사대상의 24%는 그 상당수가 한국행으로 귀결되어지는 친모의 가출로 분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조사대상의 70%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다. 친모와 연락을 취하는 아동들은 전체 조사대상의 23%대에 지나지 않고 있다.

30명의 대상자를 조사한 국내 탈북여성 조사결과에서도 가족분리에 따른 심리적 트라우마와 정서적 고통이 발견되고 있다. 일부 탈북여성들은 중국내

잔류아동에게 월 50만원 정도를 송금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2. 정책 제안

1) 외교통상부

○ 우선 중국과의 양자 교섭을 통해, 탈북여성 아동의 보호에 중국이 인도적 견지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보호 정책이 결국 자신의 지역사회에도 진정 도움이 되는 것임을 적극 설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호구등록제도를 개선하여 탈북여성의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탈북여성 아동이 중국 호구에 등록되도록 중국을 설득하며(대안적으로 새로운 출생등록제도 마련), 보다 근본적 대책으로 중국인과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 탈북여성이 절대 강제송환되는 일이 없도록 중국을 설득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탈북자 문제와 분리하여, 보다 인도적이고 중국의 미래 세대인 아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중국내 가족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탈북여성 아동 문제를 접근한다.

참고로 중국의 노령화가 최근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중국의 1자녀 정책도 최근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은 대중국 설득논리의 하나가 될 수 있다.

○ 다자차원에서도, 아동권리위원회, 사회권위원회 등 중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의 조약감시기구에서 진행되는 중국의 국가정기보고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탈북여성 아동과 관련된 문제를 미리 철저히 준비하여 제기하고, 2013년 중국에 대한 UN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시에도 양자 교섭의 결과를 감안하며 탈북여성 아동의 인권 문제를 적절히 제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UN 인권최고대표 등 국제사회가 관련하여 중국과 건설적인 인권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정부가 측면 지원하고, 탈북여성 아동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NGO 지원단체들이 중국 내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조용히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이미 한국에 정착한 탈북여성이 현지 중국인 아버지의 동의 하에 자신의 자녀만을 국내로 데려오려고 할 경우 절차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 내 한국 공관에 아동의 출생등록을 하려고 하여도 여러 절차상 미비로 인해 접수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관련 절차 마련의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한국 국적이면 아동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중국 현지에서 유전자 검사와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탈북여성 아동의 국적취득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중국인 아버지와 아동이 함께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와 달리, 중국이 관련 아동의 여권이나 출국을 인정해 주지 않음으로써 한·중 간 외교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음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법무부

○ 탈북여성 아동이 입국 후 국내에서 국적취득을 신청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국적법상 국적판정제도를 개선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개정도 진지하게 고려하여 이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³⁷⁾

탈북여성의 중국 호구나 관련 아동의 중국 호구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친자관계가 확인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라도 탈북여성 아동의 한국 국적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탈북여성이 강제북송된 상황 또는 국내에서 탈북여성과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탈북여성 아동이 국적취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국적을 판정하는 방법은 더욱 어렵다. 그렇다고 일괄 국적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일단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여러 신문절차 등을 거쳐 정부의 반증이 없는 한 아동최선의 이익을 고려 국적을 인정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은 제2조에서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

37) 이규창, “무국적 탈북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 모색”,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pp. 213-238 참조.

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국에서 출생한 탈북여성 아동을 그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법무부는 관련 법 주무부서인 통일부와 협조 하에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을 개정하여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여성 아동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인적 대상을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아동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하나 그 어머니가 이미 한국에 와 있는 경우라면 어떤 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하여 관련법도 이에 맞게 필요하다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단, 이와 같은 지원 확대가 자칫 중국에 거주하려던 탈북여성 및 아동의 이탈을 촉진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우리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 및 불법체류자 자녀의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무국적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미국, 영국, 태국 등과 같이 체류 지위에 상관없이 간단한 기본사항들을 포함한 출생등록제도를 새로 마련하여, 중국과는 다른 차원의 비교우위를 가지고 탈북여성 아동 문제에 대한 양자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적 측면 지원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통일부

○ 먼저 북한이탈여성들이 국내입국 과정에서 중국내 생활실태와 출산여부, 현지 아동 및 중국인 가족관계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인권백서(통일연구원 간행)에 탈북여성 중국 잔류자녀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고 지속적 모니터링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탈여성들의 국내정착과정에서 중국내 잔류아동을 돕으로 인한 정착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맞춤형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 중국내 현장 지원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현지의 ‘요보호 아동’에 대해 생활 및 교육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중국 내 탈북여성 자녀들은 우리 시민의 자녀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에게 보호의 의무가 있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다양한 이유로 정상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아동들, 그리고 부모나 다른 친척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 중에서도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설 것이 요구된다.

우선 현지의 ‘요보호 아동’들에 대한 생활지원과 교육지원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는 조사과정에서 그리고 현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국내 및 현지의 민간역량과 협력하여 ‘요보호 아동’들에 대해 생활지원과 교육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직 호구를 취득하지 못한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급히 호구를 취득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지원, 교육지원, 호구취득 지원 등 중국산류 ‘요보호 아동’들에 대한 지원은 중국 당국의 정책을 고려할 때 국내 및 현지의 민간단체 역량을 통한 지원이 효과적이다. 구체적으로 민간단체가 중국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국제인도주의 및 교육문화 단체의 중국의 농촌아동에 대한 지원 활동과 같은 방식을 취함으로써 농촌 및 도시 외곽의 요보호 탈북여성 아동들에게 생활 및 교육지원을 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 북한이탈여성들이 중국내 자녀와 동반입국하였거나 추후 아동과 가족 재결합을 원할 경우 이들의 정착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중국출생 탈북여성 아동이 북한태생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틀 내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어머니와 아동의 분리를 가속화하고 있다. 최소한 중국에서 태어나 국내로 들어온 탈북여성의 자녀들에게 북한 태생 탈북아동에 준하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4) 시민사회 및 언론

○ 전 세계 북한인권 네트워크를 동원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반대 운동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유엔 및 국제인권포럼에서 중국내 탈북여성 인권실

태 및 강제송환으로 인한 인권피해와 잔류아동과 사실상 강제로 분리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 다음으로 시민사회는 중국당국에 대해 북한계 아동들의 호구 취득시 뇌물형태의 벌금부과제를 폐지하고 무조건 호구를 부여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이 요구된다.

○ 그리고 탈북여성의 중국잔류 아동에 대한 지원단체들의 경제적 정서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단체가 직접적으로 현지 아동을 지원할 방법이 극히 적지만 현지의 한국계 민간단체 활동 및 종교에 기반한 네트워크, 그리고 외국단체 등을 활용한 접근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수암. “해외 체류 탈북자 문제 쟁점과 과제”. 통일연구원 홈페이지(KINU 현안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6.

김윤영. “해외체류 탈북자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고찰”. 『자유민주연구 제4권 제2호』. 서울: 자유민주연구학회, 2009.

안보문제연구원.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상”. 『통일로. 통권253호』 서울: 안보문제연구원, 2009.

윤여상, “중국 체류 탈북고아의 인권과 보호방안”, 『2008북한인권국민캠페인: 탈북고아에게 사랑을!』 서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2008.

윤여상. “해외 탈북자 대책은 없는가? : 국제 공조를 통한 상호 역할 분담과 인도주의 하에 최선의 노력 필요”. 『北韓. 통권466호』 서울: 북한연구소, 2010.

이규창, “무국적 탈북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 모색”,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pp. 213-238 참조.

이규창. “재중 탈북자 보호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통일연구원 홈페이지(KINU 현안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8.

이금순 외, 『2009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2009.

이금순.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통일연구원 홈페이지(KINU 연구총서). 서울: 통일연구원, 2009.

이승용. “재외탈북자의 인권실태와 대책”. 『人權과正義. 통권317호』.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03

이신화. “동북아 주요 국가의 탈북자 정책 : 재외 탈북자문제와 대량탈북 가능성을 중심으로”. 『亞細亞研究. 제53권 제3호 통권141호』.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0.

이원용. “해외 탈북자 인권보호 핵심은 합법적 체류 인정”. 『통일한국. 제26권 10호 통권298호』. 서울 : 평화통일연구소, 2008.

임순희. "중국체류 탈북여성의 인권실태와 북한 여성의 인권 현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2008 북한인권국민캠페인 탈북고아에게 사랑을 토론회. 서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2008

제성호. “해외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향”. 『서울국제법연구 제9권 제1호 통권16호』. 서울: 서울국제법연구원, 2002.

조정현. “국제기구를 통한 탈북자 보호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 UNHCR 및 UN 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서울: 통일연구원, 2010.

조정현. “국제법상 중국의 탈북자 보호 의무”. 통일연구원 홈페이지(KINU 현안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12.

조정현. “국제인권법상 탈북자의 보호가능성 및 그 실행 :중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 및 동 조약의 이행감독장치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제1호 통권 제 113호』. 서울: 대한국제법학회, 2009.

조정현. “재중 탈북자 문제의 국제인권법적 해결방안: 국제인권조약 이행감독장치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외교안보연구원, 2009

조정현. “Republikflucht(국가탈출죄)의 법리 및 탈북자 문제에의 적용”. 서울: 2008.

중국인구계획생육위원회의 ‘국가인구발전전략보고’, 2007.

최재천. “재외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 : '탈북자' 그들의 이름은 '동포'입니다”. 서울: 대한민국 국회, 2006.

(사)피난처, 『재중 탈북2세 아동의 인권실태와 보호방안 조사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1 인권단체협력사업(2011).

한반도화해센터. “중국 내 탈북 여성 2세 가정환경 조사 보고서”. 서울: 한반도화해센터, 2008.

홍옥화. “재중 탈북여성·고아의 삶과 인권”. 『분단·평화·여성 통권 제7호』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3.

황우여·김동성. 『탈북자의 법적지위와 국내정착 및 처우방안』. 서울: 국회인권포럼, 2009.

Christine Hong, “Fiction of the North Korean Refugee Orphan,” 38 North(Sep. 11, 2012).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CESCR), “Concluding Observations: People’s Republic of China (including Hong Kong and Macao), UN Doc. E/C.12/1/Add.107 (13 May 2005), para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Concluding Observations: China (including Hong Kong and Maca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s)”, UN Doc. CRC/C/CHN/CO/2 (24 November 2005), paras.

CRC, “Concluding Observations: China”, supra note 62, paras. 81-82; CRC, “General Comment No. 6: Treatment of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outside their country of origin”, UN Doc. CRC/GC/2005/6 (1 September 2005), paras.

Geraldine Van Bueren, *The International Law and the Rights of the Child*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5)

Human Rights Watch, *Denied Status, Denied Education: Children of North Korean Women in China*(April, 2008); Submission from HRW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overnment Violations of Children's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y 2008).

Kay Seok, "A Long Way to Acceptance: Children of North Korean Women in China,"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 Refugees* (August 21~22, 2010, Isabel Bader Theatre, Toronto, Canada)

RI, *Futures Denied: Statelessness among Infants, Children, and Youth* (Oct 21, 2008).

UNHCR, "In Thailand, birth registration gives refugee babies a good start in life", *News Stories* (24 September 2012).

연합뉴스

조선일보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참고자료 1

<면접조사 응답자 특성>

ID	아동과의 관계	ID	아동과의 관계	ID	아동과의 관계
1	교회 전도사	35	고모	69	교회 보호자
2	큰어머니	36	아버지	70	큰어머니
3	교회 집사	37	조모	71	유택터 보호자
4	교회 집사	38	아버지	72	어머니
5	큰아버지	39	조모	73	먼 친척
6	교회 전도사	40	아버지	74	조모
7	교회 집사	41	조모	75	조모
8	교회 집사	42	어머니	76	고모
9	교회 집사	43	어머니	77	큰어머니
10	교회 집사	44	어머니	78	어머니
11	아버지	45	아버지	79	큰어머니
12	교회 전도사	46	전도사 부인	80	보모
13	교회 전도사	47	보호자	81	아버지
14	고모	48	보호자	82	계모
15	아버지	49	보호자	83	큰어머니
16	아버지	50	어머니	84	큰어머니
17	아버지	51	어머니	85	조모
18	누나	52	어머니	86	조모
19	어머니	53	어머니	87	아버지
20	조모	54	고모	88	고모
21	고모	55	큰아버지	89	큰어머니
22	고모	56	아버지	90	조모
23	어머니	57	조모	91	조모
24	큰어머니	58	조모	92	조모
25	삼촌	59	전탁선생	93	고모
26	조부	60	아버지	94	조모
27	어머니	61	아버지	95	아버지
28	조부	62	계모	96	조모
29	어머니	63	조모	97	조모
30	어머니	64	조모	98	고모
31	어머니	65	조부	99	조모
32	어머니	66	조모	100	조모
33	어머니	67	조모		
34	어머니	68	사돈		

참고자료 2

#번호: _____ - _____ (예: 왕청현-01)
#아동의 이름: _____
#응답한 사람(아동과의 관계) :

농촌 아동의 생활환경 질문지

I. 아동에 관한 기본사항

1. 성 별: 남 / 여
2. 출생년도: _____ 년
3. 출 생 지: _____ 성/자치주 _____ 현/시 _____ 진/향 _____ 촌
4. 현 주소 : _____ 성/자치주 _____ 현/시 _____ 진/향 _____ 촌 / 위와 같다
5. 함께 지내는 가족을 말씀해주세요. 아이가 아버지, 조부모 등 직계가족과 함께 지내지 않는 경우에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6.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아주 좋다 ② 좋은 편 ③ 보통이다 ④ 좋지 않은 편 ⑤ 아주 좋지 않다
 - 6-1. (질병이 있는 경우) 병명은 무엇이고 아픈지 얼마나 되었는가?
 - 6-2. (질병이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가?
 ① 정기적으로 진료 받음 ② 많이 아플 때만 병원에 감 ③ 병원진료 받지 않음
 - 6-3.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6-4. 혹시 자녀에게 장애가 있습니까(언어장애도 포함됨)?

① 장애가 있음 (어떤 장애인가요? _____) ② 장애 없음

7. 자녀의 키(신장)_____cm / 몸무게_____kg

7-1. 마을의 또래 아이들에 비해 키와 몸무게가 어떤 편인가요?

8. 아이가 호구가 있습니까? ① 호구가 있다 ② 아직 호구가 없음

8-1. 아이는 언제 호구를 취득하였습니까? (아이가____살때(____년))

8-2. 호구를 받은 과정을 말씀해주세요(다른 아이들처럼 태어나자마자 호구를 정식으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호구를 받았는가?)

8-3. (호구위해 벌금을 낸 경우) 왜 벌금을 내야 했는가? 벌금은 얼마였는가?

9.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후에 이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이사를 했다 (이사한 이유는?_____)

② 이사한 적 없다.

10. 아이가 학교나 마을에서 맞고 온 일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이유는?

11. (여자아이의 경우에) 아동이 학교나 마을에서 특별히 좋지 않은 일을 겪은 적이 있었나요?

II. 아동 가정의 사회경제적 상황

1. 아버지의 출생년도: _____년

2. 아버지의 민족적 배경: 한족, 조선족, 기타(_____)

3. 현재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나요?

① 그렇다(☞ 4번에 답하세요) ② 아버지 없이 지낸다(☞ 8번으로 넘어가세요)

4. 아이의 아버지는 평소에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니까(직업)?

4-1. 아버지의 한달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한달 수입을 알 수 없으면, 1년 동안의 수입은 몇 위안정도입니까?)

5. 아버지의 건강 상 특이사항이나 좋지 않은 습관 등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_____)

5-1.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어머니를 만나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말해 주십시오.

(_____)

6. 아버지가 마을이나 지역에서 어떤 직위나 직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① 직위/직함 있다 (무엇: _____) ② 직위/직함 없다

7. 아버지가 아이의 어머니와 헤어진 후 다른 여자와 재혼했습니까?

① 재혼을 했다 (다른 여자와 같이 산다) ② 재혼하지 않았다.

<7번까지 대답한 사람은 9번 질문으로 넘어가세요>

8.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아버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나요?

① 타지에서 돈을 벌고 있다 ② 다른 부인과 생활하고 있다
③ 어디에서 무엇 하는지 모른다 ④ 죽었다 ⑤ 기타 (_____)

9. 현재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의 생활과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아버지 ② 조부모 ③ 삼촌/고모/이모 등의 친척
④ 이웃 사람 ⑤ 기타 (_____)

5-1. (어머니가 복송된 경우) 체포되어 복송된 시기와 그 후 연락 등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5-2. (어머니가 가출한 경우) 집에서 떠난 연도와 이유, 그 후 연락 등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6. 현재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 알고 있나요?

7. 아이가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나요?

- ① 보고 싶어한다 ②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8. 아이가 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까?

- ① 연락을 한다 ② 연락한 적 없다

8-1. 연락을 주고받는 주기와 방법은(한 달에 몇 번)?

8-2.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9. 헤어진 후 아이와 어머니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 ① 만났다 ② 만난 적 없다

9-1. 아이가 어머니와 1년에 몇 번이나 만납니까?

9-2. 아이가 어머니를 만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현재 어머니가 아이를 보고 싶어서 찾아온다면 아이와 만날 수 있습니까?

- ① 만날 수 있다 ② 만날 수 없다

10-1. 어머니가 아이를 찾아와도 만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현재 어머니가 아이에게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① 가족 생활비를 매달 보내온다. ② 가끔씩 돈을 보내온다.
③ 아이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④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지원 (_____)
⑤ 아무런 지원이 없다.

12. 앞으로 아이의 어머니와 관련하여 아이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IV. 아동에 대한 직접 인터뷰 질문

1. 하루 3끼의 식사를 하고 있는가?

① 그렇다 ② 2끼만 먹음 ③ 1끼만 먹음

2. 평소에 주로 사용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① 중국어 ② 조선어

2-1. (조선어를 사용하는 경우) 조선어를 말한다는 이유로 학교나 마을에서
좋지 않은 일을 겪은 적이 있는가?

3. 집에서 때리는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주로 누가 왜 때리는가?

4. 학교나 마을에서 아이들로부터 맞은 적이 있는가? 있다면 무슨 이유로 그
랬는가?

5. 지금 살고 있는 집(가정)에서 계속 살고 싶은가? 아니면 다른 집으로 보내
졌으면 좋겠는가?

5-1. 다른 집으로 가서 살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6. 지금 살고 있는 마을과 학교에 계속 다녔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다른 마을
과 학교로 옮겼으면 좋겠는가?

7.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가? 엄마가 보고 싶은가? 그렇지 않다면 이
유는?

8. 지금 누군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네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끝>